



2026. 10.

국회예산정책처 | 예산안 분석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예산안분석시리즈 VII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총괄 | 임명현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서재만 예산분석총괄과장

이상은 산업예산분석과장

권순영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임길환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유주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유민호 현서린 김민혁 김용오 김성은

김다운 이미선 서창희 김지수 이상아

오규환 정성영 김유진 안승재 허아름

조명식 안은주 이동현 박은형 우형규 예산분석관

지원 | 김병규 예산분석관보

김정선 행정실무관

홍지훈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의 :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 02) 6788-3769 | e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보고서는 재생지를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안분석시리즈 VII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2026. 10.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6. 10. 26.)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는 지난 9월 3일 총수입 880.8조원, 총지출 820.9조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과 성장 성과의 확산에 중점을 두고, 총지출 증가율을 '26년 8.1%에서 '27년 12.8%로 대폭 상향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성장주도형 재정 선순환 구조를 안착시키겠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국세수입이 올해 본예산 대비 194.2조원(49.8%) 증가한 584.4조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은 158.5조원 규모의 추가세수를 주요 재원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4조원을 투자하는 등 재정운용 방식에 큰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세수 전망의 불확실성과 신설 기금의 운용 방식 및 국회 통제 장치의 적정성 등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효과성을 심의하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2027년도 예산안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총량 분석」, 「분야별 재원 배분 분석」, 「총괄 분석」 3권, 「위원회별 분석」 12권,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성인지 예산서 분석」,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등 총 20권으로 구성되며, 특히 미래대응기금 등 재정제도 개편 및 3대 메가프로젝트·청년 성장단계별 종합지원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총괄 분석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보다 심도 깊게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예·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I. 총 괄 / 1

1. 결산 시정요구제도	3
2.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4
2-1. 202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경과	14
2-2. 분석의견 종합	16
3.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4
3-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 등 현황	24
3-2. 2022~2024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26
3-3.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28
3-4. 분석의견 종합	30

II. 위원회별 분석 / 37

1. 국회운영위원회	39
1-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39
1-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40
2. 법제사법위원회	41
2-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41
2-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48
3. 정무위원회	57
3-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57
3-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63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68
4-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68
4-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69



CONTENTS

5. 교육위원회	74
5-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74
5-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75
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81
6-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81
6-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93
7. 외교통일위원회	94
7-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94
7-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95
8. 국방위원회	99
8-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99
8-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02
9. 행정안전위원회	103
9-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03
9-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14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5
10-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25
10-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31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37
11-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37
11-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42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6
12-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46
12-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47



CONTENTS

13. 보건복지위원회	158
13-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58
13-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69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81
14-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181
14-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02
15. 국토교통위원회	219
15-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19
15-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27
16. 성평등가족위원회	233
16-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33
16-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236

부 록 / 241

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현황	243
2.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조치 미완료 현황	261



I. 총괄

가. 의의

결산 시정요구제도는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결산 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예산 집행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국회의 주요 재정 통제 절차이다. 다만, 결산은 이미 집행이 완료된 예산을 대상으로 하므로,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해 해당 집행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하여 원상회복을 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에 시정요구제도는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을 묻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함으로써, 결산 심사가 단순한 사후적 지적에 그치지 않고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한다.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¹⁾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는 결산 심의 과정에서 시정요구와는 별도로 정부의 정책·제도개선 등을 촉구하기 위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사항’은 예산의 편성·집행 또는 회계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하며, ‘부당한 사항’은 예산을 부적정하게 편성 또는 집행하거나 사업 집행이 부진한 경우,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국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기관 또는 관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결산 이후의 후속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예산 집행상의 오류와 비효율을 점점 · 개선할 수 있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국회법」 제84조제2항에 변상과 징계 등이 예시적으로 규정 되어 있으며, 국회는 2003회계연도 결산 심사부터 시정요구를 변상 · 징계 · 시정 · 주의 · 제도개선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하나의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적용기준(관례) 및 조치대상 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재산상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업무가이드」, 2026. 6.

최근 5년간 국회 결산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정요구 건수는 2020회계연도 1,881건에서 2021회계연도 1,416건으로 감소한 이후 2022회계연도 1,916건, 2023회계연도 2,319건으로 증가하였고, 2024회계연도에는 1,987건으로 감소하였다.

[2020~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결과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시정요구사항	1,881	1,416	1,916	2,319	1,987

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를 포함함

자료: 회계연도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5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 위원회가 의결한 예비심사보고서상의 시정요구 건수는 총 1,323건²⁾이다. 해당 상임 위원회는 2026년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결산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같은 해 8월 24일 결산을 상정한 후 9월 2일부터 8일까지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2026년 10월 현재 예산결산특별위원 회의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이 완료되지 않아,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사항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202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경과]

구분	상임위원회(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종합심사)
상정	2026. 8. 12. ~ 2026. 9. 8.	2026. 8. 24.
소위 심사	2026. 8. 20. ~ 2026. 9. 18.	2026. 9. 2. ~ 2026. 9. 8.
의결	2026. 8. 21. ~ 2026. 9. 22.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포함

나. 결산 시정요구제도 개선의견

(1)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중점 관리 필요

국회의 시정요구사항 중 예산의 증액·감액이나 사업의 신설·조정 등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차년도 예산안 심의와 연계하여 그 반영 여부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2026년 4월 기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51건에 대해서 예산 증액 또는 사업의 신설·조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시정요구의 이행을 위해 재정투입이나 예산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히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후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당 재정조치가 실제로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GAO(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감사 결과에 따른 권고의 이행상황을 예산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장치를 두고 있다. 미국 연방법전 제31편 제720조에 따르면 GAO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를 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180일 이내에 권고에 대한 조치사항 또는 조치계획을 소관 의회 위원회와 GAO 등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180일 이후 처음 제출하는 세출예산 요구와 함께 해당 내용을 상·하원 세출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즉, GAO 권고사항이 자동적으로 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에 대한 행정부의 조치계획과 이행상황 등을 세출예산 심사 과정에서 의회가 확인할 수 있도록 법적 보고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GAO는 권고사항 등의 이행에 따른 재정적 편익과 미이행 사항의 잠재적 재정효과를 별도로 파악·관리하고 있다. GAO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6년까지 GAO 권고사항 등을 연방기관 등이 이행함으로써 약 7,743억 달러의 재정상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기준 미이행 상태로 남아있는 권고 610건 가운데 182건은 향후 재정상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³⁾

3) U.S. GAO, 「2026 Annual Report: Opportunities to Reduce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and Achieve an Additional One Hundred Billion Dollars or More in Future Financial Benefits」, 2026, p.9~11, p.27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향후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식별하여 관리하고, 다음 연도 예산안 심사 시 해당 시정요구의 반영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시정요구사항을 ‘추가 재정 소요 필요’, ‘기존 예산의 감액·조정 필요’, ‘사업 신설·통폐합 필요’ 등으로 구분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할 때 예산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안 반영 여부와 미반영 사유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도 전년도 결산 시정요구와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 내용, 정부의 조치계획·이행상황 및 차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를 함께 검토하고,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었거나 필요한 제도개선 없이 동일한 예산이 반복적으로 편성된 경우에는 예산상 조치의 필요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2) 결산 심사일정 조정 등을 통한 국회 결산 심의 조기 실시

국회의 결산 심의를 7월 말까지 완료하는 방향으로 결산 심사일정 등 관련 절차의 조정을 검토하여 국회의 결산 심의 결과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61조⁴⁾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의2⁵⁾에 따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⁶⁾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회가 정기회 개회 전에 결산 심의를 완료하도록 한 것은 전년도 예산의 집행 결과를 점검하고, 그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이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환류함으로써 재정운용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예산편성 및 결산 일정을 고려하면 직전 회계연도에 대한 국회의

4) 「국가재정법」

제61조(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국회법」

제128조의2(결산의 심의기한)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6) 「국회법」

제4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결산 심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구조적인 제약이 있다. 「국가재정법」 제31조7)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연도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는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과 동일하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33조8)는 정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가 법정 기한 내에 결산을 의결하더라도 그 결과를 이미 상당 부분 편성이 완료되었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실제 국회의 결산 심의는 법정기한보다 늦게 완료되고 있다. 최근 2020~2024회계연도 결산은 모두 정기회 개회 이후인 11월 또는 12월에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결산 역시 2026년 10월 현재 의결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결산 심의의 지연으로 인해 국회의 결산 심의결과가 정부 예산안의 편성은 물론 국회의 예산안 심의에도 적기에 활용되기 어려워, 결산의 환류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2020~202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경과]

회계연도	제안일자	상임위 예비심사			예결위 종합심사			본회의 의결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2020	21. 5. 31.	6. 1.	8. 17. ~ 9. 13.	8. 19. ~ 9. 16.	9. 6.	9. 6.	12. 2.	12. 2.
2021	22. 5. 31.	7. 25.	8. 17. ~ 9. 15.	8. 19. ~ 9. 27.	8. 29.	8. 29.	11. 7.	11. 10.
2022	23. 5. 31.	6. 1.	8. 17. ~ 9. 4.	8. 25. ~ 9. 7.	8. 30.	8. 30.	12. 20.	12. 20.
2023	24. 5. 31.	6. 11. ~ 6. 27.	8. 13. ~ 9. 9.	8. 26. ~ 9. 25.	9. 2.	9. 2.	11. 29.	12. 2.
2024	25. 5. 30.	6. 2.	8. 18. ~ 9. 2.	8. 20. ~ 9. 4.	8. 25.	8. 25.	11. 27.	11. 27.
2025	26. 5. 29.	7. 1. ~ 7. 30.	8. 12. ~ 9. 8.	8. 21. ~ 9. 22.	8. 24.	8. 24.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7)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가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한 사항은 이후의 예산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적시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 결산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이 예산에 환류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거나 불필요한 재정투입이 계속되는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회의 결산 심의가 7월 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결산 심사일정 등 관련 절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결산 심사 결과가 정부의 예산편성 및 국회의 예산안 심사에 곧바로 활용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일정하에서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을 다음 연도 정부안에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적어도 국회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결산 심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최종 의결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채택된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27년도 예산안을 검토하였다.

(3) 정부 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의 점검·평가체계 마련 등

첫째, 정부가 조치를 완료하지 않은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제출 이후에도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처리상황을 국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법」 제84조제2항⁹⁾에 따르면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치결과에의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법률상 명시되어 있지 않다. 현재 정부는 국회의 결산 심의가 완료된 후 당해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차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이후 익년도 4월 30일을 기준으로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는 2026년 1월에,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는 같은 해 5월에 각각 제출되었다.

9)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0~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조치결과보고 일자		조치 결과 ¹⁾			
	조치결과보고	후속 조치결과보고	시정요구사항 (A)	조치완료	조치중 (B)	조치미완료율 (B/A)
2020	2022년 3월	2022년 5월	1,881	1,534	347	18.4
2021	2023년 2월	2023년 5월	1,416	1,175	241	17.0
2022	2024년 2월	2024년 5월	1,916	1,582	334	17.4
2023	2025년 1월	2025년 5월	2,319	1,855	464	20.0
2024	2026년 1월	2026년 5월	1,987	1,603	384	19.3

주: 1) 후속 조치결과보고 기준 조치결과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정부가 후속 조치결과를 제출한 이후에는 아직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정요구사항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보고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후속 조치결과에서 ‘조치중’으로 분류된 사항이 이후 실제로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또는 계속 미이행 상태에 있는지를 국회가 체계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6년 1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987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하면서 이 중 655건(33.0%)을 ‘조치중’으로 분류하였고, 같은 해 5월 제출한 후속 조치결과에서도 384건(19.3%)이 여전히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들 384건에 대해서는 후속 조치결과 제출 이후 조치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국회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후속 조치결과 제출 이후의 이행점검 체계가 미비할 경우 정부가 국회의 시정요구를 최종적으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렵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항이 이후 결산 심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제도의 실효성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조치결과 제출 당시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정부가 처리상황을 주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제22대국회에는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즉시 최종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1건¹⁰⁾이 발의되었다.

한편, 본 보고서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제출 이후의 이행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2026년 8월 말 기준 부처별로 시정요구 사항별 조치 현황을 추가로 조사·정리하였다. 조사 결과, 2026년 8월 말 기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1,987건 중 226건(11.4%)이 여전히 ‘조치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이 장기간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이행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지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회법」은 정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거나 장기간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 후속 처리절차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이행을 곤란하다고 판단한 사항이 장기간 ‘조치중’ 상태로 남아 있거나,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한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국회가 해당 사항을 재검토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등 시정요구의 실질적인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적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인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국회 의결 이후 법령이나 정책여건이 변경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시정요구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정요구의 미이행 사유를 구분하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를 달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시정요구를 이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대체조치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국회가 이를 검토하여 당초 시정요구를 유지·변경하거나 더 이상 실익이 없는 경우 시정요구

10) 박정하의원 대표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71호)

사항을 철회·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면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합리적인 사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다 강화된 후속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완료기한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별도 보고 또는 관계자 출석 등을 통한 점검을 수행하는 한편, 시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이행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자에게 일정한 제재를 부과하는 등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단계적인 이행확보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정부의 주기적인 조치현황 보고 의무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① 장기적인 미이행 사항에 대해서는 미이행 사유 및 향후 이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화, ② 사정변경 등으로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해진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변경·철회 등 절차 마련, ③ 정당한 사유 없는 장기·반복적 미이행 사항에 대한 국회의 별도 점검 등 국회 시정요구제도를 보완하여 시정요구의 이행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실질적인 이행이 이루어졌는지를 국회가 객관적으로 점검·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는 각 부처가 제출한 조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완료’ 또는 ‘조치중’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도 변경이나 계획 수립 등을 근거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더라도, 국회가 시정을 요구한 문제의 원인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았거나 개선조치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실제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정부가 ‘조치완료’로 보고한 사항을 분석한 결과, 일부 사업은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된다. 따라서 결산 시정요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치가 당초 시정요구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 주요 감사기구에서도 피감기관의 자체적인 이행완료 보고와 별도로 권고

등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미국 GAO는 연방기관에 대한 권고사항 등의 이행 여부를 ‘종결-이행 완료(closed-implemented)’, ‘미결-부분 이행(open-partially addressed)’, ‘미결-미이행(open-not addressed)’, ‘종결-실효(closed-no longer valid)’ 등으로 직접 분류하고 있고, 이 중 ‘이행 완료’는 기관이 권고사항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모두 완료하였거나 취지를 실질적으로 충족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¹¹⁾¹²⁾

호주 ANAO(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또한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권고 후 2년간 매년 이행상황을 제출받는 한편, 별도의 후속 성과감사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ANAO는 2025-26회계연도 연차보고서에서 2019-20회계연도부터 2025-26회계연도까지의 권고사항 이행실태를 평가한 결과, 피감기관이 자체적으로 ‘이행 완료’라고 보고한 권고사항 중 25%는 ‘부분 이행’ 또는 ‘미이행’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¹³⁾ 이는 정부기관의 자체적인 ‘이행 완료’ 판단을 감독기관이 독립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다만, 국회가 모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 이행여부를 다시 전수점검하는 것은 행정비용 측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복적으로 지적되었던 사항,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항, 변상·징계 등 책임성 확보와 관련된 사항, 장기간 ‘조치중’으로 보고된 사항 등 중요도가 높은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표본점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순히 제도나 지침을 마련하였는지가 아니라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기준으로 ‘이행 완료’, ‘부분 이행’, ‘미이행’ 등으로 구분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고한 조치상태를 수정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시정요구 이행점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11) U.S. GAO, 「2026 Annual Report: Opportunities to Reduce Duplication, Overlap, and Fragmentation and Achieve an Additional One Hundred Billion Dollars or More in Future Financial Benefits」, 2026, p.25~31(Appendix I)

12) 또한, GAO는 분석이 가능한 경우 권고사항 이행에 따라 발생한 순재정편익(net financial benefits)을 추정하기도 한다. 다만, GAO는 권고사항 이행에 따른 개선효과 중 상당수는 측정하기 어렵거나 재정편익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13) 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 「ANAO Annual Report 2025-26」, 2026, p.21

2-1. 202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심의 경과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5월 29일 국회에 제출되어, 7월 1일·23일·30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후 8월 21일부터 9월 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가 결산 예비심사를 마쳤고, 국회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는 2026년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국회운영위원회	2026. 7. 1.	-	-	-
법제사법위원회	2026. 7. 1.	8. 19. ¹⁾ · 21. ²⁾	9. 1.	9. 1.
정무위원회	2026. 7. 1.	8. 24.	8. 25. · 26.	8. 26.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7. 1.	8. 20.	-	-
교육위원회	2026. 7. 23.	8. 14.	-	-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	9. 8.	9. 18.	9. 22.
외교통일위원회	2026. 7. 23.	8. 19.	-	-
국방위원회	2026. 7. 1.	8. 20.	8. 24. · 25.	8. 31.
행정안전위원회	2026. 7. 1.	8. 24.	8. 25.	9.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7. 1.	8. 26.	8. 31.	9. 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026. 7. 1.	8. 26. ³⁾ · 31. ⁴⁾	9. 2.	9. 2.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6. 7. 23.	8. 12.	-	-
보건복지위원회	2026. 7. 23.	8. 19.	8. 20. · 21.	8. 21.
기후에너지환경 노동위원회	2026. 7. 1.	8. 19.	8. 25.	9. 1.
국토교통위원회	2026. 7. 23.	8. 19.	8. 20.	8. 21.
정보위원회	2026. 7. 23.	9. 1.	9. 2.	9. 3.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30.	8. 26.	8. 31.	9. 1.

주: 1)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2)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4)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8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같은 날 2025회계연도 결산을 상정하였다. 이후 8월 24일과 25일에 종합정책질의를, 8월 26일(경제부처)과 31일(비경제부처)에 부별심사를 실시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를 마친 후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9월 2일부터 8일까지 4회에 걸쳐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하였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6년 10월 현재 결산 종합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경과]

회부일	상정일	전체회의			소위심사일	의결일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경제	비경제		
2026. 8. 24.	8. 24.	8. 24. · 25.	8. 26.	8. 31.	9. 2. ~ 9. 8. (4회 개최)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2. 분석의견 종합

가. 개요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법제사법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채택된 시정요구사항을 중심으로 2027년도 예산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 등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시정요구사항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분석의견은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① 사업계획·추계의 적정성 미흡, ② 집행부진·성과부진 사업,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등 미비,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반영 필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반영 필요 사업 유형]

유형	판단 기준
① 사업계획·추계의 적정성 미흡	○ 사업의 필요성·규모·추진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소요예산 산출의 객관성·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사업
② 집행부진·성과부진 사업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아, 사업규모·추진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회계·비목 등의 편성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업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등 미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 또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사업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반영 필요	○ 그 밖에 국회 등의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개선 취지를 후속 사업계획 또는 예산편성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업

나. 유형별 주요 분석의견

2025회계연도 결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채택된 시정요구사항의 2027년도 예산안 반영 필요성을 검토한 결과 46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반영 필요 사업]

(단위: 건)

분석 유형	시정요구	부대의견	합계
①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12	1	13
② 집행부진 · 성과부진 사업	11	1	12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4	-	4
④ 법적 근거 · 제도기반 등 미비	2	1	3
⑤ 기타 시정요구 · 부대의견 반영 필요	12	2	14
합 계	41	5	46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사업이 13건, ‘집행부진 · 성과부진 사업’이 12건, ‘회계 · 비목 등 편성 부적정’ 사업이 4건, ‘법적 근거 · 제도 기반 등 미비’ 사업이 3건, ‘기타 시정요구 · 부대의견 반영 필요’ 사업이 14건이다.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국가배상금 지급¹⁾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 ·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이다.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법제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가배상금의 적절한 추계를 위해 국가배상금 예측 추계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법무부는 2027년 배상금 예산안 편성시 현재 제기된 사건을 소액사건,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송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에 선고될 사건에 대하여 인용 비율인 50%를 적용하여 2027년 예산안 8,390억 6,000만원을 산출·편성하였다. 그런데 법무부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과 향후 제기될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국가배상금 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나, 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추계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²⁾ 사업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서비스하고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첨단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출연연구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슈퍼컴퓨터 운영유지비 229.4억원 중 152.6억원이 지출되었으며, 운영유지비 잔액은 2024년 17.0억원에서 2025년 76.9억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도 예산부터 전년도 이월액, 이용료 수입과 잔액 및 전기료·유지보수비 등 차년도 예상 소요액을 함께 반영하여 실제 필요한 운영재원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월액 규모는 반영하였지만, 이용료 수입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기술지원준비금 잔액이 2026년 38.5억원에서 2027년(안) 53.1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2027년도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출연금 예산은 슈퍼컴퓨터 이용료 수입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고,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으로 편성된 지출 항목 중 전기료 등을 이용료 수입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2241-441

② 집행부진·성과부진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³⁾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비수도권은 계획액보다 75억 4,600만원, 818억 5,2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계획액보다 551억 7,700만원이 미달하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자치단체 유형별 국비 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 지역 등에 국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국비 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분 격차의 원인분석에 따른 배분기준과 지원조건의 개선방안을 반영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계 구축(R&D)⁴⁾ 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 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등을 구축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수행기관의 실집행이 부진하고 미집행 재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부지확보·설계·건축 등 단계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의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미집행 예산이 수행기관에 반복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6년 8월 말 기준 교부현액 400.9억원 중 집행액이 9.7억원으로, 실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이에 사업추진 지연으로 수행기관의 미집행 재원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실제 추진일정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맞추어 조정하고, 출연금은 수행기관의 기존 보유재원과 실제 자금소요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다.

3)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1

4) 코드: 일반회계 1333-302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⁵⁾ 사업은 지역 장기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교부액 13.5억원 중 7.6억원(56.3%)만 실집행되었고, 의사 모집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잔여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실집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분할교부하도록 한 보조금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실제 집행 수요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교부하며, 사업별·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지속 점검하는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7월 현재 채용이 확인된 인원이 92명에 그치고 있음에도 기존 11개 시·도와 보건의료원 318명을 12개월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추경예산 대비 62.1억원(167.2%) 증액된 99.2억원이 편성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6년 신규 지역의 채용 결과 및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수중유산발굴및보존처리⁶⁾ 사업의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은 수중발굴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과학적 보존방안 수립 및 해양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 4건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비목 외로 사용하여 예산집행 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향후 수중유산 보존처리 관련 지식기반의 과학적·학술적 조사연구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업 성격에 부합하는 일반연구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5) 코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4333-326(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2025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4333-354)’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다.

6) 코드: 일반회계 1231-322

그러나 동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12.8억원 중 일반 용역비(210-14)로 3.1억원이, 이 중 2억원이 ‘수증발굴 유물 과학적 조사연구’ 명목으로 배정되어 있다. 해당 사업내용은 지식기반의 학술적 조사연구에 해당하므로 일반 용역비가 아닌 일반연구비(260-01) 비목으로 편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⁷⁾ 사업의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내역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사무의 성격으로 시설의 운영수입도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국가 시설조성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에서 부담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국가 직접사업 간 회계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수행주체, 운영수입 귀속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계의 편성이 지역지원계정의 목적과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회계로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팔공산 등 5개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7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본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이 202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과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되었으나, 그 사업의 성격이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등 미비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⁸⁾은 소방헬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대응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7년 7월 준공 예정인 119항공정비실이 정상 가동되려면 정비인력 충원,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인증 취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이 사업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비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7)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3-301

8) 코드: 일반회계 1132-312

하고, 통합정비체계 구축일정에 맞추어 정비인력 확보와 장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현행 「항공안전법」 제32조제2항과 제97조제1항에 따라 정비를 위탁하려면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은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시·도 소유 헬기를 위탁받아 정비할 근거가 없다.⁹⁾ 또한, 인력 측면에서 소방청은 정비실 운영을 위한 수시직제(2과 6팀, 정원 57명)를 '26. 8월 소방청 내 조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26년 수시직제 심사 안전으로 추진 중이어서 정원 확보 전에는 인건비 편성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에 2027년도 요구안 중 운영비 2,606백만원(자산취득비 2,483백만원(95.3%))이 대부분이고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비실이 준공되더라도 법 개정, 직제 협의, 인건비 반영 등이 준공 시점('27.7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이 적기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청은 법 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직제·인건비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비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반영 필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¹⁰⁾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통카드 사업자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한 교통카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정산이 지연되고, 이자 등 금융비용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환급금 정산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주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편성·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비가 확보된 범위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9)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26. 7. 9.)이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다만, 동 법률안에 대한 국회 심의 경과와 인증 취득 소요기간에 따라 시범운영 개시 전 인증 취득 가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10)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4931-354

절차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2026년에도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2026년 상반기 지급된 환급금은 총 5,940억원으로, 해당 지급분은 2026년 8월 말까지 정산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6년 9월 초 기준 경기·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방비 부족으로 총 390억원이 미정산된 상태이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반영하여 환급·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농촌고용인력지원¹¹⁾ 사업의 ‘공공형 계절근로’ 내역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다. 농협 1개소당 1억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주당 35시간 임금 보장,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가동률 제고, 이용료 현실화, 유휴 인력 발생 시 손실 보전 체계 도입, 국비 지원액 확대 등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지역농협 개소를 2026년 130개소에서 2027년 2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역농협 개소당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11)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1140-3014

3-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조치 등 현황

국회는 2025년 11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면서, 「국회법」 제84조제2항¹⁾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와 16건의 부대의견²⁾을 채택하였다. 「국회법」 제127조의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른 2024회계연도 결산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는 없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493건(75.1%)으로 가장 많았고, 주의 437건(22.0%), 시정 148건(7.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91건은 2가지 이상의 유형이 적용된 복수유형으로 분류되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결산	-	-	147	432	1,479	(91)	1,967
예비비	-	-	1	5	14	-	20
합계	-	-	148	437	1,493	(91)	1,987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
(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시정요구(44건)와 부대의견(3건)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5.11.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전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2020~2024회계연도의 시정요구 건수 추이를 보면, 2020회계연도 1,881건에서 2021회계연도 1,416건으로 감소하였고, 이후 2022회계연도 1,916건, 2023회계연도 2,319건으로 증가한 후 2024회계연도 1,987건으로 직전 연도 대비 감소하였다.

[2020~2024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의 결과]

(단위: 건)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합계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부대의견	21	21	26	34	16
	감사요구	4	-	1	-	-
결산	시정요구	1,846	1,394	1,889	2,293	1,967
	부대의견	21	21	26	34	16
	감사요구	4	-	1	-	-
예비비	시정요구	35	22	27	26	20

주: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는 포함하지 않음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시정요구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최근 5개 회계연도 간 변상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고, 징계는 5건에 불과한 반면, 제도개선은 6,162건(64.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국회 결산 시정요구 유형별 현황]

(단위: 건)

구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2020	-	2	220	534	1,197	(72)	1,881
2021	-	-	79	457	944	(64)	1,416
2022	-	2	213	612	1,198	(109)	1,916
2023	-	1	248	808	1,330	(68)	2,319
2024	-	-	148	437	1,493	(91)	1,987
합계	-	5	908	2,848	6,162	(404)	9,519

주: 1. 시정요구는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의 5개의 유형이 있음

2.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합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3. 정보위원회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한 사항은 별도로 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2022~2024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가. 개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중, 직전 2개 회계연도(2022 또는 2023회계연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반복 시정요구 건수는 305건³⁾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중 70건은 최근 3년 연속하여 동일·유사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다.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

구분	2020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2022 회계연도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	240	193	227	297	305
전체 시정요구	1,881	1,416	1,916	2,319	1,987
반복 시정요구 비율	12.8	13.6	11.8	12.8	15.3

주: '반복 지적된 시정요구'란, 해당 회계연도의 시정요구 사항 중 직전 2개 회계연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적된 전례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와 같은 반복적인 시정요구는 정부의 조치가 적시에 이행되지 않았거나, 조치 내용이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당초 지적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경우 정부는 해당 시정요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한 실효성 있는 후속 조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반복된 시정요구사항 중 아래 18건은 2027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2~2024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 중 2027년도 예산안 반영이 필요한 사업]

위원회	부처명	관련 사업명 등	시정요구사항(요지)	분석 유형	'22	'23	'24
법사위	법무부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대법원	(세입)변상금	변상금 징수관리 강화 필요	⑤ 기타	○	-	○

3) 2022~2024회계연도 반복 시정요구사항은 국회예산정책처,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2026. 7.에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다.

위원회	부처명	관련 사업명 등	시정요구사항(요지)	분석 유형	'22	'23	'24
정무위	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	① 사업계획·추계 부적정	○	○	○
	금융위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③ 회계·비목 등 부적정	○	○	○
재경위	재경부, 기획처	미래대응기금 세입세출의 전출·적립	세수 결손 대응 부적절 관련	③ 회계·비목 등 부적정	-	○	○
외통위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급여별 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	① 사업계획·추계 부적정	○	○	○
행안위	소방청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실화재훈련 시설 구축 보조금의 이월·불용 방지를 위한 교부·집행 관리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문체위	문체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산업(지역자율)	예산 불용 주의 및 실집행을 개선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농해수위	농식품부	반려동물 인프라구축(자율)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산자 중기위	산업부	산업기술정보화 및 정책지원 (산업통상정책연구)	이·불용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복지위	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일반화제국민건강증진기금)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마련 필요	⑤ 기타	○	-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강보험 재정 관리)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③ 회계·비목 등 부적정	-	○	○
기후 노동위	노동부	대지급금 지급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건전성 제고 필요	⑤ 기타	○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고용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	⑤ 기타	○	-	○
		퇴직연금사업운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	⑤ 기타	○	○	○
	기후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상류·하류)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	① 사업계획·추계 부적정	○	○	○
성평등 가족위	성평등 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	① 사업계획·추계 부적정	○	○	○
		아이돌봄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를 제고 및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② 집행·성과부진	-	○	○

주: “○”는 해당 회계연도에 국회의 시정요구가 있었음을 의미함

자료: 각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3-3.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가. 현 황

정부는 「국회법」에 따라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2026년 1월 ‘조치결과’를 제출하였고, 2026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5월 ‘후속 조치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1,987건에 대하여 1,603건(80.7%)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384건(19.3%)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조치미완료 비율은 2020회계연도에 18.4%에서 2021회계연도 17.0%로 하락하였다가, 2022회계연도 17.4%, 2023회계연도 20.0%로 상승하였다. 2024회계연도에는 19.3%로 전년대비로는 소폭 하락하였으나 최근 5년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평가된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정요구 1,987건에 대하여 1,761건(88.6%)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26건(11.4%)은 조치중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시정요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20회계연도 결산	1,881	1,534	347	18.4
2021회계연도 결산	1,416	1,175	241	17.0
2022회계연도 결산	1,916	1,582	334	17.4
2023회계연도 결산	2,319	1,855	464	20.0
2024회계연도 결산	1,987	1,603	384	19.3
2026. 8. 조치현황	1,987	1,761	226	11.4

주: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 조치결과를 제외한 수치임¹⁾

자료: 각 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 조치 결과

정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시 국회가 의결한 부대의견⁴⁾ 16건에 대하여 2026년 4월 기준 조치완료 7건, 조치 중 9건으로 보고하였다. 부대의견에 대한 조치 미완료 비중은 2020회계연도 42.9%에서 2021회계연도 33.3%로 감소하였으나, 2022회계연도 34.6%, 2023회계연도 38.2%, 2024회계연도에는 56.3%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에 대해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부대의견 16건 중 조치미완료 사항이 7건(43.8%)이라고 보고하였다.

[최근 5년간 부대의견 조치결과 현황]

(단위: 건, %)

구분	부대의견 (A)	조치완료	조치미완료 (B)	조치미완료 비율 (B/A)
2020회계연도 결산	21	12	9	42.9
2021회계연도 결산	21	14	7	33.3
2022회계연도 결산	26	17	9	34.6
2023회계연도 결산	34	21	13	38.2
2024회계연도 결산	16	7	9	56.3
2026. 8. 조치현황	16	9	7	43.8

주: 2024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정보위원회 심사결과 부대의견(3건)은 별도로 함

자료: 대한민국정부, 「결산 심사결과 부대의견에 대한 후속 조치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4) 부대의견은 국회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해 의결에 부수하여 국회의 입장을 보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부대의견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결산에 대한 부대의견은 심사보고서에 시정요구와 함께 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3-4. 분석의견 종합

가. 개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상 ‘조치 완료’ 또는 ‘조치중’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요구의 취지가 2027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견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① 사업계획·추계 등의 적정성 미흡, ② 집행부진·성과부진,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미비,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취지 미반영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결산 시정요구사항 미반영 사업 유형]

유형	판단 기준
① 사업계획·추계의 적정성 미흡	○ 사업의 필요성·규모·추진방식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하지 않거나, 소요예산 산출의 객관성·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적절히 보완하지 않은 사업
② 집행·성과부진 사업	○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거나 당초 계획한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아, 사업규모·추진방식 등을 재검토하고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업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비추어 회계·비목 등의 편성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이를 시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은 사업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미비	○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령상 근거 또는 제도적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관련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미반영	○ 그 밖에 국회 등의 시정요구사항이나 부대의견에서 제시한 개선 취지가 후속 사업계획 또는 예산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사업

나. 유형별 주요 분석의견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47건의 시정요구사항은 그 취지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미반영 사업]

(단위: 건)

분석 유형	시정요구	부대의견	합계
①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9	-	9
② 집행부진 · 성과부진 사업	19	-	19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5	-	5
④ 법적 근거 · 제도기반 등 미비	2	-	2
⑤ 기타 시정요구 · 부대의견 미반영	11	1	12
합 계	46	1	47

유형별로 분류하면,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사업이 9건, ‘집행부진 · 성과부진 사업’이 19건, ‘회계 · 비목 등 편성 부적정’ 사업이 5건, ‘법적 근거 · 제도 기반 등 미비’ 사업이 2건, ‘기타 시정요구 · 부대의견 반영 필요’ 사업이 12건이다. 유형별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 추계의 적정성 미흡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⁵⁾ 사업은 공소청 내 검사 및 중앙청, 광역 · 지방 · 지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 · 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이후 직제가 수정되어

5) 코드: 일반회계 7002-101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검사 현원(1,924명)은 정원(2,292명)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에도 2027년도 검사의 인건비를 정원 2,292명을 기준으로 편성하고 있으므로, 검사결원 및 정원 조정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이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⁶⁾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다. 하나원 수료 인원이 예산 편성 시 예측치(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2024년도 예산 187억 5,700만원 중 80억 5,300만원(42.9%)이 불용되는 등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반복하여 집행률이 저조하였고,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입국 추이와 예산집행 추세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주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예산 편성 기준인원을 하향 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다만,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기준 인원을 220명으로 낮추고 집행률 계수(0.9)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20억 1,700만원(17.1%) 감액된 97억 7,1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계수와 급여별 산정인원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의 조치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계 근거를 보완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 집행부진·성과부진 사업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⁷⁾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행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기간 및 연부를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행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지자체 4개소 추가를 위해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17%) 증액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2027년 예산안 심사

6) 코드: 일반회계 2337-301

7)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3740-310

과정에서 신규 4개소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주민 동의 등 사업 준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회는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사업지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지자체 추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⁸⁾은 지자체의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 부동산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24년 148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집행률도 35.8%에 불과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 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하고, 집행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하여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그러나, 2026년 지원 대상 지자체의 8월 기준 실집행현황을 보면 여전히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체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 지원⁹⁾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민간서비스기관과의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국회에 조치완료 보고하였으나, 동 사업은 서비스 연계율 저조와 대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조치가 실제 공급인력 확충과 서비스 연계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8)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2151-302

9) 코드: 일반회계 2334-341

③ 회계·비목 등 편성 부적정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체재원 없이 정부출연금 및 한국은행출연금에 전액 의존하고 있어 2019년, 2022년 및 2025년 기금존치평가에서 반복하여 폐지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금융위원회는 2027년 예산안에 해당 기금을 그대로 편성하였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¹⁰⁾ 사업의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내역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¹¹⁾에도 편성되어 있어 처우개선 예산이 분산 편성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이 여러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각각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법적 근거·제도기반 등 미비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¹²⁾ 사업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은 초·중등학교 국·검·인정도서 약 2,800여종을 대상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발행사 자체 수정, 학생·학부모·교원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한 수정·보완 및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이에 국회는 2024

10)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40-404

11)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01-300

12) 코드: 일반회계 1031-303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를 집행한 사유와 해당 사업 수행 결정 과정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정비 등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였는바, 아직 민간위탁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으므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⑤ 기타 시정요구·부대의견 반영 필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¹³⁾ 사업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을 지원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회계 지원액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1.5~ 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있고, 국고지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는 등 집행상의 문제가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주의), 국고지원 시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며(제도개선), 국고지원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할 것(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으나 여전히 법정 기준에 1조 6,366억원 미달하고, 2020년 이후 법정 기준 미달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연도별 목표 지원율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부세¹⁴⁾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내국세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2024년 지역현안·국가지방협력·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 1조 8,500억원 중 8,478억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었으며,

13) 코드: 일반회계 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4932-300

14) 코드: 일반회계 1632-300, 1632-301, 1644-300

수시배정 예산의 86.9%인 7,370억원이 11월 말~12월 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률에 의해 수입이 보장된 간접 조세 수입의 성격을 지니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정부가 매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연말에 교부를 집중하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수시 배정 지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그런데 특별교부세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이후 수시배정 대상 비율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도 국가지방협력 및 재난 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각각 50%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고 연말 교부 집중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의 배정계획 수립 시 특별교부세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하여 적기에 교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II. 위원회별 분석

일러두기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시하였으며, 예비심사가 미완료되어 분석의 기초가 되는 시정요구사항 및 부대의견이 의결되지 않은 상임 위원회에 대해서는 분석의견을 수록하지 않음

1-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국회운영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국회운영위원회	2026. 7. 1.	-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주의 3건, 제도개선 2건 등 총 5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5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대통령경호처	-	-	-	-	1	-	1	1	-
국회	-	-	-	2	1	-	3	3	-
국가인권위원회	-	-	-	1	-	-	1	1	-
합계	-	-	-	3	2	-	5	5	-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2-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감사원·대법원·헌법재판소 소관 결산은 8월 19일, 법무부·법제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결산은 8월 21일에 상정하여 9월 1일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법제사법위원회	2026. 7. 1.	8. 19. ¹⁾ · 21. ²⁾	9. 1.	9. 1.

주: 1) 감사원, 대법원, 헌법재판소 소관

2) 법무부,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법무부 소관 52건, 법제처 소관 9건, 감사원 소관 18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6건, 헌법재판소 소관 11건 및 대법원 소관 27건 등 123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법제사법위원회는 법무부 소관 부대의견 5건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법제사법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법무부	-	-	1	11	44	(4)	52	-	5
법제처	-	-	-	1	8	-	9	-	-
감사원	-	-	1	7	10	-	18	-	-

안은주 예산분석관(eunju012@assembly.go.kr, 6788-4642)

이동현 예산분석관(gerbera@assembly.go.kr, 6788-4644)

(단위: 천)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	-	1	1	6	(2)	6	-	-
헌법재판소	-	-	-	3	8	-	11	-	-
대법원	-	-	4	13	12	(2)	27	-	-
합계	-	-	7	36	88	(8)	123	-	5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법제사법위원회, 「2025회계연도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검찰 기능 개편에 따라 수사 장비·수사 관련 사업 이관 필요(법무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법과학 인프라 구축²⁾ 사업은 새로운 법과학 감정·감식 및 분석기법 개발·연구, 연구역량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 법과학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증거물 등에 대한 감정·감식업무수행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첨단 감정장비의 도입·유지보수 및 관련 장비 설치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사의 수사권 폐지에 따라 검찰의 영상녹화 장비 필요성은 적어지는 반면, 경찰청과 중수청에서는 피의자진술 녹화를 위한 영상녹화장비 소요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검찰 보유 영상녹화장비의 상당수를 수사기관에 이관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검찰 기능 개편에 따라 활용계획이 없는 장비를 수사기관에 이관·재배치하며, 활용수요가 확인되지 않는 장비의 신규 구매와 교체를 제한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직접 수사를 수행하지 않는 공소청의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 영상녹화장비 등에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1333-302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검찰청의 수사 기능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공소 기능이 공소청으로 이관되었으므로 검찰청이 보유하던 수사 장비와 시스템도 업무의 실질에 맞춰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으로 이전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은 개정일 기준으로 장비 이전 범위·시기·자산 평가 방법에 관한 협의를 마치지 못한 채 202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를 들어 공소청은 현장용 모바일 포렌식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공판 과정의 증거자료 수집 등을 이유로 인도하지 않고 있어, 중대범죄수사청이 별도의 도입 예산안을 편성하였는데, 직접수사를 하지 않는 공소청에 현장용 장비가 필요한지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공소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947대인 영상녹화 장비의 이관 여부를 활용 추이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며, 2027년도 예산안에는 이관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직접 수사와 관련되는 장비의 경우 「공소청법」에 따른 공소청의 업무 수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으로의 이관 및 예산안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배상금 지급 사업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법무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국가배상금 지급³⁾ 사업은 공무원의 불법행위나 공공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국가배상금은 확정된 판결이나 배상결정 후 임의변제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국가배상금 지급기한 내에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가배상금 예측 추계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1031-301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법무부는 현재 제기되어 있는 사건과 향후 제기될 사건의 소가를 기준으로 국가 배상금 예산안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나, 최근 국가배상금 지급 판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에도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은 추계상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추계 정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7년 배상금 예산안 편성시 현재 제기된 사건을 소액사건, 단독사건 및 합의사건으로 분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평균 소송 기간을 고려하여 2027년에 선고될 사건에 대하여 인용 비율인 50%로 2027년 예산안 8,390억 6,000만원을 산출하였다.

또한, 2026년 8월 말 기준 배상금을 지급한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등이 있으며, 이 중 선감학원은 총 28건에 대해 269억원을, 형제복지원은 총 49건에 대해 189억원을 지급하였다.

[주요 과거사 사건별 2026년 국가배상 판결금 지급 현황]

(단위: 천, 억원)

구 분	선감학원	형제복지원	삼청교육대	여수순천 10·19
건수	28	49	20	56
금액	269	189	75	262

주: 1. 2026년 8월 31일 기준

자료: 법무부

그런데 형제복지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부산광역시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은 지는 것으로 판결한 예가 있고,⁴⁾ 선감학원과 관련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마찬가지로 공동하여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한 예가 있다.⁵⁾

이와 같이 올해 및 차년도 배상금 중 일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책무)을 지되(「민법」 제760조제1항),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

4)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다21184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 선고 2024나2043196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가합48062 판결.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20. 선고 2022가합569301 판결.

이므로,⁶⁾ 현재로서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과실비율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당사자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진정연대채무에서는 연대채무에 관한 조항이 유추적용되고(「민법」 제414조), 피해자는 가해자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금 전액을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우선 피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그의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구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2026년 부산광역시 및 경기도와 내부 구상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공동불법행위를 인정한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경과한 상황이므로 조속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소가에 인용률 50%를 적용한 방식으로 추계되었을 뿐,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구상 비율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그런데 구상비율이 확정되지 않으면 국가의 최종 부담액을 알 수 없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구상비율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예산안 편성 시 반영하는 등 국가배상금 예산의 추계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성과지표 실적 제고 등(감사원)⁷⁾

① 시정요구의 내용

감사활동경비⁸⁾ 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감사·직무감찰 등 감사활동을 수행하고, 각 기관 자체감사기구를 총괄하며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를 2개 모두 달성하지 못하였고, 특히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 지표의 경우 매년 실적이 하락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산출내역과 방식을 감사 관련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있어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6)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7)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미수록

8) 코드: 일반회계 1131-303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감사원은 지속적 성과 하락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산출근거를 외부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공개 기준을 정립하거나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대체 성과지표를 개발할 것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감사활동경비의 2027년도 성과목표인 경제적 성과는 과거 3개년 평균실적에 10%를 가산하여 산정하였으나,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적 하락 원인에 대한 개선사항을 점검하고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감사활동의 경제적 성과'를 감사활동경비의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는데, 2025년에는 기존 목표 달성도를 고려하여 목표를 조정하였고, 2026년에는 국민제안감사 증가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3조원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은 과거 3개년 평균실적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목표치를 산출하였고, 이로 인해 2025년과 2026년에 3조원이었던 목표 경제적 성과는 2027년 2조원으로 1조원 감소하였다.

[감사원의 감사활동경비 사업의 성과지표]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027 목표치 산출근거
①감사 활동의 경제적 성과	목표 (억원)	32,000	32,500	30,000	30,000	20,000	과거 3개년 평균실적 대비 10%를 가산
	실적 (억원)	23,402	19,556	12,082	-	-	
	달성도	73.1%	60.2%	40.3%	-	-	

자료: 감사원 제출자료를 재구성

경제적 성과 실적은 2023년 2조 3,402억원에서 2025년 1조 2,082억원으로 2년간 1조 1,320억원이 감소하였고, 목표 달성도도 73.1%에서 40.3%로 하락하였다. 시정요구사항은 이러한 하락 추세에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이므로, 2027년 목표치에는 그 점검 결과와 개선방안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2027년 목표치는 지속적 성과 하락에 대한 개선사항 점검이 나타나지 않으며 최근 하락한 실적이 반영된 평균에 10%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산출되었고,

현행 방식은 직전 실적이 목표치에 연동되는 구조여서, 목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감사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따라 경제적 성과 실적 하락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성과지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 예산 조정 필요(대법원)

① 시정요구의 내용

법정통역센터 운영⁹⁾ 사업은 법정 통·번역 서비스의 질적 격차 해소를 위하여 상근 통역인을 고용하여 영상으로 통역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매년 상근통역인 12개월분 인건비를 편성하지만 계약주기상 실제로는 절반가량만 해당연도에 지급되고 잔액은 이월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법제사법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만성적 이월을 해결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법정통역센터 운영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위탁용역 계약기간이 2027년 6월까지로 예산 이월이 예상됨에도 12개월분의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으므로,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실제 집행 가능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6년도 상근통역인 위탁용역 계약기간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로, 2026년도 예산 중 일부가 2027년으로 이월되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상근통역인 인건비 12개월분으로 3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법제사법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해당 회계연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8년도부터는 12개월분의 소요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9) 코드: 일반회계 1143-403의 내역사업

2-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은 시정 12건, 주의 24건, 제도개선 101건 등 중복 1건을 포함하여 총 136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22건을 조치 완료하고, 14건(법무부 10건 및 대법원 4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법무부	-	-	7	8	45	(1)	59	49	10
법제처	-	-	1	3	10	-	14	14	-
감사원	-	-	3	2	11	-	16	16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	1	5	-	6	6	-
헌법재판소	-	-	-	-	16	-	16	16	-
대법원	-	-	1	10	14	-	25	21	4
합계	-	-	12	24	101	(1)	136	122	1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나. 분석의견¹⁰⁾

(1) 검찰청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 제고 필요(법무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공소청운영인건비(총액)(舊 검찰청운영인건비)¹¹⁾ 사업은 공소청 내 검사 및 중앙청, 광역·지방·지청 공무원의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인건비 예산이 매년 과다하게 편성되어 그 잔액이 다른 사업에 집행하기 위한 이·전용 등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불용액의 과다 발생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은 인건비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법무부는 입법예고 직제안의 정원을 기준으로 공소청 인건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나, 이후 직제가 수정되어 공무원 정원이 감축되었고 검사 정원도 감축 용역이 예정되어 있으며, 공소청 출범 시점의 현원이 확정된 정원과 상이하므로 정원 감축과 실제 인력 운영 현황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4일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을 마련하여 같은 달 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는데, 직제안은 공소청 정원을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입법예고 중 검사 정원 등과 관련하여 기존 정원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필요한 인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2026년 9월 법무부는 직제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 정원이 예산안 편성 기준인 6,120명에서 230명 감소한 5,890명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법무부는 검사의 경우 공소청 출범 이후 외부 용역을 통해 정원을 감축하는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직제 대비 수정된 공소청의 정원 현황]

1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회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2026. 10.

11) 코드: 일반회계 7002-101

	입법예고 직제(예산안 편성 기준)		수정된 직제
검사	2,292명	→	2,292명
공무원	6,120명		5,890명 (△230명)

주: 검찰청의 경우 「검사정원법 시행령」 및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참조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2026년 8월 및 9월 검찰청 소속 검사 및 공무원 중 중대범죄수사청에서 근무할 특례임용자를 모집하였고, 총 1,962명이 지원하여 총 1,837명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하였다. 이로 인하여 공소청 출범(2026년 10월 2일)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 대비 368명이 부족하고, 공무원 현원은 6,799명으로 변경된 직제 대비 909명이 많은 상황이다.¹²⁾

이에 따라 검사 현원(1,924명)은 정원(2,292명)에 비해 부족한데, 검사의 인건비는 정원 2,292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그 결원분(368명)에 대해서는 불용 우려가 있다. 또한 직제상 공무원 정원은 5,890명으로 감축되었으나 공소청 출범 기준 현원은 6,799명으로 직제와 909명의 차이가 있으며, 이 인원은 부칙에 따라 별도 정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상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므로¹³⁾ 이전 추이를 본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희망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전 규모와 시기를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입법예고를 기준으로 편성한 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직제와 출범 시점 현원과도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결국 예산안은 입법예고 직제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확정된 직제 및 검사 결원 현황, 중대범죄수사청 이전에 따른 현원 변동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12)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6718호) 부칙 제4조 ②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종전 검찰청 소속 공무원 정원 2,525명(4급 29명, 4급 또는 5급 5명, 5급 178명, 6급 558명, 7급 730명, 8급 408명, 9급 600명, 연구직 등 1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공소청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13)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원의 임용 특례) ②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공소청 소속 공무원(시보 임용 중인 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를 포함한다)으로 보는 사람으로서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제18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7년 4월 30일까지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직제 조정 취지에 맞게 초과현원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검사 결원 및 정원 조정 계획, 중대범죄수사청 이전 추이 등을 반영하여 2027년도 인건비 예산안 편성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 전자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법무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¹⁴⁾ 사업은 공증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공증위원회 운영, 공증인 직무교육, 공증사무 감사 및 공증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기능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다. 그런데, 저조한 전자공증 이용률, 규모가 작은 지정공증인으로 인한 제약, 효과 분석이 어려운 홍보예산 집행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필요성이 충분히 평가될 수 있는 집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무부는 시민 인식 조사·시스템 만족도 조사를 정례화하여 참여율을 높이고, 지정공증인 확대·전자확정일자 도입, 전자공증 기능을 확대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법무부는 전자공증의 이용 건수 및 이용률이 감소하고, 인지도가 저조함에도 연례적으로 신문·인터넷 광고와 책자 발간 등 동일한 방식과 금액으로 전자공증제도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이용률 저조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홍보 방식 및 대상에 따른 효과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는 등 사업이 실효적으로 수행되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공증이란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 또는 전자문서 등에 대한 인증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¹⁵⁾

14) 코드: 일반회계 1038-300

15) 「공증인법」 제2조(공증인의 직무) 공증인은 당사자나 그 밖의 관계인의 촉탁(囑託)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공증인은 위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본다.

1. 법률행위나 그 밖에 사권(私權)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
2. 사서증서(私署證書) 또는 전자문서등(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한 인증

그런데 전자공증제도가 시행된 지 16년, 화상공증제도가 실시된 지 8년이 경과하였지만 아직까지 전자공증의 활용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전자공증 건수는 2023년 3,128건에서 2024년 2,876건, 2025년 2,719건으로 줄고 있으며, 전체 공증 건수 대비 비중은 매년 0.3%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심지어 2026년 8월 기준으로는 이용률이 전년도보다 더 감소하여 0.26%에 불과하다.

[최근 5년간 전자공증 건수 및 이용률 현황]

(단위: 건, %)

구 분	'21	'22	'23	'24	'25	'26. 8.
전자공증건수(A)	2,641	2,763	3,128	2,876	2,719	1,634
화상공증	2,605	2,733	3,101	2,849	2,693	1,617
기타	36	30	27	27	26	17
공증건수(B)	831,125	903,816	888,512	905,051	891,966	617,680
이용률(A/B*100)	0.3178%	0.3057%	0.3520%	0.3178%	0.3048%	0.2645%

주: '기타' 항목은 장비나 프로그램 등 문제로 화상공증을 받기 어려운 경우 전자적으로 신청을 하고 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한 후 공증문서 등은 원격으로 발급받는 것을 뜻함.

자료: 법무부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이용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한 이유로 ① 전자공증시스템의 사용 방식이 불편하고, ② 국회 시정요구에 따라 시민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전자공증에 대한 인지도가 저조하다¹⁶⁾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① 전자공증시스템 사용 방식이 불편하여 이용이 저조하다면 이를 개선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법무부는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촉탁인의 신원 확인 기능 추가 등 지속적으로 시스템 기능을 개선한다는 입장이나, 전자공증제도의 단점 조사결과 시스템상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응답이 47.2%에 달한다¹⁷⁾는 점에 비추어 구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② 인지도 저조가 이용률 저조의 원인이라고 하면서도 홍보의 방식과 내용이 달라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2027년 신문, 인터넷 등 광고비(4,400만원), 전자

3. 이 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정한 사무

16) 법무부의 2025년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25. 11.) p.22에 따르면, 전자공증 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22.5%에 불과하다.

17) 법무부, 2025년 공증제도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보고서(2025. 11.) p.32

공증 안내 책자 및 자료집 발간(900만원) 등 총 5,300만원을 전자공증제도의 홍보 비용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년, 2025년 및 2026년 예산상 홍보 수행 방식(신문, 인터넷 등 광고와 책자 발간) 및 액수와 동일하여, 연례적으로 동일한 방식의 홍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일한 액수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공증의 이용 건수와 이용률이 2023년 이후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홍보 방식이 인지도 및 이용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¹⁸⁾

따라서, 법무부는 전자공증제도의 이용률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전자공증시스템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인지도 조사 결과에 맞추어 홍보 대상과 매체를 조정하여 효과를 점검하여 실질적인 전자공증제도의 이용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3) 변상금의 징수관리 강화 필요(대법원)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변상금¹⁹⁾은 사용하거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수납하는 것으로, 2024년 부산지방법원 공탁금 횡령사건으로 변상금 미수납액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적극적인 징수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각급 법원에 변상금 채권 관리 안내 공문을 발송하여, 변상금 징수절차 및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안내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8)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재 문서 인증에 대해 이루어지는 전자공증시스템을 공정증서의 작성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증인법 법률개정안」(의안번호 2208210)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어 해당 법률 통과시 전자공증 이용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입장이나, ① 현행법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촉탁인을 직접 대면하여 본인확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촉탁인의 확인과 의사의 진실성 확인이 중요하므로 해킹, 시스템 오류 등의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② 인증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증서 작성을 대면이 아닌 화상 방식으로 수행할 소요가 충분할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19) 코드: 일반회계 57-571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대법원은 변상금 수납액과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미수납 채권에 대한 징수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 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2025년도 변상금 수납액과 수납률은 전년보다 감소하였으며, 2026년 7월 말 기준 수납액도 3,900만원으로 2026년도 세입예산액 대비 7.1%, 징수결정액 대비 0.8%에 불과하다.

변상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징수권이 소멸하게 되므로 미수납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효 완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적기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미수납 채권별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회수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고, 소멸시효 중단 조치 및 채납채권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수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최근 4년간 변상금 결산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3	247	247	247	477	50	20.2	10.5	428	-
2024	247	247	247	5,475	546	221.1	10.0	4,924	4
2025	247	247	247	4,994	88	35.6	1.8	4,906	-
2026	546	546	546	4,949	39	7.1	0.8	-	-
2027(안)	546	546	-	-	-	-	-	-	-

자료: 대법원

(4)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 활성화 필요(대법원)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²⁰⁾ 사업은 소년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과정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심리학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보호소년, 행위자 등 사건 관계인의 정신·심리상태에 대한 진단이나 비행·범죄 등의 원인 등에 관한 의견조회 등을 실시할 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집행률이 부진하고 제도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년보호사건 등에서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실시 비율을 높여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예산 감액, 사업명칭 변경을 완료하였고,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실무연구회·커뮤니티 등을 통하여 전문가진단제도 활용의 필요성 등을 안내할 예정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대법원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의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예산 감액, 사업명칭 변경 및 제도 안내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이러한 조치만으로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요구한 제도의 실질적인 활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제도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소년·가정·아동보호사건 전문가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5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2년 11억 8,400만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액된 수준이다. 그러나 2025년 총 사건 수 대비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 비율은 1.8%로, 2024년 3.4%보다 1.6%p 하락하였으며, 2021년 6.0%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가 동 사업에 대해 시정요구한 취지는 단순히 예산 불용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 규모를 축소하라는 것이 아니라, 소년보호사건 등의 처리 과정에서 보호소년 등의 심리·행동 특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적절한 보호처분 등이 이루어질 수

20) 코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161-304의 내역사업

있도록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치 제도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라는 데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로 제시한 예산 감액, 사업명칭 변경 및 제도 안내 등은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치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고 실제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전문가진단 및 의견조치 제도의 활용이 저조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년 등 집행감독 활성화에 따른 전문가 진단 등 비용지원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2022	1,184	547	46.2
2023	1,184	538	45.4
2024	867	601	69.3
2025	856	609	71.1
2026	628	-	-

자료: 대법원

[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가 진단 등 실시 건수]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총 사건 수(A)	29,644	32,020	36,858	35,034	33,005
전문가진단 등 실시건수(B)	1,772	1,349	1,663	1,184	606
총 사건 수 대비 실시건수(B/A)	6.0	4.2	4.5	3.4	1.8

자료: 대법원

3-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정무위원회는 8월 24일 결산을 상정하여 8월 26일 심사를 마쳤다.

[정무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정무위원회	2026. 7. 1.	8. 24.	8. 25. · 26.	8. 26.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정무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가보훈부 소관 32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7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7건, 금융위원회 소관 24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16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20건 등 126건의 시정 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정무위원회는 국가보훈부 소관 7건,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1건, 금융위원회 소관 7건,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1건 등 총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정무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국가보훈부	-	-	5	10	17	-	32	-	7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	-	5	4	9	(1)	17	-	1
공정거래 위원회	-	-	3	5	10	(1)	17	-	-
금융위원회	-	-	1	5	19	(1)	24	-	7

김용오 예산분석관(kyo8810@assembly.go.kr, 6788-4651)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국민권익 위원회	-	-	1	8	8	(1)	16	-	2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	-	3	17	-	20	-	1
합계	-	-	15	35	80	(4)	126	-	18

-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에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함
 3.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정부위원회, 「2025회계연도 정부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나. 분석의견¹⁾

(1) 교통시설 이용지원 사업의 적정 규모 예산 편성 필요(국가보훈부)

① 시정요구·부대의견의 내용

교통시설 이용지원²⁾ 사업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시설의 무임 또는 할인 이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간카드사에 대한 미지급액을 발생시켜온 문제가 있으며, 2026년 예산 부족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가보훈부는 기획예산처와 즉각 협의하여 2026년 발생한 미지급금을 조속히 정산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으며, 반복하여 발생하는 교통시설 미지급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관련 예산을 선 확보하라는 부대의견도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정부의 관행적 예산 편성으로 누적되어 온 시내버스 보조금 미지급액 우선 정산으로 인해 2026년에도 예산 부족에 따른 추가 미지급액 발생이 확실한 상황¹⁾이므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동 사업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부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2139-318

매년 편성된 예산으로 전년도 미지급액을 우선 정산함에 따라 당해연도 지급소요를 감당하지 못해 미지급액이 누적되자, 국가보훈부는 2023년, 2024년 미지급액 정산 규모에 해당하는 40억 1,700만원과 59억 900만원을 20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2025년도 미지급액 정산 규모에 해당하는 56억 7,700만원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였다. 즉 이번 예산안이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통과된다면 2025년까지의 미지급액을 정산할 수 있게 되어 누적된 부족액은 충당된다.

다만, 2026년 예산에도 이전까지의 미지급액 정산 소요 외 당해연도 지급을 위한 예산은 최근 실적에 비해 과소편성되었기 때문에 2026년에도 미지급액 발생이 반복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시내버스 이용지원 지급 소요는 2024년 130억 8,800만원, 2025년 128억 6,700만원이 발생하였으나, 2026년 예상 지급 소요는 83억 2,10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새롭게 발생하게 되는 미지급액 예상치를 약 46억 300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이를 보전하기 위한 재원은 2027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내버스 보조금의 적정 규모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 사업의 운용실적과 2026년도 예상 미지급액 등에 대한 제반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예산처는 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수반되는 재원 규모 증가가 확실한 상황에서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민간사업자에게 피해를 전가해 온 예산 편성 방식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독립의 전당 사업의 완공시점 연기를 고려한 공사비 규모 재검토 필요(국가보훈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현충시설 건립 사업³⁾의 내역사업인 독립의 전당 건립 사업은 독립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위패봉안관을 신규로 건립하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 과정에서 착공 사전절차의 반복적인 지연으로 계획대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서 예산이 낭비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무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가보훈부는 공사예산 편성 시 착공 선행 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실제 집행 가능성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3146-405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6년 6월 착수한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가 2026년 7월 중단되어 완공 시점이 연기되고 이월액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임에도 공사 중단 이전에 수립된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라 예산안이 편성되었으므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2027년 예산 투입 규모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부는 완공 계획을 2025년 12월에서 2027년 9월로 연기하였으며, 연기된 계획에 따라 2027년 예산안에는 잔여 사업비 42억 6,000만원을 반영하는 연차별 투입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착공 이후 시점인 2026년 7월 실시한 표본·시굴조사 결과 매장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정밀발굴조사가 결정되면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국가보훈부는 2026년 12월까지 정밀발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독립의 전당 건립 공사비를 비롯한 2026년 예산 42억 5,900만원 중 37억 9,200만원이 2027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데 2027년 예산안은 2026년 7월 공사가 중단되기 전에 수립한 연차별 투입계획과 같은 규모로 편성되었다. 즉 연차별 투입계획 수립 시점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2026년 예산의 이월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이 편성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훈부는 완공이 연기된 공사계획을 바탕으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재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2027년도 예산안 규모에 대한 조정이 일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부패예방추진단 정규 조직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국책사업 관리⁴⁾ 사업은 부패 사각지대에 대한 관계기관의 합동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국회 결산심사에서 5차례에 걸쳐 법적 근거를 명확히 갖춘 정식 직제 편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정식 직제 편성 없이 훈령에 근거하여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부패예방추진단을 운영해온 문제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7036-311

이에 정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무조정실은 부패예방추진단이 정식 직제 등 법적근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규조직으로서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2026년 3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와의 정규직제화 논의 결과 정규조직화가 결정되었음을 근거로 관련 예산안을 편성·제출하였다. 그러나 아직 정규조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부패예방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4) 상담수당 지급방식 개선방안 검토 필요(공정거래위원회)

① 시정요구의 내용

소비자상담센터 운영⁵⁾ 사업은 전국 단일체계 1372 상담망을 통해 일원화된 소비자상담 및 피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 부족으로 발생한 미지급금을 차년도 예산으로 우선 지급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정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수당 지급방식을 상담건수 기준이 아닌 상담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개선안을 고려하는 등 동일·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2027년 예산안 심사 대비 및 국회 협의를 진행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상담수당 지급방식을 변경하는 개선안을 검토하라는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담수당 지급 관련 제도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여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5) 코드: 일반회계 1451-620

매년 발생한 부족액에 대한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감액 편성되었으며, 정부위원회 시정요구사항인 상담시간 기준 지급방식이 적용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급방식을 상담시간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제출할 필요가 있다.

3-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정무위원회 소관은 시정 16건, 주의 73건, 제도개선 132건 등 중복 17건을 포함하여 총 204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88건을 조치 완료하고, 16건(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5건, 국가보훈부 4건, 공정거래위원회 2건, 금융위원회 3건 및 국민권익위원회 2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	-	5	11	36	-	52	47	5
국가보훈부	-	-	6	22	32	(7)	53	49	4
공정거래위원회	-	-	3	6	21	(1)	29	27	2
금융위원회	-	-	2	17	28	(7)	40	37	3
국민권익위원회	-	-	-	11	7	-	18	16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6	8	(2)	12	12	-
합계	-	-	16	73	132	(17)	204	188	1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정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나. 분석의견⁶⁾

(1)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적정 예산 편성 필요(국가보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제대군인 전직지원금⁷⁾ 사업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한 구직급여 명목의 지원금으로, 매년 재원 부족으로 인해 다른 사업 예산의 이·전용을 통해 충당해오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가보훈부는 전직지원금 지급 대상자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적정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2026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신청자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증액 편성한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2027년도 예산안에 실제 지급 소요의 86.1%만 반영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확인 가능한 실제 지급률을 적용하여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2027년도 예산안에 122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2025년 실제 신청인원을 그대로 반영하여 동결된 지급단가를 적용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추산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급소요 각각에 대해 국가보훈부는 86.1%만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2025년도 실제 지급률 90.4%, 90.9%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예산 부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대군인에 대한 전직지원금은 법정 의무지출에 해당하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인 예산 편성으로 지원금이 조기 소진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제대군인을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와 국가의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으며, 매년 부족액을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충당하는 것은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한 국회의 예산안 심사 취지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정무위원회)」, 2026. 10.

7) 코드: 일반회계 4160-391

따라서 전직지원금 실지급률을 고려하여 적정 예산 규모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가보훈부는 산출된 지급소요의 일부만 반영하는 편성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실현가능성을 검토한 예산 편성 필요(공정거래위원회)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한국소비자원 출연 사업⁸⁾은 소비자권익증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소비자원의 기관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년 이자수입을 제외한 모든 자체수입에서 결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과거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연례적으로 자체수입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는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한국소비자원은 자체수입 예산 편성 시 과거 수입 실적의 추이와 실제 수요 등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수입예산을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수입결손을 해소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연간 자체수입 실현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해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당국 및 국회와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것으로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 항목 중 수탁용역 수입에 수탁할 수 없는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입액은 한국소비자원 예결산의 정합성을 위해 조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의 2027년도 자체수입 중 수탁용역 수입 예산안은 18억 8,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원 증액 편성되었다. 이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기업 확대에 따른 인증수수료 예상 증가분 2억원과 재정경제부 신규 연구용역과제(“생활밀착서비스 개선분야 진단”, 2억원 예정) 수주 예정에 따른 수입 확보 가능성을 반영한 것이다.

8) 코드: 일반회계 1461-630

그런데 재정경제부 신규 과제가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하고 취소되었음에도 한국소비자원 자체수입을 구성하는 수탁용역 수입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즉 수탁이 불가능한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수입액이 한국소비자원 수입-지출 계획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다.

연구과제 수행을 예정한 2억원은 지출 예산 사업비에도 똑같이 반영되어 있어 수지차 계상에 따른 정부출연금 규모 자체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와 같은 경위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은 한국소비자원의 확정적인 수입 결손과 지출 잔액을 유발하여 예결산의 정합성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202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3)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금융위원회)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제도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려금 지급을 위한 것으로, 매년 정부와 한국은행이 1:1 비율로 출연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관계부처 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이유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의 제도개선을 미루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므로,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일반회계로의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동 기금의 일반회계 전환, 소관부처 이관 등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기획예산처, 한국은행, 농림부 등)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으로 조치중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은 자체재원 없이 정부 및 한국은행출연금에 전액 의존하고 있어 반복된 기금 폐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제도개선 없이 2027년도 예산안에 그대로 편성되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동 기금은 자체재원 없이 정부출연금과 한국은행출연금에 전액 의존하고 있어 기금 수입과 지출 간 상관관계가 없으며, 정부의 기금존치평가에서 2019년, 2022년, 2025년 폐지 권고를 받았음에도 관련 제도개선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여 2027년 예산안에도 해당 기금이 그대로 편성되었다.

이처럼 별도 기금 운용의 실익이 없는 가운데 재정 구조의 복잡성만 가중시키는 것은 불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금융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저축장려 사업의 일반회계 이관 및 기금 폐지 방안을 확정하고 해당 내용을 예산안 심사 과정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

4-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8월 20일 결산을 상정하였으나,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7. 1.	8. 20.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4-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은 시정 38건, 주의 18건, 제도개선 113건 등 중복 3건을 포함하여 총 166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57건을 조치 완료하고, 9건(기획예산처 2건, 국가데이터처 2건, 국세청 1건 및 조달청 4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재정경제부	-	-	28	12	44	(2)	82	82	-
기획예산처	-	-	1	1	17	-	19	17	2
국가데이터처	-	-	3	1	11	(1)	14	12	2
국세청	-	-	-	3	17	-	20	19	1
관세청	-	-	3	-	13	-	16	16	-
조달청	-	-	3	1	11	-	15	11	4
합계	-	-	38	18	113	(3)	166	157	9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은 재정경제부 1건 및 기획예산처 1건 총 2건이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소관 부대의견 1건은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재정경제부	1	-	1 ¹⁾
기획예산처	1	1	-

주: 1) 재경부·농식품부·산업부 공동 1건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¹⁾

(1)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과 국고채 발행의 연계 운용 필요(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증가로 인한 국가신인도 하락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세대에 부담을 주는 점을 고려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2026년 예산 편성시, 단순 확장적 재정운용이 아닌 “전략적·성과중심”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성과제고→경제성장→지속가능재정」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도모하는 등 경제·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추가세수로 조성한 미래대응기금이 약 100조원의 여유재원을 운용하는 동시에 일반회계가 유사한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구조는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을 고려할 때 재정운용의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규모 또는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의 경우, 일반회계의 공자기금(총괄계정) 예수이자상환 사업²⁾에 전년 추정 대비 4조 227억원 증액된 29조 5,400억원이 편성되었다. 미래대응기금의 2027년도 계획안에 따른 여유재원 운용 규모는 총괄계정을 포함하여 104조 3,614억원³⁾에 달하는데, 이는 공자기금의 일반회계 예탁 규모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정리하면, 2027년 일반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100조 644억원을 빌리고, 그 재원은 국고채 발행으로 조달된다. 같은 해 미래대응기금은 103조 3,614억원을 비통화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정부 전체로 보면 국고채 금리로 차입한 자금과 비슷한 규모를 그보다 낮은 수익률로 예치할 경우, 그 금리 차이만큼 순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재정경제기획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8711-871

3)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 1조원 포함

한편, 국고채 조달비용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국고채 평균조달금리는 2025년 2.66%에서 2026년 1~8월 평균 3.71%로 높아졌고, 월별로는 6월 4%를 넘어선 뒤 8월에는 4.10%까지 상승하였다. 같은 기간 평균 응찰률은 2024년 321%에서 2026년 1~8월 246%로 낮아져 시장의 소화 여력도 약해지고 있다.

물론 미래대응기금 총괄제정의 목적이 일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세수를 곧바로 활용하기보다는 여유재원 및 미래투자를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임은 일부 이해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일반회계 전출 12조 5,000억 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 효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국고채 시장 여건이 악화되고 있고⁴⁾, 미국·한국의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100조원에 육박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여유재원 일부를 일반회계에 추가로 전출하거나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현재 계획보다 확대함으로써, 공자기금의 신규 국고채 발행 부담을 완화하고 전반적인 국고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의 공자기금 예탁비율은 다른 기금에 비해서도 낮은 편인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중 재정안정화에 필요한 유동성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재원은 일반회계 전출 또는 공자기금 예탁을 확대하여 국고채 발행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세수 결손 대응 부적절 관련(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 시 세입예산 조정 없이 일방적 불용, 내부거래 등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세수결손 대응이 부적절’하였다는 내용의 시정요구사항(주의)을 채택하였다.

이에 기획예산처는 그간의 국회 지적 등을 감안하여, 대규모 세수결손 발생시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는 등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4) 2026년 9월 21일 국고채 10년물의 유통금리는 4.457%로 최근 10년 내 최고 수준에 육박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 및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초과세수 발생시 이를 세입세출 외로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반대로 세수결손 발생시에도 세입세출외로 미래대응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하려는 계획인바, 국회가 2023·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연이어 시정을 요구한 '추가경정예산 없는 세수결손 대응'의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크므로, 보전 전입 등의 요건과 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대규모 세입 변동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편성 요건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현행 재정법체계에서 세입 부족은 원칙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대응한다. 헌법은 예산 성립 후 변경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국세 △59조 1,000억원)과 2024년(△29조 6,000억원)에는 대규모 세수결손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여유자원 전용, 지방교부세·교부금 감액, 불용으로 대응하였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이러한 대응이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규정한 헌법 취지에 비추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의 추가경정예산 없는 세수결손 대응은 법률상 근거가 분명하지 않은 예외적 대응이었으며, 그만큼 정부는 국회에 대한 설명 책임과 비판을 감수하여야 했다.

그런데 개정안은 이러한 대응을 예외가 아닌 상설 제도로 전환하는 측면이 있다. 세입이 부족하면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하되, 이를 세입세출 외로 처리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한도 산정에서도 제외한다(안 제53조제2항제3호, 제70조제3항제7호). 전입 요건은 '일반회계 세입 부족의 보전'으로만 제시되어 있고, 판단 기준·시점·금액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국회에는 변경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는 데 그친다. 그 결과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전용처럼 논란이 되었던 방식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적법한 통상 절차가 된다. 규모 면에서도 총괄계정 여유자금 96조원 수준까지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동원할 수 있다.

이처럼 결손 보전 경로가 마련되면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유인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경정예산 심의는 결손 규모와 대응 방식을 정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회가 세입 추계 오차의 원인을 검토하고, 세출 조정 방안을 결정하며, 정부의 재정운용 책임을 묻는 절차이기도 하다. 반면 세입세출외 전입으로 결손을 보전하면 세입예산과 결산 간 차이가 기금 잔액의

감소로만 나타나므로, 국회가 결손의 원인과 책임을 평가할 기회가 축소된다. 또한 추가세수는 세입예산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세입을 과다 추계할수록 기금 적립액이 커지고 실제 결손은 해당 기금에서 보전받는 구조가 된다. 이에 따라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율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5-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23일 교육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교육위원회는 8월 14일 결산을 상정하였으나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교육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교육위원회	2026. 7. 23.	8. 14.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5-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교육위원회 소관은 시정 8건, 주의 6건, 제도개선 82건 등 총 96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81건을 조치 완료하고, 15건(교육부 15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교육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교육부	-	-	8	6	76	-	90	75	15
국가교육위원회	-	-	-	-	6	-	6	6	-
합계	-	-	8	6	82	-	96	81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교육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나. 분석의견¹⁾

(1)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예산의 적정 편성 필요(교육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립국제교육원 연수 및 교육과정 운영(수입대체경비)²⁾ 사업의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내역사업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함으로써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4532-650

자 하는 것으로,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된다. 그런데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인원이 최근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세입 및 세출예산이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매년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반복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에서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적정액으로 편성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수입대체경비로 운영되는 사업에서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실적과 추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수요에 기초한 적정 세입 및 세출예산액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62억 1,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관련 세입(면허료및수수료)은 167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증액된 세입 규모에 비례하여 세출 예산을 증액하는 등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세출 불균형 해소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내역사업은 수입대체경비사업으로 세출 예산이 실제 사업 규모에 비해 연례적으로 과소 편성되어 왔는바, 이에 따른 부족 예산을 초과수입에 따른 초과지출을 통해 충당하여 운영해왔다.

그런데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면허료및수수료(세입) 예산을 167억 3,700만원 편성한 반면,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세출) 예산에는 6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운영의 세입 대비 세출예산이 100억원 이상 과소편성되었다.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회가 동 사업에 대하여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입 및 세출예산을 적정액으로 편성하라고 시정요구한 취지와 맞지 않는다.

따라서 교육부는 한국어능력시험의 안정적인 운영과 수입대체경비 사업의 세입·세출 균형 확보를 위해 증액된 세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한국어능력시험 운영 사업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2)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편성 방안 검토 필요(교육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³⁾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가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⁴⁾에도 편성되어 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이관되면서 한 부처 내 두 개 사업이 된 것으로, 비슷한 예산을 조개기 편성하였다는 오해를 살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이 여러 곳에 편성되지 않도록 방안을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2026년 예산에 어린이집 영아반 및 유아반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을 동일 회계(영유아특별회계)에 편성하였으며, 향후 동일 회계 내 동일 세부사업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교육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와 어린이집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를 각각 다른 사업에 편성하였는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예산을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담임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처우개선) 2,927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는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1,083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다.⁵⁾

교육부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회계를 2026년부터 일반회계에서 영유아특별회계로 이관하여 두 사업을 동일 회계에 편성함으로써 국회의 시정

3)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40-404

4) 코드: 영유아특별회계 1601-300

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인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은 0~2세 영아반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를 대상으로 하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처우개선비 등'은 3~5세 누리과정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한다.

요구사항을 일부 이행하였으나, 여전히 2027년 예산안에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가 두 세부사업으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유아 교육비 보육료 지원 사업에서는 누리교사 처우개선비가 일부는 보육료 예산에 포함 되고 일부는 별도 처우개선비로 나뉘어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예산 편성 구조가 더욱 복잡한 측면이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도입 이후 누리과정 관련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오면서 국고보조율 100%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영아반 교사 처우개선비는 평균 보조율이 2026년 기준 52.8%인 상황으로 상이한 국고보조율 등으로 인해 동일 세부사업에 편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누리교사 처우개선비 40만 원 중 30만 원은 “어린이집 보육료”에서 지출되는 구조로 재정 이관에 다양한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의 국고보조율 및 편성 방식의 차이와 재정이관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아반 및 유아반(누리반) 교사 처우개선비 예산의 편성구조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

(3)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의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마련 필요(교육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교과용도서 개발 및 보급⁶⁾ 사업의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은 초·중등학교 국·검·인정도서 약 2,800여종을 대상으로 국가·사회적 요구, 발행사 자체 수정, 학생·학부모·교원 등 사용자 요구에 대한 수정·보완 및 이력관리를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부가 명시적인 법령상의 근거 없이 한국교과서연구재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의 반복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이 민간위탁사업비를 집행한 사유와 해당 사업 수행 결정 과정에 대해 현황을 점검하고,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정비 등 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관련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6) 코드: 일반회계 1031-303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10억원을 민간위탁사업비(320-02)로 편성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위탁 사업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정부안을 제출하는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및 이력관리 실시를 위한 10억원을 편성하였다.

민간위탁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법령에 의해 국가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또는 개별 관계 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 기관 또는 관련 민간단체 등에 업무위탁이 가능하고, 관련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매년 입찰 시 단일응찰로 유찰되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⁷⁾

이와 관련하여 교과용 도서의 수정·보완 업무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건('20.12., '23.8.)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교육부는 동 사업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위탁 근거를 명시하는 개정을 추진하였으나('25.9월 입법예고),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 제29조에 위탁의 근거 규정을 우선 마련할 필

7) 교육부는 민간위탁이 아닌 출연 또는 보조의 방식으로는 동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 「국가재정법」 제12조에 따라 출연금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고, 출연은 특정 기관을 지정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현행 방식과 맞지 않음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나, 교과용 도서에 대한 수정은 교육부장관의 권한(「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26조)에 속하는 국가 사무로서 보조금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요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에 따라 해당 내용은 반영되지 못하였다. 현재는 정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는 부재한 상황이다.⁸⁾

따라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상 교과용도서 수정·보완 사업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교과용 도서의 수정·보완 업무 위탁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2건('20.12., '23.8.)이 발의되었으나,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24.5.29.)

6-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월 8일 결산을 상정하여 9월 22일 심사를 마쳤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2026. 7. 1.	9. 8.	9. 18.	9. 22.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4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9건,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4건, 우주항공청 소관 11건 등 58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3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4건, 우주항공청 소관 1건 등 총 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	-	5	9	24	(4)	34	-	3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	-	-	3	7	(1)	9	-	4

김성은 예산분석관(sekim06@assembly.go.kr, 6788-4666)

김지수 예산분석관(jskim05@assembly.go.kr, 6788-4630)

(단위: 천)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원자력 안전위원회	-	-	-	-	4	-	4	-	-
우주항공청	-	-	-	1	10	-	11	-	1
합계	-	-	5	13	45	(5)	58	-	8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회계연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
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의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의 적정 편성 필요(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²⁾은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된 산업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서비스하고 정보의 분석·관리 및 유통에 관한 기술·정책·표준화 등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며 첨단정보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구축·운영하기 위한 출연연구기관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중 2025년 슈퍼컴퓨터 운영유지비는 총수입 229억 4,400만원 중 152억 5,900만원이 지출되고 76억 8,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운영유지비 잔액은 2024년 16억 9,900만원에서 2025년 76억 8,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여 이용료 수입과 기존 이월재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금에 필요 이상으로 편성될 우려가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예산부터 전년도 이월액, 이용료 수입과 잔액, 전기료·유지보수비 등 차년도 예상 소요액을 함께 반영해 실제 필요한 운영재원을 기준으로 출연금을 산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2241-441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출연금 편성 시에 출연금 이월액과 이용료 수입 및 잔액,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였으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KISTI는 슈퍼컴퓨터 운영유지비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출연금(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으로 지원되는 예산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에서 발생하는 이용료 수입을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3) 및 동법 제16조4)에 따르면 슈퍼컴퓨터는 연구기관이 보유·운영하는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해당하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0조5)에 근거하여 유상사용자 사용료 수입은 연구기관이 운영비에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운영비 지원(R&D)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정의)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모 시(제9조제4항 단서에 따른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인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시작되는 시점을 말한다)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제40조(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9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1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내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를 편성할 때, 이용료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⁶⁾에 근거하여 잔액 발생 시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출연금 잔액은 동일항목 사업에 편성하여 사용한다. 이에 따라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의 경우 매년 이월액이 증가하여 2021년 4,600만원에서 2026년 40억 3,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 세부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전망
출연금 수입	합계(A)	10,295	10,569	11,198	13,046	17,033	20,012
	당해년도 기본사업	10,295	10,569	11,198	13,000	15,890	14,521
	전년 기본사업 이월	-	-	-	46	1,143	5,491
출연금 지출	합계(B)	10,249	10,489	11,074	12,474	11,739	15,977
	인건비	722	924	1,223	1,886	1,452	1,534
	유지보수비	4,350	4,300	4,291	4,645	1,355	776
	전기료	3,440	2,906	2,609	3,223	6,342	11,900
	연구재료비	59	253	228	198	115	150
	소프트웨어활용비	254	918	1,201	831	1,173	70
	기타	360	492	646	547	297	649
	연구수당	89	108	148	238	169	259
	위탁연구개발비	70	90	100	100	-	120
	연구지원비 등	680	221	261	300	469	60
	간접비	224	278	367	506	368	459
다음연도 이월(A-B)		46	80	124	572	5,294	4,035

주: 2026년 당초 전기료 지출 예상액은 156억원이었으나, 6호기 개통시기 조정으로 인해 37억원 감소된 119억원 지출 예정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또한 슈퍼컴퓨터 이용료 수입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등⁷⁾⁸⁾⁹⁾에 따라 별도의 회계계정을 마련(KISTI 기술지원사업인 ‘슈퍼컴퓨

6)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기본사업 운영규정」

제15조(기본사업비 결산 및 결산보고) ② 기본사업비는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이 발생하는 경우 기본사업의 각 세목(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 등)의 범위내에서 이월사유와 집행계획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팅활성화 사업’)하여 관리하며, 사용료 잔액은 ‘기술지원준비금’으로 적립 후 동일
계정(슈퍼컴퓨팅활성화 사업)에 재편성하여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에
따라 슈퍼컴퓨터 기술지원준비금은 2021년 0원에서 2026년 38억 4,8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슈퍼컴퓨터 이용료 수입 및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전망
수입 합계(A)	2,009	2,675	4,265	4,070	5,911	6,555
이용료 수입	2,009	2,675	3,239	3,106	4,783	4,164
전기 잔액(기술지원준비금)	-	-	1,026	964	1,128	2,391
지출 합계(B)	2,009	1,649	3,301	2,942	3,520	2,707
인건비	250	250	200	199	152	146
유지보수비	-	-	-	-	3,251	2,146
전기료	359	1,223	2,955	2,635	-	-

제40조(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및 집행) ②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도로
관리하는 회계계정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수입을 별표 9의 운영유지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별표 1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
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8)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회계기준」

제23조(준비금및적립금) 준비금및적립금의 과목은 다음과 같으며, 준비금및적립금의 기중 변동내역은 주
석으로 기재한다.

4. 기술지원준비금 : 연구기관 등이 기술지원사업수익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유지비 등 기술지원사업
관련 경비를 차감한 잔액을 차기로 이월하여 사용하기 위해 비용으로 계상한 준비금으로 한다.

9) KISTI 「기술지원사업 및 자체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정의)

1. '기술지원사업'이라 함은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성과물 등을 활용하
여 발생하는 이용료 등의 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해당 수입이 발생하는 관련 분야를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제3조 (연구비 재원) ① 기술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재원으로 한다.

1. 슈퍼컴퓨터 이용료
2. 연구망 회선 이용료
3. 기타 연구원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성과물 등의 사용에 대한 이용료 등

제13조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 ① 기술지원사업 및 자체사업의 실행예산 편성 및 변경에 관해서는
연구원 '기본사업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비 재원이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기술지원사업
의 실행예산 편성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해당 연구시설·장
비의 운영·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이와 관련된 기타 비용 등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 처리) ① 기술지원사업의 연구기간 종료 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 잔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료를 재원으로 하는 경우 : '기술지원준비금'으로 적립
2. 제1호를 제외한 경우 : 기관에서 흡수 또는 차년도 동일 사업(또는 관련 사업)으로 이월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전망
연구 재료비	211	27	24	21	19	35
연구 활동비	87	116	97	62	80	327
연구수당	32	32	26	26	19	19
간접비	209	-	-	-	-	-
잔액(기술지원준비금)(A-B)	-	1,026	964	1,128	2,391	3,84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러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에서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에서 발생한 이월액 규모는 반영하였지만, 이용료 수입은 반영하지 않고 별도로 산정한 결과, 이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기술지원준비금 잔액이 2026년 38억 4,800만원에서 2027년(안) 53억 50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도 슈퍼컴퓨터 예산안 편성 현황]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 및 지출〉 (단위: 백만원)				〈슈퍼컴퓨터 이용료 수입 및 지출〉 (단위: 백만원)		
출연금 수입	구분	2026	2027	수입 합계(A)	2026	2027
	합계(A)	20,012	18,556		6,555	8,012
	당해년도 기본사업	14,521	14,521	이용료 수입	4,164	4,164
	전년 기본사업 이월	5,491	4,035	전기 잔액 (기술지원준비금)	2,391	3,848
출연금 지출	합계(B)	15,977	17,077	지출 합계(B)	2,707	2,707
	인건비	1,534	1,534	인건비	146	146
	유지보수비	776	776	유지보수비	2,146	2,146
	전기료	11,900	13,000	전기료	-	-
	연구재료비	150	150	연구 재료비	35	35
	소프트웨어활용비	70	70	연구 활동비	327	327
	기타	649	649	연구수당	19	19
	연구수당	259	259	간접비	-	-
	위탁연구개발비	120	120	잔액(기술지원준비금) (A-B)	3,848	5,305
	연구지원비 등	60	60			
	간접비	459	459			
다음연도 이월(A-B)		4,035	1,479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즉,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국회는 두 계정을 연계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라는 취지로 지적하였으나, 동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이 취지에 맞게 편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2027년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 예산은 슈퍼컴퓨터 이용료 수입을 고려하여 감액 조정하고, 슈퍼컴퓨터유지보수비 출연금으로 편성된 지출 항목 중 전기료 등을 이용료 수입으로 부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출연금 편성 시에 출연금 이월액과 이용료 수입 및 잔액,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상황에서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으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 편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슈퍼컴퓨터 유지보수비 출연금을 출연금과 이용료 수입을 종합한 수지차보전방식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공항·항만 방사선감시기의 운영 중단 기간을 고려한 예산편성 필요(원자력안전위원회)

① 시정요구의 내용

감시기 설치·운영¹⁰⁾ 사업은 방사성물질의 국내유입·유통 차단을 위해 공항·항만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재활용고철취급자의 방사선 감시기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2025회계연도 집행 결과 6,3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불용액은 부두터미널 등 감시기 설치 장소의 개보수로 인해 감시기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에는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이에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방사선 감시가 중단되지 않도록 비상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운영 중단 기간을 예산편성 단계에 반영하여 예산불용 및 감시 공백을 방지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은 2025년 및 2026년 예산과 동일하게 기 구축 감시기의 연중 운영을 가정하여 편성되었으므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감시기 중단 기간과 비상 운영 계획을 반영하여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10) 코드: 일반회계 1402-401의 내역사업

2027년 감시기 설치·운영 사업의 예산안은 전년 대비 1억 3,900만원 증가한 35억 8,8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 예산안은 감시기 신규 설치비 3억 8,300만원과 감시기 운영비 32억 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사항과 관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비상운영체계에 대해서는 유사시 감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휴대용 감시장비 활용 등을 통해 대체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전국의 공항·항만의 공사계획과 공사기간을 사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시기 운영비 예산안의 경우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운영 중단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감시기 운영비는 기 구축된 감시기에 대해서는 연중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12개월분을 편성하였고, 신규 구축 예정인 감시기에 대해서는 실제 운영 예상 개월 수를 적용하여 편성하였다. 또한, 운영비 단가는 2025년 및 2026년과 동일하게 민간위탁의 경우 월 80만원, 전문기관(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운영의 경우 월 116만원을 적용하였다.

[2025~2027년 감시기 운영비 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민간위탁	121대×12월×0.8백만원	120대×12월×0.8백만원 +7대×9월×0.8백만원	123대×12월×0.8백만원 +4대×6월×0.8백만원
전문기관 출연	152대×12월×1.16백만원	138대×12월×1.16백만원 +5대×9월×1.16백만원	142대×12월×1.16백만원 +4대×6월×1.16백만원
합계	3,276	3,184	3,588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물론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이후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정요구사항을 정부 예산안에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결산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국 공항·항만의 공사계획 및 공사기간을 사전에 최대한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는 현재 파악 가능한 공사계획 등을 바탕으로 2027년 감시기 운영비 산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감시기 운영 중단 기간 중 휴대용 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비상운영체계를 가동할 계획인 만큼, 기존 감시기의 운영비를 일률적으로 12개월분 편성하기보다는 시설별 운영 중단 예상기간과 비상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실제 운영 계획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 공항·항만 등의 공사계획에 따른 감시기 운영 중단 예상 기간을 파악하고 휴대용 감시장비 등을 활용한 비상운영 계획을 구체화한 후 이를 반영하여 감시기 운영비 예산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3)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편성 및 출연금 교부 필요(우주항공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R&D)¹¹⁾ 사업은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자생적인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민간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및 특화지구별 거점센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수행기관의 실행이 부진하고 미집행 재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는 부지확보·설계·건축 등 단계별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연금의 교부 시기와 규모를 조정하고, 미집행 예산이 수행기관에 반복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정요구가 제기되었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은 사업추진 지연으로 수행기관의 미집행 재원이 누적되고 있으므로,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안을 실제 추진일정과 연도 내 집행 가능성에 맞추어 조정하고, 출연금은 수행기관의 기

11) 코드: 일반회계 1333-302

존 보유재원과 실제 자금소요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동 사업 예산안은 250억원으로, 2026년도 184억 6,800만원 대비 65억 3,200만원(35.4%)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4년 이후 수행기관의 실집행 부진이 지속되면서 미집행 재원이 누적되고 있다. 2024년에는 교부액 95억원 중 9억 5,0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0.0%에 그쳤고, 85억 5,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다. 2025년에는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교부현액 315억 5,000만원 중 43억 9,100만원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이 13.9%에 그쳤으며, 271억 5,9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었다. 또한 2026년 7월 말 기준 교부현액 400억 8,700만원 중 실제 집행액은 9억 7,100만원으로, 실집행률은 2.4%에 불과하다.

[연도별 교부액 및 사업수행기관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			사업시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2024	10,000	10,000	9,500	9,500	-	9,500	950	8,550	-	10.0
2025	23,000	23,000	23,000	23,000	8,550	31,550	4,391	27,159	-	13.9
2026	18,468	18,468	12,928	12,928	27,159	40,087	971	-	-	2.4

주: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 우주항공청

이러한 점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연차별 총사업비 계획뿐 아니라 내역사업별 실제 추진일정과 기존 미집행 재원의 활용 가능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발사장 구축사업은 2027년 실시설계 완료 이후 3분기 착공을 계획하고 있고,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사업은 같은 해 4분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민간발사장과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착공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등의 신규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착공이 연도 후반에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시설계 완료, 총사업비 협의, 입찰·계약 등 선행절차의 이행일정과 계약에 따른 선금·기성금 지급계획을 확인하여 연도 내 실제 집행할 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주환경시험시설은 4분기 착공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선금 지급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자금소요를 토대로 편성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내역사업별 · 비목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		2025		2026		2027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	집행	예산(안)
민간발사장 구축		2,000	109	2,600	2,113	100	48	10,796
	공사비	-	-	-	-	-	-	9,241
	시설부대경비	1,900	101	2,500	1,940	-	23	1,455
	설계비	1,890	100	2,470	1,938	-	-	-
	감리비	-	-	-	-	-	-	1,384
	시설부대비	10	1	30	2	-	23	71
	과제관리비	100	8	100	173	100	25	100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1,500	81	3,600	567	2,700	129	244
	시설부대경비	810	-	-	247	-	2	-
	설계비	464	-	-	245	-	-	-
	감리비	206	-	-	-	-	-	-
	시설부대비	140	-	-	2	-	2	-
	장비비	-	-	3,225	-	2,325	-	-
	예비비	315	-	-	-	-	-	-
	과제관리비	375	81	375	320	375	127	244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00	411	10,000	586	6,420	56	13,722
	공사비	-	-	7,087	-	-	-	9,822
	시설부대경비	2,000	20	2,413	20	1,998	10	-
	설계비	2,000	20	2,413	20	60	-	-
	감리비	-	-	-	-	1,858	-	-
	시설부대비	-	-	-	-	80	10	-
	장비비	-	-	-	-	-	-	3,400
	예비비	-	-	-	-	3,872	-	-
	과제관리비	500	391	500	566	550	46	500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500	45	3,200	284	2,348	527	-
	설계비	1,167	-	-	21	-	347	-
	장비비	-	-	2,866	-	2,015	-	-
	과제관리비	333	45	334	263	333	180	-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		2,000	304	3,600	841	6,900	211	238
	공사비	-	-	-	-	2,805	-	6
	시설부대경비	428	-	-	428	313	27	-
	설계비	428	-	-	428	298	27	-
	시설부대비	-	-	-	-	15	-	-
	장비비	1,212	-	3,240	-	3,422	-	-
	과제관리비	360	304	360	413	360	184	232

주: 2026년 7월 말 기준

자료: 우주항공청

한편, 우주항공청은 총사업비 관리에 따른 비목별 사용계약으로 기존 미집행 재원을 일부 신규 소요에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러한 계약으로 신규 예산의 편성이 필요하더라도 출연금의 교부 시기와 규모는 실제 자금소요에 따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수행기관에 상당한 미집행 재원이 누적되어 있는 만큼 기존 재원의 사용 가능 범위를 확인하고, 사업 진척도와 계약에 따른 지급일정에 맞추어 출연금을 교부함으로써 보유재원이 추가로 누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2024회계연도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내역사업별 실시설계 완료, 총사업비 협의, 입찰·계약, 착공 및 장비 발주·납품 등 단계별 일정과 기존 미집행 재원의 활용 가능 범위, 계약에 따른 지급계획을 토대로 2027년도 실행 가능액을 재산정하고 예산안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출연금은 수행기관별 기존 보유재원과 실제 자금소요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교부함으로써 미집행 재원이 반복적으로 누적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6-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은 시정 12건, 주의 65건, 제도개선 104건 등 중복 22건을 포함하여 총 159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47건을 조치 완료하고, 12건(과학기술정보통신부 9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건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1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	6	49	80	(15)	120	111	9
우주항공청	-	-	-	6	6	-	12	12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6	9	11	(6)	20	18	2
원자력안전위원회	-	-	-	1	7	(1)	7	6	1
합계	-	-	12	65	104	(22)	159	147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7-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23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외교통일위원회는 8월 19일 결산을 상정하였으나,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외교통일위원회	2026. 7. 23.	8. 19.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7-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은 시정 2건, 주의 34건, 제도개선 83건 등 중복 2건을 포함하여 총 117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04건을 조치 완료하고, 13건(외교부 3건, 통일부 7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건 및 재외동포청 1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외교부	-	-	1	21	42	(1)	63	60	3
통일부	-	-	1	11	29	(1)	40	33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	-	1	6	-	7	5	2
재외동포청	-	-	-	1	6	-	7	6	1
합계	-	-	2	34	83	(2)	117	104	13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나. 분석의견¹⁾

(1) 출국납부금 환급 지연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외교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제질병퇴치기금 폐지 후속조치(ODA) 사업²⁾은 「국제질병퇴치기금법」의 폐지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 10.

(2025.1.1.)에 따라 항공권 구매 시 미리 지불한 출국납부금 환급 및 환급 시스템 운영 등을 위한 것이다. 외교부는 2025년 예산안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등 기금 폐지에 따른 외교부의 사전 준비작업이 면밀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징수위탁 수수료를 조속하게 지급하고, 출국납부금 환불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에 징수위탁 수수료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조치완료를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외교부는 출국납부금 환급시스템 개통 지연 및 환급대상 규모 축소 등으로 2026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2027년도 출국납부금 환급시스템 운영비로 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개인정보 확보 등 관련 절차가 지연되면서 환급시스템이 2026년 10월해야 개통될 예정이며, 2026년도 예산 편성 당시 환급대상을 약 600만명으로 예상하여 환급금 6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현재 확보한 개인정보는 약 150만 건으로 당초 예상 규모의 약 2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 확보된 개인정보를 기준으로 연내 집행 가능한 환급금은 최대 약 15억원 수준이며, 시스템 구축비 등을 포함하여 2026년도 예산 116억 3,000만원 중 약 70억원이 2027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출국납부금 환급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음에도, 개인정보 확보 지연 등으로 환급시스템 개통이 늦어지고 환급금 집행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교부는 2026년도 예산의 상당 부분이 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코드: 일반회계 2435-405

(2)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급여별 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통일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³⁾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기본금, 주거지원금, 정착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나원 수료 인원이 예산 편성 시 예측치(500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여 2024년도 예산 187억 5,700만원 중 80억 5,300만원(42.9%)이 불용되는 등 2022~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반복하여 집행률 저조가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입국 추이와 예산집행 추세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불용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주의)하였고, 통일부는 예산편성 기준인원을 하향 조정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편성기준 인원을 220명으로 낮추고 집행률 계수(0.9)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20억 1,700만원(17.1%) 감액된 97억 7,1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계수와 급여별 산정인원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의 조치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계 근거를 보완하여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정착기본금과 주거지원금 산출에 220명 기준인원과 함께 0.9의 계수를 곱하여 실질적으로 198명 수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2025년 수료인원(238명)과 2026년 7월말까지의 수료 추이(118명)를 감안하면 인원은 실수요와 가깝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예산의 과다 편성 문제는 상당 부분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집행률 계수 0.9가 급여 종류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었고, 주거지원금 임대보증금을 2026년에는 280명을 260세대로 산정한 반면 2027년에는 220명을 그대로 220세대로 산정하였고, 새출발장려금은 지원인원을 650명에서 1,200명으로 늘리면서도 '신청 인원 증가 추세' 외에 구체적인 산정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어,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3) 코드: 일반회계 2337-301

따라서 통일부는 급여별로 실제 지급 실적과 과거 예산 대비 오차를 반영하여 소요를 추계하고, 집행률 계수, 주거지원금 지원 세대수, 새출발장려금 지원인원 등 급여별 산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8-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방위원회는 8월 20일 결산을 상정하여 8월 31일 심사를 마쳤다.

[국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국방위원회	2026. 7. 1.	8. 20.	8. 24. · 25.	8. 3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방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방부 소관 59건, 병무청 소관 9건, 방위사업청 소관 35건 등 103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소관 부대의견 6건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국방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국방부	-	-	14	23	22	-	59	-	6
병무청	-	-	1	2	6	-	9	-	-
방위사업청	-	-	7	17	11	-	35	-	-
합계	-	-	22	42	39	-	103	-	6

주: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자료: 국방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방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8.

나. 분석의견¹⁾

(1) 군배상금 지출소요의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국방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군배상금²⁾ 사업은 국가 또는 군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 등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등을 계기로 삼청교육·한국전쟁 관련 등의 과거사를 중심으로 국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국가배상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도 증가함에 따라 2025회계연도에 대규모 이용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방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관련 소송 경과 및 사건별 피해자 수 추이 등을 분석하고 배상금 소요를 면밀하게 추계하여 연례적으로 다른 사업으로부터의 대규모 이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군배상금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실제 소송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지 못하여 실제 소요대비 과소계상되었으므로, 국방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현재 계속 중인 소송의 청구액, 과거 평균 지급률 등을 반영하여 실제 지출소요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배상금 사업은 「국가배상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군인이나 군무원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2020년부터 계속 이·전용 등을 통해서 군배상금 예산을 증액하였는데, 2025년에는 그 규모가 1,718억 7,400만원에 달하였다. 소송판결이 확정된 후 배상금이 곧바로 지급되지 않으면, 확정시점부터 연이율 12%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는데, 예산의 부족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배상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어서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외교통일위원회·국방위원회)」, 2026. 10.

2) 코드: 일반회계 7136-301

2025년에는 자연이자 62억 3,900만원을 추가로 국고에서 지출하였다. 또한 2026년 9월초 기준 실제 배상금 소요발생액은 2,206억 1,100만원이지만, 이 중에서 830억 700만원만이 피해자에게 지급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과거부터 국회에서 시정요구가 있었음을 고려하여 2027년도 군배상금 예산안을 전년 대비 302억 8,900만원 증액하였으나, 군배상금 소요추정액인 1,571억 6,900만원 대비 부족한 금액이다.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무지출인 군배상금 예산은 실제 소송진행 경과를 면밀하게 반영하여 편성될 필요가 있고, 자연이자 지급에 따른 추가적인 국고지출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실제 소송진행 현황 등을 고려하여 군배상금 예산안을 적정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시정 19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55건 등 중복 9건을 포함하여 총 106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91건을 조치 완료하고, 15건(국방부 9건, 병무청 1건 및 방위사업청 5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	-	16	24	32	(5)	67	58	9
병무청	-	-	1	3	13	(2)	15	14	1
방위사업청	-	-	2	14	10	(2)	24	19	5
합계	-	-	19	41	55	(9)	106	91	15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방위원회 소관은 국방부 1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해당 부대의견 1건은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국방부	1	-	1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9-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8월 24일 결산을 상정하여 9월 1일 심사를 마쳤다.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행정안전위원회	2026. 7. 1.	8. 24.	8. 25.	9.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22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4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소관 4건, 인사혁신처 소관 7건, 경찰청 소관 13건, 소방청 소관 10건 등 70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행정안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1건, 인사혁신처 소관 1건, 경찰청 소관 1건, 소방청 소관 1건 등 총 4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행정안전부	-	-	-	2	20	-	22	-	-
중앙선거 관리위원회	-	-	2	5	7	-	14	-	1
진실· 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	-	-	4	-	-	4	-	-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인사혁신처	-	-	-	1	6	-	7	-	1
경찰청	-	-	-	1	12	-	13	-	1
소방청	-	-	-	2	8	-	10	-	1
합계	-	-	2	15	53	-	70	-	4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행정안전위원회,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방우대정책 실효성 제고 방안 검토 필요(행정안전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²⁾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할인발행을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25년부터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함께 지방소멸 완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하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보다 높은 국비지원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집행결과를 보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비수도권은 계획액보다 75억 4,600만원, 818억 5,200만원을 초과한 반면 인구감소지역은 계획액보다 551억 7,700만원이 미달하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자치단체 유형별 국비 배분액이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감소지역 등에 국비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추경 회차별 지자체별 교부액과 실제 지원율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사업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인구감소지역 등의 국비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1

지원액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원인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배분 격차의 원인분석에 따른 배분기준과 지원조건의 개선방안을 반영하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대비 3,000억원(26.1%) 증액된 1조 4,500억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국비지원율을 3~9%로 차등화하고 기존 수도권, 비수도권 일반지역, 인구감소지역 구분이 아닌 새로운 지역구분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미정이다. 다만, 할인액에 대한 지방비 부담률은 종전과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5%를 적용할 예정이다.

2025년 일반발행 지원분의 배분계획과 실제 교부액을 비교하면, 인구감소지역은 당초 2,979억원을 배분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교부액은 2,393억원으로 계획 대비 586억원(19.7%) 감소하였다. 반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와 수도권·비수도권 일반지역의 교부액은 각각 계획 대비 62억원(57.4%), 523억원(7.9%) 증가하였다. 국비지원율을 높게 적용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오히려 교부액이 계획보다 축소된 것으로, 국회의 시정요구는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원인을 규명하고 배분기준을 보완하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일부 지역의 저조한 집행실적이 예상보다 낮은 판매량과 발행계획 변경 등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할 뿐, 유형별 배분 격차와 집행부진의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은 국비지원율을 최대 9%까지 상향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면서, 지방비 매칭부담이나 제한된 발행수요 등 지역별 제약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보완방안은 충분히 제시하지 않고 있어, 원인 분석을 토대로 배분기준을 개선하라는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 유형별 배분 격차와 집행부진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지방비 부담과 발행수요 등 제약요인에 대한 보완방안과 배분계획 변경·재배분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2027년도 지역구분과 지원율, 유형별 배분계획 및 집행관리체계에 반영하여 증액 재원이 인구감소지역 등에 계획대로 배분되고 실제 상품권 발행·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2) 사이버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목표의 적정성 제고 필요(경찰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사이버수사역량강화³⁾ 사업은 학생, 기업, 노인 등 전 계층 국민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사이버범죄 예방 강의 등을 통해 예방 교육 실시 및 예방 수칙 등 전파를 위한 홍보 활동 전개 등을 하는 것으로,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건수가 36만 1,577건에 달하는 상황에서 성과목표를 15만 5,253건으로 설정한 것은 실제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에 비해 목표를 지나치게 낮게 설정한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경찰청은 사이버범죄 발생 추이 및 검거실적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이버수사역량강화사업의 성과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고,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최근 3개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총합을 기준으로 성과 목표를 산정하고 있으나,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 및 증가하는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를 고려하여 검거율 등 대체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로 사이버범죄 검거건수를 설정하고, 2027년 목표치를 17만 9,624건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기존 목표치를 최근 3개년(2023~2025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 실적의 평균에 1.03을 곱하여 산출한 것을,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1.05로 상향하여 곱하여 산출한 값이다.

[경찰청의 사이버수사역량강화 사업의 성과지표]

(단위: 건)

성과지표	구분	2023	2024	2025	2026	2027	'27 목표 산출근거
사이버 범죄 검거건수	목표	151,239	144,462	155,253	179,624	179,624	(최근 3개년 사이버범죄 검거건수의 총합/3)x1.05
	실적	138,171	170,140	204,903	-	-	
	달성도	91.4%	117.8%	132%	-	-	

자료: 경찰청 제출자료를 재구성

3) 코드: 일반회계 1231-315

그러나 이러한 산출 방식은 여전히 목표치가 사이버범죄 발생 규모와 연계되지 않고 있다. 2025년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는 2024년 발생 건수인 31만 4,519건에 비해 4만 7,058건이 늘어난(약 15.0% 증가) 36만 1,577건인데, 2025년 검거건수 20만 4,903건을 기준으로 발생 대비 검거 비율은 약 56.7%이다.

반면 2027년 목표치 17만 9,624건은 2025년 발생 건수 기준으로도 약 49.7%에 해당하여, 발생 건수가 2025년 수준이더라도 검거 비율이 약 7.0%p 낮아지는 목표이다. 2026년 9월 기준 사이버범죄 발생 건수가 이미 24만 81건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목표와 발생 규모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경찰청은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사이버범죄 발생 추이와 최근 검거실적의 증가 추세, 발생 대비 검거율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2027년 성과목표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위탁선거경비에 대한 결산통제 방안 마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시정요구의 내용

위탁선거관리 사업⁴⁾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위탁선거 관리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위탁단체가 부담하는 경비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세입세출예산 외로 운용되어 국회의 결산심사와 감사원의 결산검사 대상에서 누락될 우려가 있다. 국회는 2023·2024회계연도 결산에서도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5년간 위탁선거경비의 연도별 수입·집행·잔액 현황과 별도계좌 관리방식을 공개하고, 해당 자금을 국가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거나 최소한 이에 준하는 수준의 결산통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위탁선거관리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됨에도 국가부담분 2억 9,100만원만 편성하고 위탁단체 부담경비는 여전히 예산 외

4) 코드: 일반회계 1131-306

로 운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회의 재정통제가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위탁선거관리 사업 예산안은 2억 9,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500만원 증액되었다. 2027년 3월 3일 실시되는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관리경비 2억 5,300만원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인데, 이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사무편람 제작, 지도·감독 경비에 한정된다. 선거의 준비·관리, 계도·홍보, 위반행위 단속에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는 위탁단체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집행한 뒤 남은 금액을 반환한다.

2027년에는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되므로 예산 외로 운용되는 규모가 2025년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직전 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 2023년에는 위탁단체가 납부한 경비가 381억 6,300만원, 집행액이 340억 200만원이었던 반면, 같은 해 세출예산으로 집행된 위탁선거관리 사업비는 4억 8,800만원이었다.

2025년 8월 개정된 같은 법률로 위탁선거경비의 산출기준과 결산서를 국회에 보고하는 의무가 신설되었으나,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집행되는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선거경비를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재정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4) 주택사업관리 사업의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소요 추계 정확성 제고 필요(인사혁신처)

① 시정요구의 내용

주택사업관리⁵⁾ 사업은 공무원연금기금으로 공무원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퇴거세대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2025년 4분기 임대보증금 반환예산 부족을 예상하고 11월에 529억 7,300만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나 이 중 약 20.4%인 108억 5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이는 반환 소요 추계가 실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거세대 추이와 주택시장 여건 등을 반영하여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소

5) 코드: 공무원연금기금 3151-333

요를 정확히 추계하도록 하고, 과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주택사업관리 사업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임대보증금을 2025년 실행액보다 555억원 적은 3,152억원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퇴거세대 추계를 다시 점검하여 반환 소요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계획안은 3,491억 7,500만원이며, 이 중 퇴거세대에 돌려주는 주택임대보증금⁶⁾은 3,152억 1,400만원이 편성되었다. 주택임대보증금은 정상운영 임대주택 2,367세대(만기퇴거 1,154세대, 2025년 중도퇴거율 12.0%를 적용한 중도퇴거 1,213세대)에 2025년 말 평균보증금 1억 3,200만원을 곱한 금액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주택임대보증금의 경우 그동안 당초 계획이 과소 편성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매년 이루어지고 있다. 2023년 279억원, 2024년 810억원, 2025년 530억원이 연중에 증액 변경되었으며, 2026년 9월 말 현재까지 계획액의 81.5%가 집행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올해 100억원 정도의 증액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⁷⁾

2027년 계획액은 2026년 집행액 예상치와 유사한 수준인 3,152억원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그동안 기금운용계획의 증액 조정이 반복되어 왔고, 최근에는 증액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충분한 재원이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6) 반환금및손실금(710-03)

7) 공무원연금공단은 2026년 10월 말 기준 주택임대보증금 반환 실적 확인 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사업관리 사업 최근 5년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연도	계획액			계획현액 (B)	집행액 (C)	집행률 (C/B)
	당초	증감액	수정(A)			
2022	420,560	△64,600	355,960	355,960	295,081	82.9
2023	379,690	27,901	407,591	437,171	435,880	99.7
2024	307,475	80,981	388,456	421,948	421,788	100.0
2025	328,555	52,973	381,528	415,345	404,335	97.3
2026. 9월말	308,555	-	308,555	308,555	251,529	81.5

자료: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공단)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여금 최근 퇴거세대 실적과 중도퇴거율 추이를 반영하여 보증금 반환 소요를 점검하도록 하여, 연중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5)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 사업의 청년인턴 운영 개선 필요(인사혁신처)

① 부대의견

행정효율성제고및역량개발⁸⁾ 사업의 청년인턴 운영 내역은 청년에게 공공부문 업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서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것으로, 2025년 예산 3억 5,800만원 중 3억 500만원이 집행되고 5,300만원(14.8%)이 불용되었는데, 중도 퇴사 등으로 예산 불용이 발생하면 청년에게 실질적인 업무경험을 제공한다는 사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인사혁신처는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등에 따른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근무환경 개선·업무경험 제공 등을 통해 청년인턴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8) 코드: 일반회계 7033-302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청년인턴 운영 예산의 2027년도 예산안은 채용 인원과 기간만 조정하였을 뿐 중도 퇴사 실태 분석이나 근무여건 개선 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행정안전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행정안전위원회 결산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하여 운영 개선 방안과 연계하여 편성 인원과 기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청년인턴 예산을 3억 1,100만원으로 전년보다 5,400만원 줄였다. 2026년에는 17명 6개월과 10명 3개월(27명)으로 산정하였으나 2027년에는 22명 5개월(월 240만원)로 바꾸었다.

하지만, 채용 기간 조정을 통해 불용 규모를 낮추는 방식만으로는 부대의견이 요구한 근무환경 개선 취지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⁹⁾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청년인턴의 중도 퇴사 현황과 사유를 분석하여 국회에 제시하고, 업무경험 제공과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여 편성 인원과 기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119항공정비실 건립 집행 관리 및 법 개정 조속 추진·대비 계획 마련 필요(소방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지원 사업¹⁰⁾은 소방헬기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여 시·도 경계를 넘는 광역 대응과 항공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119항공정비실 공사비 114억 9,500만원의 74.0%인 85억 1,700만원이 2026년으로 이월되는 등 집행이 부적절하였고, 2027년 7월 준공 예정인 정비실이 정상 가동되려면 정비인력 충원, 「항공안전법」 개정 및 정비조직인증 취득, 중앙-지방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이 사업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정비실이 적기에 완공되도록 하고, 통합정비체계 구축일정에 맞추어 정비인력 확보와 장비 구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사업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9) 인사혁신처는 2025년에 채용된 청년인턴 22명 중 3명이 퇴사하였고, 2026년도에는 채용된 28명 중 5명이 퇴사하였음.

10) 코드: 일반회계 1132-312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119항공정비실이 '27년 7월 준공 후 적기에 기능을 발휘하려면 「항공안전법」 개정, 수시직제 심의, 인건비 확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법 개정은 완료되지 않았고 정원도 미확정이어서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소방청은 119항공정비실이 적기에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

소방청은 9월 30일 기준 2026년도 119항공정비실 건립 예산현액(17,207백만원)의 48%인 8,264백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현액의 41.8%인 7,187백만원을 10~12월에 추가 집행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공사비 기성과 감리비는 연내 전액 집행할 계획이며, 9월 말 공정률도 실적 39.40%로 목표 39.19%를 상회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월이 예상되는 금액은 1,756백만원(예산현액의 10.2%)으로, 전액 관급자재의 납품·지급 일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였다.¹¹⁾

다만 연내 집행 예정액 7,187백만원 중 5,592백만원(77.8%)이 12월에 집중되어 있다. 소방청은 공사 4건의 1차수 계약기간이 '26.11.30.에 종료되므로 계약 일정대로 완료되면 준공금이 12월에 지급된다고 설명하였다. 2027년은 건립사업의 마지막 연도이므로, 소방청은 관급자재 이월분을 포함한 집행이 준공 일정('27.7월)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항공안전법」 제32조 제2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라 정비를 위탁하려면 정비조 직인증을 받은 자 또는 제작자에게 위탁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인 소방청은 인증 대상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시·도 소유 헬기를 위탁받아 정비할 근거가 없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 '26.7.9.)은 '26.9.8.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된 단계로,¹²⁾ 개정법은 공포일부터 시행되므로 국회 통과 시점이 곧 인증 신청 가능 시점이나, 국회 심의 결과와 인증 취득 소요기간에 따라 시범 운영 개시 전 인증 취득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인력 측면에서 소방청은 정비실 운영을 위한 수시직제(2과 6팀, 정원 57명)를 '26.8월 소방청 내 조직 담당부서에 제출하여 '26년 수시직제 심사 안건으로 추진

11) 이월 대상 관급자재는 폐쇄형배전반 태양광발전장치, 빅도어설치, 지열설비공사, 자동제어·전력제어 등 17개 품목이다. 소방청은 주문제작 설비의 납품·검사가 2027년에 이루어지고 계약금액 전액의 예산을 확보해야 발주할 수 있어, 2027년 지급분을 이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12) 국토교통부는 개정 방향에 동의하면서 인증 대상 범위(자체 항공기만 정비하는 경우의 제외 여부 등)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다.

중이다. 직제는 행정안전부의 직제 심의와 기획예산처의 인건비 심의를 거쳐 확정 되므로, 정원 확보 전에는 인건비 편성이 어렵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2027년도 요구안 중 운영비 2,606백만원은 자산취득비 2,483백만원(95.3%)이 대부분이고 인건비는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정비실이 준공되더라도 법 개정, 직제 협의, 인건비 반영 등이 준공 시점('27.7월)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이 적기에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소방청은 법 개정 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및 기획예산처와의 직제·인건비 협의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정비실이 적기에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9-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시정 5건, 주의 12건, 제도개선 53건 등 중복 2건을 포함하여 총 68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62건을 조치 완료하고, 6건(행정안전부 3건, 경찰청 1건, 인사혁신처 1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	-	3	8	21	(1)	31	28	3
경찰청	-	-	1	1	12	-	14	13	1
소방청	-	-	1	1	6	-	8	8	-
인사혁신처	-	-	-	2	6	(1)	7	6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	8	-	8	7	1
합계	-	-	5	12	53	(2)	68	62	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은 행정안전부 2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건 등 총 3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행정안전부	2	-	2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	1	-
합계	3	1	2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¹³⁾

(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적정 예산 편성 필요(행정안전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¹⁴⁾은 원도심 침체, 인구감소 등으로 발생한 폐교나 옛 주민센터, 공터 등의 유휴 공공시설을 리모델링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 매년 실집행이 저조하였고('19년 29.3%, '20년 57.0%, '21년 30.2%, '22년 35.9%, '23년 79.0%) 2024년에도 예산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실집행률이 52.7% 수준이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조사업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행정안전부는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연례적 이월 방지를 위한 결산 시정요구와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도입에 따른 수요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53.2% 증액 편성하였으므로, 사업 간 지원조건을 고려한 수요 재조사를 통해 적정 예산규모를 산정하고, 다년도 사업은 연도별 집행 가능액에 따라 예산을 편성·교부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2019년 신규 편성 이후 실집행 저조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대비 9억 500만원 증액된 26억 500만원이 편성되었다.

공간조성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와 공사 등에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됨에도 단년도 사업으로 편성하고, 실제 집행 가능액과 관계없이 국비를 일괄 교부하여 온 것이 연례적 이월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2027년도 예산안은 종전의 산출방식을 유지한 채 증액되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교부하라는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6. 10.

14)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131-301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실적행 현황('24~'26)]

(단위: 백만원, %)

구분	부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 · 피보조 기관 등)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 률 (B/A)
	본예산	추경 (A)								
2024	6,186	6,186	6,186	6,186	-	6,186	3,258	2,928	-	52.7
2025	3,011	3,011	3,011	3,011	-	3,011	1,832	1,179	-	60.8
2026(7월말)	1,700	1,700	978	978	-	978	45	-	-	2.6

자료: 행정안전부

아울러 2027년에는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 지원에 1조 5,000억원이 편성되면서 기존 공간조성 사업의 수요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비 50%를 지원하는 반면, 복합센터는 신축형 최대 200억원, 리모델링형 최대 100억원의 국비 정액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복합센터로 이전되는 수요와 중복 지원 소요를 반영한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의 적정 예산규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년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 소요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추진단계와 연내 집행 가능액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실적행 이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특별교부세에 대한 수시배정 지양 필요(행정안전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특별교부세¹⁵⁾는 지방교부세의 한 종류로서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예외적이고 긴급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며 내국세의 19.24% 중 3%를 재원으로 한다. 그런데 2024년 지역현안 · 국가지방협력 · 재난안전관리 예산현액 1조 8,500억원 중 8,478억원이 수시배정 예산으로 지정되었고, 수시배정 예산의 86.9%인 7,370억원이 11월말~12월말 사이에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었다.

15) 코드: 일반회계 1632-300, 1632-301, 1644-300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법률에 의해 수입이 보장된 간접 조세 수입의 성격을 지니는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정부가 매년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연말에 교부를 집중하는 데 대하여 지적하였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 지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한편, 특별교부세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특별교부세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이후 수시배정 대상 비율이 일부 축소되었으나, 2026년에도 국가지방협력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각각 50%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고 연말 교부 집중도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7년도 예산의 배정계획 수립 시 특별교부세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의하여 적기에 교부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지역현안특별교부세 8,359억 8,400만원, 국가지방협력특별교부세 2,089억 9,600만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1조 44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특별교부세는 법률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재원으로서 간접 조세 수입의 성격을 지니므로, 사업계획이나 추진상황에 대한 검토를 근거로 배정 시기와 규모를 별도로 결정하는 수시배정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기타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사유로 연례적으로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고, 구체적인 산정근거 없이 총 교부예정액의 25%·50%·100% 등 일정 비율이 설정되어 있어 지정의 필요성과 규모의 적정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예외적이고 긴급한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이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면 추가경정예산 반영과 당해연도 사업 추진에 제약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적인 예산 운용과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2026년에는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 대상 비율이 종전 100%에서 50%로 축소되는 등 일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가지방협력 및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여전히 각각 예산액의 50%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어 특별교부세의 수시배정을 지양하라는 결산 시정요구가 충분히 이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개별 재정수요의 특성과 교부 필요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예산액

의 일정 비율을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그 필요성과 규모의 합리적 근거가 충분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여전히 연말 교부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는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한 대응과 복구뿐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한 재정수요에도 적기에 활용될 필요가 있으므로, 연말 교부 집중이 지속될 경우 필요한 시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집행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수시배정 대상 비율의 축소와 함께 실제 교부 시기의 개선 여부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도 예산의 배정계획 수립 과정에서 특별교부세가 수시배정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의 연말 교부 집중 원인을 점검하고,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재정수요는 조기에 심사·교부하며 긴급한 수요는 발생 시 신속히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기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부 일정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3) 영상녹화 실시율 제고 개선책 마련 필요(경찰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수사인권보호활동¹⁶⁾ 사업의 진술영상녹화실운영 내역사업은 영상녹화·진술녹음 안정적 정착을 통한 수사 과정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검거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건수로 측정되는 영상녹화 실시율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고, 저조한 실적의 주요 원인으로는 음성녹음 대비 영상녹화 자료 처리 절차의 번거로움 및 수사관들의 인식 부족 등이 지적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경찰청은 영상녹화 실시율이 지속 감소하는 데 대해 명확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원인 규명에 따라 실시율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경찰청은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16) 코드: 일반회계 1231-317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경찰청은 진술영상녹화실의 녹화건수가 연례적으로 감소하고, 녹화실시율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진술영상녹화실을 신규로 신설하는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진술녹화실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신설 소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2025년말 기준 전체 경찰관서 262개에서 925개의 진술영상녹화실을 운영하고 있고, 2027년 진술영상녹화실의 노후장비 교체 7억 1,500만원, 진술영상녹화실의 16개의 신설을 위한 공사비로 1억 6,400만원, 신설 녹화실 장비 구입비로 7억 1,500만원 등 총 1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진술영상녹화실에서의 녹화 실시율은 저조한 실정이다. 2024년 검거건수 대비 녹화 실시율은 4.5%에 불과하고, 2025년에는 3.9%이며 2026년 8월 기준으로도 녹화실시율은 4.0%에 불과하다. 녹화건수 또한 2021년 79,170건, 2022년 78,103건, 2023년 60,926건, 2024년 55,399건 및 2025년 48,350건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진술영상녹화실 녹화실시율]

(단위: 건,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8.
검거건수	1,136,661	1,133,788	1,186,123	1,222,484	1,225,879	819,321
녹화건수	79,170	78,103	60,926	55,399	48,350	32,713
녹화실시율	7.0	6.9	5.1	4.5	3.9	4.0

자료: 경찰청

이와 같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실도 녹화실시율이 저조한 점을 고려하면, 신규 진술영상녹화실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조사 종료 후 영상녹화자료를 CD 2부로 제작하여 사건 기록에 편철해야 하는 등 절차에 따른 업무 부담으로 녹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찰청의 설명과 같이 녹화 실시율이 낮은 원인이 녹화자료의 제작·편철 등 영상녹화 이후의 절차 및 업무 부담에 있다면, 현재의 낮은 활용도를 개선하

기 위해서는 녹화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에 앞서 영상녹화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경찰청은 기존 진술영상녹화실의 활용실태와 녹화 실시율이 낮은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영상녹화에 수반되는 업무 부담 및 절차 등을 개선하여 기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한 후, 실제 수요와 기존 시설의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규 진술영상녹화실의 신설 필요성 및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성과 평가체계 마련 및 전문성 제고 필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위법행위예방활동¹⁷⁾ 사업의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범죄 예방·감시 활동을 수행하는데, 한시적 인력 중심 운영과 정치관계법 이해도가 낮은 일반 시민 위주의 채용, 교육 성과 관리 미흡으로 투입 대비 성과가 낮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량·정성 성과를 반영한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인력풀 확보 등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것을 시정요구(제도개선)하였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문성 강화를 추진하고 성과수당 지급기준 등 지침을 정비하겠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위법행위예방활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을 95.1% 증액하면서도 국회가 요구한 성과 평가체계와 인력풀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의 조치결과 등을 고려하여 성과 평가체계 마련, 인력 채용·교육 방식 개선 등 사업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예산은 86억 3,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2억 800만원(95.1%) 증액되었는데, 이는 수당 단가(일 82,560원→101,008원)와 가동률 계수(0.5→0.78)가 상향된 데 따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공정선거지원단을 상시 운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증액 사유로 들고 있다.

17) 코드: 일반회계 1133-333

그러나 국회가 요구한 성과 평가체계는 2027년도 사업설명자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동 사업의 성과지표(위법행위 고발조치 기소율)는 2024년 이후 마련되어 있지 않고, 후속조치에도 정량·정성 평가 결과나 인력풀 확보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동 사업은 2026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사업개선’ 판정을 받았다.

또한 지적사항의 원인으로 제시된 한시적 인력 중심 운영, 일반 시민 위주의 채용, 교육 성과 관리 미흡에 대한 개선 내용도 확인되지 않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추진방향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적 교육’을 제시하고 있으나, 2027년도 예산안에서 공정선거지원단 교육훈련 경비는 6,400만원(중앙 100만원, 시·도 6,300만원)으로 전년과 같고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교육 경비는 1,3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문성 강화를 위한 관리 방안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선거지원단의 활동 실적을 정량·정성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와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정치관계법 이해도를 고려한 채용 기준, 체계적인 교육·성과 관리, 선거 경험 인력의 인력풀 운영 등을 통해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5)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의 직위당 편성단가 현실화 필요(인사혁신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¹⁸⁾ 사업은 공무원을 국제기구에 고용휴직 형태로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국제분담금의 형식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국제기구와의 협의 지연과 파견자 인건비 예산 부족으로 신규 임용이 지연되고 일부 직위의 장기 공석이 반복되었다. 2024년 기준 130개 직위(46개 기구) 중 11개 직위에서 6개월 이상 장기 공석이 발생하였고, 신설된 10개 직위 중 7개 직위는 연내 임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제 현안 대응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인사혁신처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파견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8) 코드: 일반회계 1934-531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직위당 편성단가를 2억 6,500만원으로 산정하여 2025년 실집행단가 3억 8,000만원과 여전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과 정부의 조치결과 등을 고려하여 실집행 수준에 맞게 단가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고용휴직제도운영(ODA)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480억 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 7,800만원(8.5%) 증액되었다. 기존 135개 직위에 단가 2억 6,500만원(4.8% 인상)을, 실무급 7개 직위에 2억 2,360만원을, 신규 10개 직위에 반년분을 적용하고, 환차손 보전 등으로 93억 100만원을 반영하였다.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당 예산편성단가 및 실집행단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7(안)
예산편성단가(A)	221	212	225	231	239	265
실집행단가(1년 환산, B)	290	312	338	369	380	-

자료: 인사혁신처

그런데 실집행단가는 연평균 7.0% 오른 반면 편성단가는 2.0% 오르는 데 그쳐 격차가 2021년 6,900만원에서 2025년 1억 4,100만원으로 커졌다. 2025년 58개 직위 인건비 부족분 186억 500만원은 2026년(93억 400만원)과 2027년(93억 100만원)에 나누어 반영되고 있어, 결산상 집행률이 100%로 나타나도 실제로는 전년도 부족분을 다음 연도 예산으로 메우는 구조이다. 2027년 편성단가도 실집행단가보다 1억원 이상 낮아 같은 부족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최근 실집행단가와 환율 추이를 반영하여 직위당 편성단가를 현실화하고, 전년도 부족분을 이연 반영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파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6) 2개년 사업 전환 첫째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보조금의 이월·불용 방지를 위한 교부·집행 관리 필요(소방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실화재훈련시설 구축¹⁹⁾ 사업은 소방청이 시·도 소방교육훈련기관의 실화재훈련 시설 설치·보강에 국고보조금(보조율 50%)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는 서울소방학교의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았으나 보조금 13억 6,500만원이 전액 교부되어 2025년으로 전액 이월된 점이,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는 이월된 보조금 중 7억 4,800만원(교부액 대비 54.8%)이 불용·반납된 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소방청이 연내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2024 회계연도), 보조금이 연내 집행되지 않는 사유를 분석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2025회계연도)을 시정요구하였다. 소방청은 2024회계연도 시정요구사항에 대해 5대 개선과제(사전 심사 강화, 교부방법 개선, 집행점검 강화, 2개년 사업 추진, 교육 정례화)를 마련하고 2026년부터 구축 사업을 2개년 사업으로 편성하였다고 조치완료('25.12.3.)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연례적 이월·불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2026년 예산현액의 약 70%를 1차로 일괄 교부한 국고보조금 중 9월 말 기준 실집행률은 12.9%(울산 1개소)에 불과하고 2027년도 예산안에는 2차년도 예산과 신규 사업이 편성되어 있다.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2차 교부를 1차 교부분의 집행 진척에 따라 결정하는 등 개소별 집행 상황을 관리하여 2개년 사업 전반에서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실화재훈련시설 구축 사업은 2026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편성되어, 2026년에는 충북의 훈련시설 구축(1년차)과 울산(2년차)·강원(1년차)·전남(1년차)의 훈련시설 보강이 추진되고 있다. 이는 시정요구에서 지적된 이월·불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²⁰⁾ 소방청은 5대 개선과제에 따라 분할교부를 선택하고, 교부금

19) 코드: 일반회계 1132-324

20) 서울시는 2024년 교부된 보조금 13억 6,5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전액 2025년으로 이월하였다. 소방청에 따르면 서울은 도심 입지 특성상 돔 형태 훈련장의 설계가 완료된 이후에야 구축 계약을 발주할 수 있는데, 2025년 설계의 경제성 검토로 훈련장을 콘크리트조에서 철골구조로 변경하면서

교부 전 지자체의 연내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월별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소방청은 2026년 7월 개소별 현재 단계가 상이한 4개소²¹⁾에 예산현액의 약 70%(2,298백만원)를 1차로 일괄 교부²²⁾하였으나, 9월 말 기준 국고보조금 집행액은 울산 296백만원(1차 교부액의 12.9%)이 유일하고 충북·강원·전남은 집행액이 없다. 소방청은 4개소 모두 연내 집행을 계획하고 있어 이월·불용 예상액이 없다고 밝혔다²³⁾, 11월 말 2차 교부 이후 1·2차 교부분을 11~1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설명하였다. 개소별로 공정과 지급시기가 상이한 만큼, 소방청은 2차 교부를 1차 교부분의 집행 진척과 계약·공정 현황에 따라 결정하고, 개소별 추진 단계를 관리하여 계획한 연내 집행이 이루어지고 이월·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충북, 강원, 전남의 2차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²⁴⁾, 2026년 1년차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2027년에는 이월분과 2차년도 사업이 동시에 집행되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한다. 이에 소방청은 2027년 2차년도 교부 시에도 2026년 교부액의 집행 실적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산 구축 사업은 2027년도에 신규 1년차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부산시는 2027년 상반기 중 일상감사, 계약심사 및 입찰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서울 사례가 설계·건축 단계의 지연에서 비롯된 만큼, 소방청은 부산의 건축물 설계·인허가·지방비 확보 등 사전 준비 사항을 점검하여 1년차 사업이 연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설계·건축허가 절차를 다시 거쳐 2025년 6월에야 설계용역에 착수하였고, 2025년 11월 선금 약 6억원만 집행되어 7억 4,800만원(교부액 대비 54.8%)이 불용되었다.

21) 개소별로 현재 충북 계약체결 후 세부사양 검토, 울산 공사시공, 강원 설계용역, 전남 설계 단계이다.

22) 개소별 2026년 예산현액 대비 1차 교부액(교부율)은 충북 683백만원 중 478백만원(70%), 울산 1,420백만원 중 994백만원(70%), 강원 590백만원 중 413백만원(70%), 전남 590백만원 중 413백만원(70%)이다. 소방청은 교부 전 지자체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교부율은 소방청이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정하였다고 설명하였다.

23) 한편 지방비는 충북 683백만원, 울산 385백만원, 전남 27백만원, 강원 13백만원이 집행되어, 사업은 지방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24) 2027년도 예산요구안 2,657백만원 중 충북 구축 682백만원과 강원·전남 보강 1,180백만원이다.

10-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8월 26일 결산을 상정하여 9월 1일 심사를 마쳤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문화체육 관광위원회	2026. 7. 1.	8. 26.	8. 31.	9.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4건, 국가유산청 소관 18건 등 102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16건, 국가유산청 소관 4건 등 총 2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문화체육 관광부	-	-	4	19	62	(1)	84	-	16
국가유산청	-	-	-	4	14	-	18	-	4
합계	-	-	4	23	76	(1)	102	-	20

주: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자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의 기존 실적을 고려해 면밀한 집행관리 필요(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청년문화예술패스²⁾ 사업은 청년 대상 문화예술관람료를 지원하여 문화 분야 전반에 대한 이용경험 축적으로 청년을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으로 편성되었다가 2027년부터는 미래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다. 동 사업은 2024년 시범사업으로 실시된 이후 2024년과 2025년 모두 집행률이 40%에 미치지 못하였고, 2026년 영화·도서까지 지원분야를 확대하였으나 전체 이용금액의 41.2%가 영화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청년문화예술패스 이용 가능 프로그램의 적극적 홍보 및 웹툰·웹소설로의 사용처 확대 등 집행실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용 분야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은 지속적인 집행 부진과 낮은 1인당 실사용액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이 큰 폭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와 과거 집행 내역을 고려하여 면밀한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동 사업은 2024년 신규 편성 이후 계획현액 170억원 중 42억 4,100만원을 집행(집행률 24.9%)하였으며,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 95억 1,000만원을 포함한 계획현액 265억 1,000만원 중 103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9.0%에 불과하였다.

2026년 또한 8월 말 기준 2025년 이월액 포함 계획현액 408억 8,300만원 중 111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집행률 27.2%) 올해 또한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10.

2)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6-300

1인당 평균 사용액도 2024년 수도권 114,044원, 비수도권 111,449원, 2025년 수도권 118,387원, 비수도권 110,269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2026년 8월 현재 수도권 60,647원, 비수도권 72,563원에 불과하여, 1인당 최대 20만원에 달하는 지원한도를 충분히 소진하고 있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 계획안은 전년 대비 무려 2,092.6% 늘어난 7,925억 2,700만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는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19~20세에서 19~34세 청년층으로 대폭 확대하고, 대상 인구 대비 수혜율 목표치 역시 2026년 30% 수준에서 70%로 대대적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결과이다.

그러나 동 사업이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 부진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대규모 증액안의 집행가능성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 실집행률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장르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2026년 들어 영화와 도서가 지원 대상 장르로 새롭게 추가되면서, 8월 기준 영화 부문이 전체 이용 금액의 41.1%, 이용 건수의 75.3%를 차지하는 등 특정 장르로의 쏠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면 2024년 13.0%였던 클래식/오페라의 이용 금액 비중은 2026년 2.7%(건수 기준 1.1%)로 급감하였고, 연극(10.4% → 3.8%)과 발레/무용(2.3% → 0.4%) 역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국악의 경우 매년 0.1% 이하의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장르 간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다.

영화 관람 지원은 청년들의 패스 사용 편의성을 높여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단기간으로 끌어올리는 데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들에게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순수 문화예술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향후 자생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육성하겠다는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를 퇴색시킬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가 단순한 영화 관람 지원으로 머무르지 않도록 장르 편중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 대중문화와 기초예술 간의 균형 있는 문화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체 패스 지원금 중 일정 한도는 클래식, 연극, 무용 등 기초예술 관람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 지정하거나, 기초예술 분야 예매 시 할인 혜택 및 추가 포인트를 제공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적 유인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K-콘텐츠 펀드 출자 사업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K-콘텐츠 펀드 출자³⁾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영화계정, 콘텐츠 전략펀드, 글로벌리그 펀드 등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1,480억원이 증액된 6,030억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경우 2022~2025년 청산된 17개 자펀드 중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펀드는 1개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16개 중 15개는 원금 손실을 기록하는 등 수익률이 저조하다. 기준수익률이 0%로 설정되었음에도 이를 달성하지 못한 펀드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펀드별 수익률 부진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출자 분야·규모와 운용전략, 운용사 선정기준 등에 이를 반영하는 한편, 수익성과 정책목적을 균형 있게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모태펀드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 출자 사업은 수익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영화계정의 2027년 예산안이 270억원 증액된바,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펀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서 수익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모태펀드 문화 및 영화계정의 청산펀드 출자수익률(IRR, Internal Rate of Return)을 살펴보면, 수익을 기록한 분야는 2개에 불과하며 대다수 펀드가 원금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문화계정 내 게임 분야가 23.78%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하며 기준수익률(7%)을 크게 상회하였고, 모태펀드 출자비율 60%로 조성된 문화산업 분야가 2.15%의 양(+)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출자 분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며 투자 손실이 발생했다. 문화계정에서는 드라마 분야가 △26.34%로 가장 큰 폭의 손실을

3) 코드: 일반회계 1231-322

보였으며, 융합콘텐츠 기획개발 분야 역시 두 차례에 걸쳐 각각 $\Delta 23.52\%$, $\Delta 9.64\%$ 의 저조한 실적을 냈다. 이 외에도 글로벌콘텐츠($\Delta 16.23\%$), 제작초기($\Delta 10.61\%$, $\Delta 4.22\%$), 문화산업($\Delta 9.58\%$, $\Delta 7.84\%$, $\Delta 4.90\%$), 방송드라마($\Delta 6.83\%$), CG/3D($\Delta 6.69\%$), 융합콘텐츠($\Delta 5.61\%$), 공연예술($\Delta 4.97\%$), 콘텐츠영세기업($\Delta 4.51\%$), 방송영상($\Delta 3.94\%$) 등 계정 전반에 걸쳐 기준수익률에 크게 미달하는 수익률이 확인된다. 아울러 영화계정 역시 중저예산영화 분야가 $\Delta 9.24\%$, 한국영화 분야가 $\Delta 4.05\%$ 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문화계정의 경우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재투자한다는 계획으로 2027년 예산안에서 59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나, 영화계정은 270억원 증액한 720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저조한 수익률이 지속될 경우 민간이 참여할 유인이 사라져 정부의 부담 구조가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펀드의 지속가능성이 어려워질 수 있으며, 민간 시장에 해당 영역의 투자 성과에 관한 왜곡된 신호를 제공하여 오히려 민간 투자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문화계정 및 영화계정의 수익률이 저조한 사유를 분석하여 수익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수중유산발굴및보존처리 사업 용도에 맞는 일반용역비 집행 및 일반연구비 별도 편성 필요(국가유산청)⁴⁾

① 시정요구의 내용

수중유산발굴및보존처리⁵⁾ 사업의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은 수중발굴 유물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과학적 보존방안 수립 및 해양문화유산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700만원이 감액된 12억 7,700만원이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여야 하는 지식기반의 조사·연구 관련 용역 4건을 일반용역비로 집행하여 예산을 비목 외로 사용하여 예산 집행 지침을 위반하였다.

4)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수록

5) 코드: 일반회계 1231-322

이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향후 수중유산 보존처리 관련 지식기반의 과학적·학술적 조사연구 사업 추진 시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과업 성격에 부합하는 일반연구비 비목을 별도로 편성하고, 예산 집행지침을 위반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7년도 국가유산청 예산안의 ‘수중유산 보존처리’ 내역사업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총예산 12억 7,700만원 중 일반용역비(210-14)로 3억 600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해당 일반용역비의 세부 산출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중발굴 고선박 보존처리 연구’ 과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이 중 ‘수중발굴 유물 과학적 조사연구’ 명목으로 2억원이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내역사업 내에 지식기반의 학술적 조사연구에 부합하는 일반연구비 비목은 편성되어 있지 않다. 이는 연구 성격의 과업 예산이 여전히 일반용역비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유산청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업 예산 편성 방식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수중 유물에 대한 과학적·학술적 조사연구 사업을 적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집행 과정의 지침 위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과업 성격에 부합하는 일반연구비 비목을 별도로 설정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과업 목적에 맞는 정확한 비목 편성은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본 요건이므로, 향후 연구용역 성격의 예산을 일반연구비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

10-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시정 7건, 주의 19건, 제도개선 69건 등 중복 3건을 포함하여 총 92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80건을 조치 완료하고, 12건(문화체육관광부 9건 및 국가유산청 3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	-	6	9	54	(2)	67	58	9
국가유산청	-	-	1	10	15	(1)	25	22	3
합계	-	-	7	19	69	(3)	92	80	12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문화체육관광부	1	1	-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⁶⁾

(1)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지역자율) 사업의 예산 불용 주의 및 실행률 개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⁷⁾은 지자체의 사업포기 및 지방비 미확보, 부동산 소유권 미확보 등으로 인해 2024년 148억 9,200만원이 불용되었고, 보조사업자 단계의 실행률도 35.8%에 불과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등 제반 여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고려해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하고, 집행을 제고를 위해 사업관리를 강화하며 지자체의 사업추진을 독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추진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집행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2025년 실행액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며, 2026년 예산은 집행 부진사업에 대해 감액 반영되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하고 일부 대상지역의 경우에는 사전 이행절차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문체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문체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지원 10개소의 사업비 1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최근 4년간 실행내역을 보면 예산현액 대비 실행률이 매우 저조하여 매년 대규모 이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3년 실행률은 31.5%(98억 6,800만원), 2024년 35.8%(134억 5,600만원), 2025년 41.2%(158억 8,700만원)

6)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 10.

7)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 2151-302

로 만성적인 집행 부진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이 매년 200억원 이상 발생하였다. 특히 2026년의 경우 8월 말 기준 예산현액 313억 9,600만원 중 집행액은 95억 4,600만원에 불과하여 실집행률이 30.4%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2026년 지원 대상 지자체의 8월 기준 실집행현황을 보면, 지방비 미확보 및 사업 포기 등으로 아직 교부하지 못한 지자체가 전남광주(광주) 등 5곳이고, 교부가 이루어진 지자체의 경우에도 사업 집행 상황은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본청(62.0%)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30%를 밑도는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 홍성(0.1%), 충남 보령(0.3%), 전남광주 신안(2.3%), 경북 의성(4.0%) 등은 교부현액 대비 실집행액이 사실상 전무한 수준이다. 예산이 아예 교부되지 못한 지자체가 다수 존재하는 데다, 교부된 예산마저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자체의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10개 지역에 대한 사업비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13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2026년 각 지자체별 사업추진경과를 보면 2027년도에도 신규 사업 1곳(강원 동해시)을 제외하고 예년과 같이 상당한 수준의 이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 상황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문체부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면밀한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일부 대상지역의 경우 선행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적정규모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 실적행률 제고 필요(문화체육관광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종교문화시설건립⁸⁾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및 자부담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연례적으로 실적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사업지연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2024년 실적행률이 0원인 사업이 존재하는 등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소홀하였고,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을 위반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의 집행 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보조사업자의 연내 집행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연례적 이월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산 편성 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편성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사전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소통 및 현장 점검으로 실적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은 연례적으로 실적행률이 저조한바, 문체부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 현장 점검 등 실적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의 예산안으로 21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최근 4년간 실적행내역을 보면 2023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51.5%였으며, 2024년 53.8%, 2025년 48.1%, 2026년 7월 현재 26.5%로 전반적인 사업집행 실적이 매우 부진하며, 하반기 집중 집행을 고려하더라도 연말까지 대규모 미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미집행된 전년도 이월액이 당해 연도 예산현액을 증가시키는 가운데,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이월액 규모는 2022년 50억 4,000만원에서 2025년 219억 6,600만원으로 4년 연속 증가하였다. 또한, 불용액은 2024년 1억 8,900만원에서 2025년 21억원

8) 코드: 일반회계 1131-302

으로 증가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된 양상을 보인다.

이에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연례적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동 사업은 예산 증액 규모에 비해 현장의 사업 추진 여건 및 보조사업자의 집행 준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보조사업자의 실제 집행 가능성을 검토하여 예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실집행 점검 및 공정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 집행부진이 이어지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관리 필요(국가유산청)⁹⁾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국가유산 경관개선¹⁰⁾ 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의 집행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대량 이월이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가유산청은 향후 사업추진 경과를 보다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을 요청하고, 해당 사업의 이월 및 집행 부진이 2025년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구체적 집행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가유산청은 집행현황, 이월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을 분할 교부하고, 월별 집행 점검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바, 국가유산청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 현장 점검 등 실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의 최근 3년간 실집행내역을 보면 2024년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49.0%였으며, 2025년 55.3%, 2026년 8월 현재 42.8%로 전반적인 사업집행 실적이 부진하다.

9) 위원회별 분석(교육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수록

10) 코드: 일반회계 1231-301의 내역사업

2026년 8월 기준 다섯 군데 사업지의 실집행 현황을 보면 태안군 한 곳의 경우에만 조성 공사가 원활히 추진되어 실집행률이 88.0%를 기록했으나 예천군의 경우 교부현액 9억 5,000만원에 대한 실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원시, 나주시, 완도군의 실집행률은 각각 2.5%, 0.5%, 2.3%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에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관리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제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경관개선 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어 집행 부진이 이어지지 않도록 집행 현장 점검 등 면밀한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11-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소관 결산은 8월 26일,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소관 결산은 8월 31일에 상정하여 9월 2일 심사를 마쳤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2026. 7. 1.	8. 26. ¹⁾ · 31. ²⁾	9. 2.	9. 2.

주: 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소관

2)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소관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57건, 해양수산부 소관 76건, 농촌진흥청 소관 9건, 산림청 소관 29건, 해양경찰청 소관 13건 등 184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14건, 해양수산부 소관 5건, 농촌진흥청 소관 3건, 산림청 소관 1건, 해양경찰청 소관 5건 등 총 2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천)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농림축산 식품부	-	-	-	4	53	-	57	-	14
해양수산부	-	-	-	10	66	-	76	-	5
농촌진흥청	-	-	-	1	8	-	9	-	3
산림청	-	-	-	4	25	-	29	-	1
해양경찰청	-	-	-	-	13	-	13	-	5
합계	-	-	-	19	165	-	184	-	28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5회계연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농협 재정 부담 완화 필요(농림축산식품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농촌고용인력지원²⁾ 사업의 내역사업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농협 1개소당 1억 원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담(주당 35시간 임금 보장, 4대 보험료 등)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가동률 제고, 이용료 현실화, 유휴 인력 발생 시 손실 보전 체계 도입, 국비 지원액 확대 등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에 따른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시정요구 사항으로 채택하였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10.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지원계정) 1140-3014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하게 사업 운영 지역농협 1개소당 1억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운영 지역농협 개소를 2026년 130개소에서 2027년 200개소로 대폭 확대할 계획인데, 2027년도 예산안에도 지역농협 개소당 사업비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어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가동률 제고, 이용료 현실화, 유희 인력 발생 시 손실 보전 체계 도입 등 지역농협의 재정 부담 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갯벌유산보전원 건립 사업의 차질 없는 사업 관리 등 필요(해양수산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갯벌유산보전원 건립³⁾ 사업은 유네스코가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한국의 갯벌에 대하여 통합 관리하라는 권고를 근거로 이를 위한 보전원을 건립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 기간과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부족으로 2024년에는 전액 불용, 2025년은 전액 이월시키는 등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갯벌유산보전원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갯벌법 개정안」이 신규 공공기관 설립에 대한 재정경제부 이견 등으로 농해수위 의결 후 법사위 계류중으로, 법안 통과 지연에 따른 운영 차질의 우려가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해양수산부는 대규모 건립사업의 경우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차별 필요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을 관리하는 한편, 「갯벌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갯벌유산보전원의 차질 없는 출범을 위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3) 코드: 일반회계 1031-310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갯벌유산보전원 건립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7월 기준 실집행률이 저조함(15.6%)에도 전년 대비 836.6% 증액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8억 4,300만원(836.6%)이 증액된 99억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7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15.6%로 저조함에도 연내 집행 가능성 및 사업 추진 경과를 감안하지 않고, 연도별 투자계획대로 2년차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2027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과다 편성 방지 및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산림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국립 치유의 숲 조성⁴⁾ 사업은 향기, 경관 등 산림치유 자원을 활용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울산과 대구에 각 1개소씩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은 건설보상비(토지매입비) 예산을 구체적 소요에 대한 사전 검토와 계획 없이 과다 편성하여 28억 9,000만원이 산림재해대책비로 이용감되는 등 예산의 77.5%가 이용·이월·불용처리되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산림청은 국립 치유의 숲 조성 사업 추진 시 실질적인 소요 예산에 대한 사전 검토와 면밀한 계획 수립을 선행함으로써 연내 집행 가능 범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대규모 이·전용 및 이월·불용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과다편성을 방지하고 예산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4) 코드: 일반회계 1031-310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8.9%) 전년 대비 27.4% 증액하였으므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5,400만원이 증액된 109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6년도 7월 기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대비 실집행률이 8.9%로 저조함에도 연내 집행가능성 및 사업 추진 경과를 고려하지 않고, 연도별 투자 계획 대로 연차별 공사비를 편성하였으므로, 연내 집행 가능한 규모로 2027년도 예산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시정 9건, 주의 28건, 제도개선 152건 등 중복 1건을 포함하여 총 188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72건을 조치 완료하고, 16건(농림축산식품부 5건, 농촌진흥청 1건, 산림청 1건, 해양수산부 4건 및 해양경찰청 5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	-	-	5	55	-	60	55	5
농촌진흥청	-	-	-	3	11	-	14	13	1
산림청	-	-	-	8	29	-	37	36	1
해양수산부	-	-	9	11	44	(1)	63	59	4
해양경찰청	-	-	-	1	13	-	14	9	5
합계	-	-	9	28	152	(1)	188	172	16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은 농림축산식품부 2건이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소관 부대의견 2건 모두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농림축산식품부	2	-	2 ¹⁾

주: 1) 기후부·농식품부 공통 1건, 재경부·농식품부·산업부 공통 1건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⁵⁾

(1)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사업추진체계 개선 필요(농림축산식품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⁶⁾ 사업은 유실·유기동물 보호·관리 역량강화 및 입양 문화 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동물보호센터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연례적으로 실행행률이 40% 미만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현장점검 등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포기에 따른 제재 강화, 사업 기간 및 연부율 조정 등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행행률을 제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신청 요건을 강화(지역주민 동의 필수 등)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방지 등을 위해 사업 규모별 사업기간과 연부율을 차등적용하며, 민원으로 인한 중도 포기 등 장애요인 완화를 위해 주민친화형 친수공간(개방형 훈련 시설 등)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조치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지자체 4개소 추가를 위해 전년 대비 5억 2,000만원(17%) 증액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신규 4개소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주민 동의 등 사업 준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국회는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지자체 추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인프라구축(자율)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신규 지자체 4개소를 추가하기 위해 전년대비 5억 2,000만원(17%) 증액된 3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다.

5)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 10.

6)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 3740-310

그러나 2026년 9월 말 기준 예산 30억 5,000만원 중 실집행액은 1억 2,307만원(실집행률 4%)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추진체계를 개선하여 실집행률을 제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신규 4개소에 대해 부지 확보 여부, 주민 동의 등 사업 준비 정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회는 2027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현재 사업지의 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 지자체 추가에 따른 증액 편성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저온·친환경 위판장은 실집행 저조에 따른 적정 예산 편성 필요(해양수산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⁷⁾ 사업의 저온·친환경 위판장 내역사업은 노후화된 산지 위판장을 현대화하여 신선하고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국비 50%를 부담하고 지자체 30%, 자부담 20%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사업장별로 지방비 미편성, 인허가 지연 등 다양한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전체 편성 보조금 중 79.9%를 교부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해양수산부는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협의하고 지자체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지방비 편성 가능성 등 사업의 진행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등 「보조금 법령」에 부합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는 지자체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실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해양수산부는 저온·친환경 위판장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기존 7개소에 대한 연차별 사업비와 신규 6개소의 1년차 사업비 약 189억 5,000만원을 편성

7) 코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040-317

하였으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최근 실집행 실적 및 지자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저온·친환경 위판장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해양수산부는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저온·친환경 위판장을 위한 보조사업 예산 18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다.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으로 산지위판장 207개소 중 온도관리 및 위생·안전성 등에 취약한 노후 위판장에 대해 저온유통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7개소 연차별 사업비와 신규 6개소의 1년차 사업비를 편성하였다.

그런데 저온·친환경 위판장 사업은 최근 3개년(2023~2025년)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이월이 발생하였고, 실집행률은 0.0%~16.9%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6년도 7월 기준 실집행률은 교부현액 대비 40.1%로 전년도 이월액 143억 7,800만원 중 86억 5,700만원을 집행하고 2026년도 교부액 71억 7,000만원은 전혀 집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지자체와의 소통·협의를 강화하여 사업 추진 방식을 효율화하고, 정기적으로 추진 상황을 점검·관리하는 등 실집행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런데, 해양수산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전년(82억 1,000만원) 대비 약 130.8% 증액한 189억 5,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지자체 집행 실적 및 연내 집행가능성을 검토하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최근 실집행 실적 및 지자체 사업 추진 실적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 저온·친환경 위판장 예산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8월 12일 결산을 상정하였으나, 10월 현재 결산 예비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산업통상자원중소 벤처기업위원회	2026. 7. 23.	8. 12.	-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12-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시정 3건, 주의 21건, 제도개선 90건 등 중복 4건을 포함하여 총 110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02건을 조치 완료하고, 8건(산업통상부 3건, 지식재산처 1건 및 중소벤처기업부 4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부	-	-	3	5	38	(2)	44	41	3
지식재산처	-	-	-	1	14	-	15	14	1
중소벤처기업부	-	-	-	15	38	(2)	51	47	4
합계	-	-	3	21	90	(4)	110	102	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은 산업통상부 1건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부는 소관 부대의견 1건은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산업통상부	1	-	1 ¹⁾

주: 1) 재경부·농식품부·산업부 공통 1건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¹⁾

(1)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의 과도한 일반회계전입금 의존 해소 필요 (산업통상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²⁾ 사업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의 안정적 추진 및 소재부품장비 공급안전망 구축을 위한 R&D, 펀드, 출자·투자 등 각종 예산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출사업의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보전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제1항제1호³⁾에 따르면, 회계의 세입 중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2020~2024년 일반회계 전입금은 직전 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과도하게 초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소특회계 세입이 일반회계전입금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사업 구조조정 및 재원구조의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7년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의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는 2025년이나 2026년에 비해 다소 완화된 측면은 있으나, 2024년에 비해서는 소폭 상승하였다는 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설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와의 기능·사업 범위 구분 필요성 및 특별회계 유효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입·세출 구조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6. 10.

2) 코드: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 91-911

3)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0조(세입·세출)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예수금(預受金)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재·부품·장비산업경쟁력강화및공급망안정화특별회계(이하 “소특회계”)의 2027년 세입 총계는 전년 대비 126억 9,700만원 감소한 2조 4,226억 5,700만원이다. 소특회계의 세입은 정부출자수입, 기타재산이자수입, 기타경상이전수입, 전년도세계잉여금, 일반회계전입금, 기금전입금으로 구성되며, 이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비중은 2027년 예산안 기준 93.2%로 소특회계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24~2027년도 소특회계 세입 재원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4결산	2025결산	2026예산	2027예산안
총 계(A)	2,196,928	2,331,814	2,435,354	2,422,657
일반회계전입금(B)	2,022,344	2,182,941	2,308,382	2,258,311
(B/A)	(92.0)	(93.6)	(94.8)	(93.2)
정부출자수입	16,148	12,685	12,685	10,003
기타재산이자수입	26,121	24,858	25,477	28,237
기타경상이전수입	29,172	57,300	43,818	52,417
전년도세계잉여금	71,415	33,129	24,092	52,789
기금전입금	31,700	20,900	20,900	20,900
전년도이월금	28	-	-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런데 2027년 소특회계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의 의존도(93.2%)는 2025년 93.6%나 2026년 94.8%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나, 2024회계연도 결산 시(92.0%)에 비해서는 1.2%p 상승한 것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 시정요구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소특회계는 2019년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2020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26년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반도체산업의 범위에 소재·부품·장비 등 공급망 생태계를 포함하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및 공급망 확보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양 특별회계 간 기능 및 사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⁴⁾에 따라 동 특별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므로, 특별회계의 잔여 유효기간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신설에 따른 사업 조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회계전입금 의존도를 완화하고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세입·세출 구조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 사업의 이·불용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 필요 (산업통상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산업기술정보화및정책지원⁵⁾ 사업의 내역사업인 산업통상정책연구 사업은 산업통상경제 분야의 정책연구 및 중장기 계획, 법령 제·개정 등을 위한 사전 조사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정책연구과제 26건 중 10건(38.5%)의 계약 체결이 12월에 이루어짐에 따라 다음연도 이월 및 불용이 증가하였고, 연말에 체결된 계약 중 수의계약(8건)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연구용역의 계약 투명성이 저하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산업통상부로 하여금 연말에 정책연구과제 계약이 과다하게 체결되고 예산의 이월과 불용이 과다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산업통상정책연구 사업은 2024년과 2025년 이·불용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2026년 7월말 기준 실집행률도 31.8%로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40% 이상 확대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특별회계의 유효기간) 제68조부터 제7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5) 코드: 일반회계 3133-304

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실제 집행가능 규모를 바탕으로 2027년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산업통상정책연구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42.1%) 증가한 7억 3,600만원이다.

동 사업의 경우 2024년 예산현액 10억 4,400만원 중 1억 1,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고, 7,700만원이 불용된 데 이어 2025년에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예산현액 9억 8,900만원 중 1억 4,200만원이 이월되었고, 4,500만원이 불용되는 등 이·불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6년 예산현액 6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7월말 기준 2억 1,0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31.8%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다.

[2024~2027년 산업통상정책연구 사업의 예·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당해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4	879	165	1,044	857	82.1	110	77
2025	879	110	989	802	81.1	142	45
2026.7.	518	142	660	210	31.8	미정	미정
2027(안)	736	-	-	-	-	-	-

자료: 산업통상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는 2027년 산업통상정책연구 내역사업의 예산안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7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이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산업통상정책연구 사업의 2027년 예산안을 실제 집행가능 규모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모태조합 출자금의 신규 출자 규모 적정성 검토 필요 (지식재산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모태조합 출자⁶⁾ 사업은 우수IP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에 안정적인 사업화자금을 조달하고, 우수 IP를 직접 매입·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IP투자 펀드를 조성·운용하기 위해 모태펀드에 출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2024년 정부출자금 114억원을 통해 총 228억원 규모의 IP 직접투자 자펀드를 결성하였으나, 실제 기업에 투자된 실적은 5억원에 불과하며 정부 출자금 대부분이 한국벤처투자 계정에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펀드의 투자실적 및 투자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방식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모태조합 출자 사업은 최근 5년간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여력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2026년 결성된 자펀드의 투자집행도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이 충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존 자펀드의 잔여 투자여력을 우선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2027년 신규 출자 규모가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은 2006년 출범 이후 2026년까지 88개 자펀드에 총 2조 7,944억원이 결성되었다.⁷⁾ 최근 5년간 정부 출자액은 2022년 200억원, 2024년 114억원, 2025년 80억원으로 총 394억원 규모이다. 지식재산처는 2027년 모태펀드에 200억원을 추가 출자하여 총 400억원의 IP투자 펀드를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다.

6) 코드: 일반회계 3133-304

7) 펀드출자액 중 정부출자액은 7,456억원으로 예산 2,694억원과 회수재원 4,762억원으로 구성된다.

[최근 5년간 IP투자 펀드 출자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2026	합 계
출자액	20,000	-	11,400	8,000	-	39,400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최근 5년간 IP투자 펀드 결성액 중에는 실제 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상당하고, 2026년 결성된 자펀드 2개는 실제 투자집행이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먼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자펀드는 7,785억 1,000만원이 결성되었는데, 이 중 기업에 실제 투자된 금액은 4,871억 4,400만원(62.6%)이고, 남아있는 투자 대기자금은 2,135억 1,500만원이다.

따라서 2027년 정부가 2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동 사업의 투자여력은 기 결성 자펀드 중 투자 대기자금이 2027년 예산안의 10배 수준이며, 정부출자액 비중을 고려하더라도 507억 9,500만원⁸⁾의 투자 여력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5년간 모태조합 출자 사업의 자펀드 조성·투자현황]

(단위: 백만원)

자펀드 결성연도	출자액			필요경비 (D=C×0.1)	투자집행액 (E)	투자 대기자금 (F=C-D-E)
	정부출자액 (A)	민간출자액 (B)	총 출자액 (C=A+B)			
2022	39,700	282,400	322,100	32,210	267,590	22,300
2023	86,100	153,700	239,800	23,980	168,610	47,210
2024	12,500	9,000	21,500	2,150	16,960	2,390
2025	31,900	123,610	155,510	15,551	33,984	105,975
2026	15,000	24,600	39,600	3,960	-	35,640
합계	185,200	593,310	778,510	77,851	487,144	213,515
2027	20,000	20,000	40,000	4,000	-	36,000

주: 투자금액은 2026년 7월말 기준 작성

자료: 지식재산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8) 213,515백만원×23.79%(정부출자액 비율)

또한, 2026년에 결성된 396억원 규모의 자펀드⁹⁾는 각각 4월과 6월 결성 이후 7월말까지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2027년 정부의 추가 출자의 시급성 및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수출바우처 사업 사용대금의 적기정산 필요 (중소벤처기업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수출지원기반활용¹⁰⁾ 사업은 내수·수출 중소기업의 수출 진입장벽 해소를 위해 수출 관련 바우처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런데 2024년 동 사업 추진 결과, 바우처 발급총액 1,697억원 중 1,613억원이 사용되었는데 그 중 2025년 4월말 기준 정산완료 금액은 사용액의 82.7%인 1,335억원으로, 정산이 지연되어 일부 공급기업은 서비스 제공을 완료했음에도 수개월간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수출바우처 대금정산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우처 사용기업과 서비스 공급기업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정산시점을 분산 유도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정산 지연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2026년에는 정산 및 사업기간 준수 교육 확대를 통해 정산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2027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진 전 수출바우처 사용대금 적기 정산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보완하여, 정산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부터 참여기업(사용기업)과 수행기관(공급기업)에 정산 및 사업기간 준수 교육 확대 시행방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정요구에 대해 조치완료(2026.1.1.)하였다고 보고하였다.

9) 2026년 4월 미래에셋벤처투자에서 운용하는 자펀드에 220억원, 6월 케이기술투자 및 제이엔피글로벌에서 운용하는 자펀드에 176억원이 각각 결성되었다.

10) 코드: 일반회계 3131-301

다만, 연도별 정산 현황을 살펴보면, 수출바우처 사용액 대비 차년도 2·3분기 정산완료 비중이 2023년 20.2%, 2024년 34.4%, 2025년 38.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2025년까지는 정산 지연 문제가 심화되는 한편, 2026년 수출바우처 사업은 한창 진행 중이어서 2026년 정산 및 사업기간 준수 교육 확대를 통해 정산 지연 문제가 해소되었는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연도별 정산 현황]

(단위: 백만원, %)

		2023년		2024년		2025년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총 사용규모 (국비+자부담)		144,204	100.0	160,463	100.0	310,270	100.0
정산완료 규모	당해연도 2분기	1,181	0.8	1,804	1.1	3,124	1.0
	3분기	15,594	10.8	14,421	9.0	24,634	7.9
	4분기	37,582	26.1	33,042	20.6	54,151	17.5
	차년도 1분기	60,769	42.1	56,098	35.0	109,194	35.2
	2분기	28,097	19.5	50,842	31.7	112,692	36.3
	3분기	981	0.7	4,256	2.7	6,475	2.1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따라서, 2027년도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 추진 전 수출바우처 사용대금 적기 정산을 위한 방안을 면밀히 보완하여, 정산 지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에 대비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필요(중소벤처기업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기술보증 대위변제¹¹⁾ 사업은 기술보증기금이 보증지원한 기업(주채무자)이 채권 금융기관에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기금이 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 추진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시행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유동성 지원 확대에 따라 2020-2022년 보증 사고율(2.5~3.4%)은 낮게 유지

11) 코드: 기술보증기금 2441-300

되었으나, 최근 복합위기 지속 및 경기침체 등에 따라 2023년 및 2024년 보증 사고율은 각각 4.2% 및 4.7%로 증가하였다.

이에 국회는 그간 잠복·이연되었던 피보증기업의 부실이 동시에 현실화되어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충분히 대비하는 한편 향후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유지와 보증 리스크의 누적 방지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병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술보증 대위변제 사업은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의 미도입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7년도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보증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규보증 리스크 목표 관리, 리스크 모형 고도화 용역 수행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사고 특례 등을 활용하여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는 등 부실 최소화 조치를 완료(2025.12.31.)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런데, 2025년 기술보증 사고금액(B)은 1조 5,563억원으로 2024년 1조 3,473억원에 비해 증가하였고, 사고율(B/A)은 2024년 4.7%에서 2025년 5.2%로 증가하였으며, 대위변제발생액(C)은 전년과 동일하게 1조 5,677억원을 기록하였다.

[연도별 기술보증 지원 현황]

(단위: 억원, %, 배)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신규보증	48,480	78,208	49,276	42,638	60,957	55,156	64,006
보증잔액(A)	218,052	254,453	262,684	265,029	279,176	284,713	299,242
사고금액(순증)(B)	9,848	8,611	6,693	7,197	11,832	13,473	15,563
사고율	계획	4.8	4.8	4.5	4.8	4.0	4.6
	실제(B/A)	4.5	3.4	2.5	2.7	4.2	4.7
대위변제발생액(C)	8,254	6,702	6,678	11,058	13,248	15,677	15,677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그 결과 보증공급 및 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및 대손상각비 증가 등이 기금 부채 증가 및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등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술보증기금 재무결산 현황]

(단위: 억원)

연도		2025년말(A)	2024년말(B)	증감(A-B)
자산	총 자산	49,803	49,374	429
	총 부채	18,428	15,614	2,814
	순자산	31,375	33,760	△2,385
재정 운영	총수익	15,266	14,071	1,195
	총비용	19,899	15,704	4,195
	재정운영결과(수익-비용)	△4,633	△1,633	△3,000

주: 1. 총 부채의 증가는 보증료 관련 선수수익 증가(+233억원)와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에 따른 장기충당부채 증가(+2,633억원) 등에 기인함

2. 총 비용의 증가는 대위변제 증가로 인한 대손상각비 증가(+2,362억원) 및 보증잔액·보증사고 증가 등에 따른 대위변제준비비 증가(+1,258억원) 등에 기인함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더 나아가, 기술보증기금은 2025년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 재구축 용역을 진행(2025.4.~12.)하였으나 2026년 전산화 작업을 추가로 진행(2026.7.~12.)함에 따라 고도화된 모형을 아직 기술보증 업무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기술보증 사고율 증가, 기술보증기금의 재정건전성 악화,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의 미도입 등을 고려할 때 아직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027년도 사업 추진 시 고도화된 리스크평가모형 및 조기경보모형을 도입함으로써 기술보증 사고율 급증과 기술보증기금의 급격한 재정 악화를 방지하는 동시에 사고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13-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23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8월 19일 결산을 상정하여 8월 21일 심사를 마쳤다.

[보건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보건복지위원회	2026. 7. 23.	8. 19.	8. 20. · 8. 21.	8. 2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 소관 133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25건, 질병관리청 소관 34건 등 192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 부대의견 2건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보건복지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보건복지부	-	-	-	7	127	(1)	133	-	2
식품의약품 안전처	-	-	-	1	24	-	25	-	-
질병관리청	-	-	-	1	33	-	34	-	-
합계	-	-	-	9	184	(1)	192	-	2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안승재 예산분석관(seungjaean@assembly.go.kr, 6788-4635)

정성영 예산분석관(jeongsy@assembly.go.kr, 6788-4637)

허아름 예산분석관(liebe89@assembly.go.kr, 6788-3728)

나. 분석의견¹⁾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실비성 비용 지원 및 고용구조 개선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노인맞춤돌봄서비스²⁾는 취약노인에게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및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의 방문서비스가 사업의 핵심적인 전달방식이다. 이에 따라 교통비·통신비 등 업무수행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나, 이를 종사자가 부담할 경우 실질적인 처우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의 실비성 비용 지원 및 고용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치결과와 예산상 조치는 모두 ‘검토중’으로 제출되어 있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교통비·통신비 등 실비성 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4회계연도에 이어 동일한 취지의 지적이 반복된 점을 고려하여 생활지원사의 실제 비용부담과 업무량을 조사하고, 적정 실비를 별도로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관련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의 아동보호전문기관 확충 및 심리치료 인력 보강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³⁾ 사업은 학대피해아동의 회복·치료 및 사례관리, 아동학대 예방교육·홍보, 학대행위자 상담·교육 등을 지원하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와 재학대 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거점 심리치료센터에서는 전문적인 심리진단과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134-303

3) 코드: 일반회계 1339-301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심리치료 전문인력이 부족할 경우 기관별 사례관리 부담이 증가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치료가 제한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확대하고 거점심리치료센터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7년도 예산안은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건비와 운영지원은 확대하였으나, 신규 설치를 위한 예산은 미편성하였으며 거점 심리치료센터 인력도 16개소에 개소당 3명, 총 48명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 아동학대 발생 및 사례관리 부담, 심리치료 대기수요 등을 고려하여 신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와 심리치료 전문인력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전임인력 확충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노인보호전문기관⁴⁾ 사업은 노인학대 예방교육·홍보, 신고접수, 전문상담 및 법률지원 등을 수행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통해 피해노인에게 일시보호, 숙식 및 법률·의료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가 점임인력에 의존할 경우 상시적인 피해자 보호와 전문적인 사례관리에 한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노인학대 대응인력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제고하고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전임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2027년도 예산안은 종사자의 인건비 단가를 인상하여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는 반영하였으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인력은 개소당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보호사 4명으로 유지되고 있어 전임인력 확충은 반영되지 않았다. 또한 전용쉼터 국고보조율이 50%에서 40%로 인하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확대되므로, 쉼터별 업무량과 점임인력 현황을 바탕으로 필요한 전임인력 규모를 산정하고 인건비 및 국고보조 수준을 증액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일반회계 2133-300

(4) 노인요양시설 확충 치매전담형 시설 건축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노인요양시설 확충⁵⁾ 사업은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신축하고, 기존 노인요양·양로시설의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보강 등을 지원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건축비 상승에도 국고지원 건축단가가 적정하게 조정되지 않을 경우 초과 사업비가 지방자치단체 부담으로 전가되고, 지방비 확보 곤란으로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에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건축 지원단가를 현실화하고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으나, 복지부는 “2027년 예산에 미반영”하였다고 제출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245억 500만원에서 208억 4,900만원으로 36억 5,600만원(14.9%) 감액되었으며, 공립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건축단가도 전년과 동일한 ㎡당 198만원으로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실제 건축비와 현행 지원단가의 격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부담을 검증하고, 사업 준비도와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적정 건축단가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채용 실적을 고려한 지원 물량 조정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⁶⁾ 사업은 지역 장기근무를 계약한 필수과목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것으로, 2025년 신규 추진 과정에서 사업 준비절차와 전문의 채용이 지연되어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예산의 실집행이 부진하였다. 2025년에는 교부액 13억 5,200만원 중 7억 6,100만원(56.3%)만 실집행

5)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232-300

6) 코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4333-326(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의 내역사업). 2025회계연도에는 일반회계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4333-354)’ 세부사업으로 편성·집행되었다.

되었고, 의사 모집이 지연되어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았음에도 잔여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등 실집행 가능성을 점검하여 분할교부하도록 한 보조금 집행지침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국고보조사업 선정 시 사업 준비도와 실제 집행가능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강화하고, 실제 집행 수요에 따라 보조금을 분할교부하며, 사업별·지자체별 실집행률을 지속 점검하는 등 지역필수의사 확보와 실집행 부진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지역필수의사제 운영 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 7월 현재 채용이 확인된 인원이 92명에 그치고 있음에도 기존 11개 시·도와 보건의료원 318명을 12개월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편성되었고, 2027년 시·도당 지원 인원도 지역별 수요조사 없이 일률적으로 산정된 측면이 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6년 신규 지역의 채용 결과 및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에 2026년 추경예산 대비 62억 600만원(167.2%) 증액된 99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지원 대상 지역은 2025년 4개 시·도(96명)에서 2027년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448명)로 확대되며, 지역근무수당 91억 9,200만원 중 76억 3,200만원(83.0%)은 기존 11개 시·도 286명과 보건의료원 32명 등 318명을 12개월간 계속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그런데 2027년에 12개월간 계속 지원하기로 한 318명 중 채용이 확인된 인원은 2025년에 선정된 4개 시·도의 92명(28.9%)이며, 2026년에 추가된 7개 시·도와 보건의료원은 3개월분 인건비만 반영되어 2026년 10월 이후 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나머지 226명의 채용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기존 4개 시·도에서도 2026년 1~7월 추가 채용은 6명에 그쳤고, 지역근무수당 실집행률은 2025년 55.6%, 2026년 8월말 45.8% 수준이다. 이처럼 2026년 신규 지역의 채용 인원은

10월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어, 2027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27년 시·도당 지원 인원 26명은 2026년 지원 인원 24명에 약 10%를 더한 것으로, 지역별 수요조사에 근거하여 산정되지 않았으며, 보건복지부는 2026년 4분기에 지역별 수요와 사업 여건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2026년에 추가된 7개 시·도는 20명을 기준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채용 실적이 없는 신규 지역에 30%의 증가가 적용되었고, 기존 지역 중 목표 인원(24명)을 확보한 곳은 강원·경남 2개 지역이다. 보건의료원도 경남·충남이 기존 인력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참여 곤란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16개소 모두에 2명씩 12개월분이 반영되었다.

이처럼 2027년도 예산안은 채용 실적이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12개월간 계속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사업 준비도와 집행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라는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4분기 신규 7개 시·도와 보건의료원의 채용 결과, 시·도별 참여 의료기관 및 필요 진료과목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2027년 계속지원 물량과 시·도별 지원 인원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예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의 단계적 확대와 성과관리체계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⁷⁾의 내역사업인 전공의 등 육성지원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은 의정갈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전공의 복귀 시점 및 규모, 사업 참여 가능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다. 그 결과 지원 인원과 예산 규모가 과다하게 산정되어 추경예산을 통한 대규모 감액, 불용예산액의 연도말 이용, 당초 목표 대비 실적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정책대

7) 코드: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4331-300. 2026년까지는 일반회계로 편성되었다.

상자의 참여 규모나 사업수행 여건이 외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사업의 경우 예산 편성 시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집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시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사업 효과를 측정할 성과 지표가 없는 상태에서 비수도권 수련수당을 8개 필수과목에 일률적으로 20% 가산하여 증액 편성되었고 가산율의 산출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2025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과목별 층원 여건에 따라 가산 대상과 수준을 조정하고, 성과관리체계를 갖추어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서 동 내역사업에 전년 대비 76억 7,500만원 (19.3%) 증액된 474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다. 증액분 중 49억 5,600만원은 지원 인원 증가(3,303명 → 3,716명)에 따른 것이고, 27억 1,900만원은 비수도권 전공의·전임의의 월 지급액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가산한 데 따른 것이다.

동 사업의 본예산 대비 실질행률은 2024년 40.8%, 2025년 43.1%에 그쳤다가 2026년 8월말 70.3%로 개선되고 있으나, 성과계획서에는 수련수당의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또한 비수도권 가산은 과목별 층원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가산액 27억 1,900만원 중 2026년 상반기 모집 기준 비수도권 레지던트 1년차 확보율이 6.5%인 소아청소년과와 38.3%인 산부인과에 대한 배분액은 3억 700만원(11.3%)에 그치는 반면, 확보율이 100%인 신경외과에는 3억 7,700만원(13.9%)이 배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 당시 2025년 연구용역을 통해 수련수당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하였고, 그 개선방안에 확보율이 낮은 비수도권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전공의 등에 대한 지원 확대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였다.⁸⁾ 그러나 2027년도 예산안의 일률적 가산은 이러한 개선방향에 비해 지원 범위가 넓은 반면, 확보율이 특히 낮은 과목에 대한 집중도는 낮다. 또한 보건복지

8) 다만, 구체적인 연구용역 명칭과 최종보고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부는 아동수당의 지역별 차등 지급 등을 고려하여 20%를 가산하였다고 설명하였으나, 아동수당은 수련수당과 정책목적이 다르고, 월 20만원의 가산이 전공의의 수련 지역 선택이나 수련 지속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부산, 경남, 전북, 제주, 강원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진료과 전공의에게 월 100만원의 수련수당을 자체 지원하고 있어 해당 사업이 유지된 상태에서 비수도권 가산이 더해지면 일부 전공의는 월 22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되나, 지자체 수당과의 중복 정비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 가산의 정책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가산 대상과 수준을 과목별·지역별 충원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필수과목 확보율, 수련 지속률, 수료 후 필수과목·지역 종사 여부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와 지자체 수당과의 중복 정비 방안, 지원 기간과 종료 기준을 포함한 중장기 운영방향을 마련하여 성과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7) 국가자살대응실의 조직·정원 확정 및 관계기관 협력절차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① 부대의견의 내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⁹⁾ 사업은 자살고위험군 발굴·지원, 자살예방센터 지원, 자살예방 상담전화 운영 등을 통해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살시도자에 대한 대응은 경찰·소방·응급실·자살예방센터 등 기관별로 이루어지고 있어 사건 단위로 대응이 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재난인 자살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2차관을 자살예방전담 차관으로 하고, 산하에 자살예방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종합적·체계적 협력체제를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9)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3346-302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사업의 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보건복지부·경찰청·소방청이 합동 근무하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신설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조직·정원과 정보시스템, 기관 간 조정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2027년 1월 운영 개시 시점의 수행업무와 인력 규모가 불확실하므로, 보건복지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의 취지를 고려하여 조직·정원을 조속히 확정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배정·조정 절차를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서 자살 긴급대응체계 구축 내역사업을 신설하여 국가자살대응실 사업비, 영상평가의사 당직비, 사업관리비와 자살긴급대응정보시스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비 등 9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다.

국가자살대응실은 2026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살 긴급대응 강화 방안”의 핵심과제로, 전국의 자살시도·자살사망 사건과 후속조치를 24시간 확인·관리하고 후속조치 기관 배정과 정신응급 병상 배정 협의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수도권 1개소를 2027년 1월부터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2026년 9월 현재 행정안전부와 직제를 협의하고 있어 총원·직급·직종과 부처별 배치 인원이 제시되지 않았고, 설치비·구축비·임대료·인건비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으며, 정원이 확정되지 않으면 기존 담당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 주관으로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임대료·인건비 등 12개월분 형태의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어서 집행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나, 이는 예산 집행 측면의 설명으로 24시간 합동 근무를 전제로 설계된 업무를 기존 부서가 어느 범위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전용 정보시스템도 ISP 수립비(2억 4,200만원)만 반영되어 초기에는 시스템 없이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시스템 개통 전까지 사용할 정보의 입수·기록·전달 방식과 개인정보 보호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가 업무조정의 근거로 제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규정은 기관의 일반적 의무와 협조요청에 관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서 기관 간 이견이나 미조치가 발생할 때의 조정 방식과 정보 공유의 책임 귀속은 「(가칭)자살긴급대응 업무지침」에서 정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범부처·지방자치단체 협력체제를 마련하라는 부대의견의 취지에 맞게 행정안전부와 의 직제 협의를 조속히 확정하고, 국가자살대응실의 업무 수행 범위와 운영 방식, 정보시스템 개통 전까지의 정보 관리 방안, 참여기관 간 업무 배정·조정 절차 등을 담은 업무지침을 마련하여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8)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개편에 따른 사업관리체계 정비 필요(질병관리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¹⁰⁾ 사업은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내내역사업으로, 19개 시·군·구의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에게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환자에게 진료비·약제비를 지원하여 지속치료율과 자가관리 역량을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유사한 대상자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동네의원 중심의 지속적 질환관리와 등록교육센터의 교육·상담 기능을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질병관리청에 2027년도 사업개편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밝히고, 현행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의 정책효과를 재평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함께 동네의원의 지속적 질환관리와 등록교육센터의 다학제 기능을 결합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진료비 지원의 정책효과 재평가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의 연계를 반영하여 사업개편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개편 계획과 관련 예산이 마련되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과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간 연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0) 코드: 국민건강증진기금 6533-308

국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질병관리청에 2027년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개편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현황을 밝히고, 현행 65세 이상 진료비 지원의 정책효과를 재평가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와 함께 동네의원의 지속적 질환관리와 등록교육센터의 다학제 기능을 결합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질병관리청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19개 시·군·구에서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등록환자를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을 제공하고, 65세 이상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포괄평가 및 관리계획 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4년 9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두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질환관리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연계가 필요하다. 다만,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중 추가 교육이 필요한 환자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로 교육·상담 의뢰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두 사업 간 연계가 실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질병관리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교육·상담 연계 대상과 절차, 기관별 역할 및 연계실적 관리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이를 반영한 지역사회 만성질환 통합관리체계 추진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시정요구에 따른 사업개편 및 연계체계 마련 현황과 관련 예산의 반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3-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주의 21건, 제도개선 155건 등 중복 5건을 포함하여 총 171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53건을 조치 완료하고, 18건(보건복지부 16건 및 질병관리청 2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	-	-	19	114	(5)	128	112	16
식품의약품안전처	-	-	-	1	15	-	16	16	-
질병관리청	-	-	-	1	26	-	27	25	2
합계	-	-	-	21	155	(5)	171	153	1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은 보건복지부 1건, 식품의약품안전처 1건 등 총 2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2건 모두 조치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보건복지부	1	1	-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
합계	2	2	-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¹¹⁾

(1)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의 지역별 상담수요를 반영한 인력 지원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¹²⁾ 사업은 위기임산부에게 임신·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상담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복지창구 동행, 응급분만 대응 및 사후관리 등을 지원하여 산모와 아동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사업이다.

지역별 위기임산부 규모와 상담·현장지원 업무량에 차이가 있음에도 상담인력을 일률적으로 배치할 경우 업무량이 많은 지역에서 상담·현장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위기임산부 지원대상 규모의 추계 정확성을 높이고 지역 간 편차 없이 상담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다. 복지부도 기존 인력의 기관 간 재배치에는 한계가 있어 인력 충원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운영지원 예산을 2026년도 23억 9,300만원에서 22억 9,300만원으로 감액하고, 지역상담기관 인건비는 치우개선을 반영하여 인상하였으나 16개 지역상담기관 모두 개소당 3명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으므로, 지역별 실제 상담 및 현장지원 수요를 반영하여 인력 규모를 차등화하고 필요한 인건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12) 코드: 일반회계 2533-307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의 국비지원 수준 재검토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¹³⁾ 사업은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24시간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재활을 지원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종사자 인건비와 시설이용자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비하여 국비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역별 시설 운영여건과 서비스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비지원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시정요구하였다. 그러나 복지부의 조치결과는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설치수요 파악을 통해 지자체 설치 수요 협의와 향후 관련부처와의 협의 진행으로, 해당 시정요구에 직접 대응하지 않는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2026년도 7,355억 1,900만원에서 7,848억 9,900만원으로 493억 8,000만원 증액되었으나, 증가분의 대부분은 종사자 인건비 단가 인상에 따른 것이고 시설 관리운영비는 입소자 1인당 연 24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산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고려하여 시설의 실제 관리운영비와 지방비 부담을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운영비 단가 또는 국고지원 수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의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마련 필요(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건강보험가입자 지원¹⁴⁾ 사업은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을 지원하는 것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회계 지원액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1.5~

13) 코드: 일반회계 1536-302

14) 코드: 일반회계 4931-300, 국민건강증진기금 4932-300

12.1% 수준으로 편성되는 등 법정 기준에 연례적으로 미달하고, 국고지원이 연말에 집중 교부되어 건강보험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과 재무적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고(주의), 국고지원 시 실제 보험료 수입액에 기반하여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며(제도개선), 국고지원을 연간 균등하게 계획적으로 교부할 것(제도개선)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는 국가 재정 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 필요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지원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있으며, 국고지원금의 규칙적 교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 협의 중이라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한편, 동 사항은 2023회계연도와 2025회계연도 결산¹⁵⁾에서도 반복하여 시정요구되었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을 전년 대비 9.4% 증액 편성하였으나 법정 기준에 1조 6,366억원 미달하고, 2020년 이후 법정 기준 미달이 매년 반복되고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연도별 목표 지원율과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일반회계)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으로 전년 대비 1조 102억 7,200만원(9.4%) 증액된 11조 7,922억 8,300만원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 계획안으로 전년 대비 765억 400만원(4.0%) 증액된 2조 115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다.

2027년도 일반회계 지원율은 보험료 예상수입액(95조 9,208억원) 대비 12.3%로 2026년(11.9%)보다 높아졌으나, 2020년 이후 지원율은 11.5~12.3% 범위에 머물러 있고 2026년에는 전년(12.1%)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등 법정 기준에 가까워지

15) 보건복지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도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금이 법정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하고,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 추계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등 안정적 국고지원체계를 마련할 것’,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의 경우 담배부담금 예상수입액의 65% 한도로 인해 법정 지원율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한도와 재원구조를 재검토할 것’ 등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2027년에 1조 6,366억 2,9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여야 하며, 2020~2027년 법정 기준 미달액의 합계는 13조 731억원으로 2025년 말 건강보험 누적준비금(30조 2,217억원)의 43.3%에 해당한다.

[건강보험 재정 지원 현황(일반회계)]

(단위: 억원, %, %p)

구분	보험료수입 예상액(A)	지원액(B)	지원율 (C=B/A)	법정지원율 대비 미달 비율	법정기준 미달액
2020	639,260	73,482	11.5	2.5	16,014
2021	664,901	76,554	11.5	2.5	16,532
2022	727,540	86,843	11.9	2.1	15,013
2023	761,822	91,494	12.0	2.0	15,161
2024	846,022	102,636	12.1	1.9	15,807
2025	875,646	106,211	12.1	1.9	16,379
2026	909,134	107,820	11.9	2.1	19,459
2027(안)	959,208	117,923	12.3	1.7	16,366
합계	-	762,963	-	-	130,731

주: 1. 법정지원율 대비 미달 비율은 법령상 기준(14%) 대비 미달 비율임

2. 법정 기준 미달액은 연도별 보험료수입 예상액에 법정 지원율(14%)을 곱한 금액에서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임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중기재정계획에는 2028년 14조 2,433억 3,400만 원에서 2030년 15조 9,392억 2,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26.9.)상 지원 규모(2028년 12조 4,009억 원, 2029년 13조 330억원, 2030년 13조 7,445억원)와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과 브리핑에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2027년도 예산안의 정부지원액을 증액하였으나 한 번에 법정 비율인 14%까지 확대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하였으며, 법정 기준 준수를 위한 구체적인 조정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더해, 일반회계 지원 근거인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의2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한시 규정이고, 시정요구에서 제시한 실제 보험료 수입

액 기반의 산출기준 명확화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22대 국회에는 정부지원 규정의 일몰을 삭제하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5건이 2026년 9월말 현재 계류 중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정부지원금이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도록 개선하되, 재정 여건상 일시에 충족하기 어렵다면 법정 기준 도달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제시하고 이를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는 등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원 근거의 상시화와 함께 예상수입액과 결산액 중 지원금 산정에 적합한 기준 및 추계·결산 간 차이의 조정방식을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할 필요가 있다.

(4) 건강보험 재정의 기금화 등 재정 투명성 제고 및 외부통제 강화 방안 마련 필요 **(보건복지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건강보험 재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회계로 운영되어 국가재정(기금)과 달리 예·결산이 국회의 심의를 받지 않으며, 국회는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만을 심의하고 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의료공백 대응 과정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였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국민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되어야 할 재정을 사용한 것으로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성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보건복지부가 비상진료대책 추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여 재정 건전성 악화를 초래하였으므로 향후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진료 지원 중단 검토 등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 등을 시정요구(주의)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해제 및 범정부 비상대응체계 종료 등 상황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 종료를 결정(25.10.31.)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기금화 등 재정통제 관리 강화에 관한 결산 지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예·결산의 국회 보고를 확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상임위원회 통과,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국회 보고·의견수렴 절차 강화와 정보 공시 활성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이 포함되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건강보험의 기금화 또는 법령 개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주의)하였고, 2025회계연도 결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과정에서도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것’이라는 시정요구사항이 제시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통제·투명성 관련 사항은 반복하여 지적되고 있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00조원 규모로 운용되나 국회의 예산 심의는 2027년도 예산안 기준 13조 8,039억원의 정부지원금에 한정되고, 2024~2025년에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등 정부 정책 추진에 8조 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건강보험의 기금화 등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 등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5년 지출액 기준으로 건강보험(102조 3,589억원)은 고용보험기금(23조 7,122억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18조 9,025억원)의 4배를 넘는 규모이나, 국회는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정부지원금 13조 8,039억원만을 심의하며 건강보험 재정 지출의 규모와 구성은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제출 대상이 아니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정부지원금 등 일부 예산만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에서 2024~2025년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수련병원 선지급에 3조 7,089억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과 필수의료 지원 대책 등에 4조 9,074억원 등 총 8조 6,1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그 규모와 방식은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되는 거버넌스 구조에서 결정되었다. 건강보험 당기수지도 2023년 4조 1,276억원에서 2024년 1조 7,244억원, 2025년 4,996억원으로 감소하였다.

[비상진료체계 운영 및 보건의료정책 관련 건강보험 재정 투입 현황(2024~2025년)]

(단위: 억원)

구분	2024	2025	소계
비상진료체계 운영	29,990	7,099	37,089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1,868	19,817	21,685
필수의료 지원 대책	11,521	15,868	27,389
총계	43,379	42,784	86,163

주: 비상진료체계 운영에는 2025년에 전액 상환된 수련병원 선지급 1조 4,844억원이 포함됨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재정전망을 발표하고 자금운용 및 결산 현황 등 재정정보 공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입자·공급자·보험자 간 상호 견제적 재정관리기제가 작동하고 있고, 기금으로 운영할 경우 이해당사자의 자율성과 재정운영의 신축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재정의 투명성은 제고할 수 있으나 외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미흡한 측면이 있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급여 기준, 수가, 보험료율 등에 관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기제의 성격이 강하여 중장기 지속가능성이나 대규모 정책성 지출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 통제장치를 대체한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2025년 말 기준 30.2조원의 누적적립금 보유를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누적수지는 향후 지출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완충재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그 자체가 중장기 재정관리의 필요성을 낮추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2026년 상반기에 처음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2026년 9월말 현재 공개된 재정전망은 확인되지 않는다.¹⁶⁾

기금은 특정한 정책목적을 위해 특정 재원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제도로써 예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인정되므로, 기금 방식의 운영이 건강보험 재정의 전문성이나 신축성을 약화시킨다고 보기는 어렵다. 기금화 또는 이에 준하는 재정관리체계를 도입하더라도 급여 결정과 수가 협상 등 전문적 의사결정은

16)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2026.2.)에서 5년 단위 중장기 재정전망을 2026년 상반기에 처음 추계하여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기존 제도 내에서 유지하면서, 중장기 재정전망, 주요 정책성 지출, 자산운용 및 성과관리 등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심의와 외부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 재정당국과 보건당국이 설정한 지출상한을 국회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관리하고 있다.¹⁷⁾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정책 목적의 건강보험 재정 투입에 대한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기금화를 비롯하여 건강보험 지출·수입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회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의 지역별 배분기준 정비 필요(식품의약품안전처)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사전예방적 위해관리¹⁸⁾ 사업의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은 농어촌 어르신 등에게 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의 올바른 구매·사용법, 의약품 사용·보관·폐기 방법, 식중독 예방 등을 교육하는 것이다. 그런데 관련 예산이 2022년 3억 5,600만원에서 2024년 2억 2,400만원으로 감소하면서 대면교육 실시 횟수와 교육대상자 수가 2021년 150회, 5,070명에서 2024년 73회, 3,524명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사업을 확대하고,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설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식의약 안전사고 및 정보인식 격차에 적극 대응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3년간 교육 실적이 없는 지역으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35% 넘는 지역을 포함하여 2026년 식의약 안전교실 운영 계획을 수립(26.2월)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의 2027년도 예산안에 교육 횟수를 176회로 확대하기 위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교육 물량을 고령인

1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건강보험 지출전망과 재정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3-09, 2023.12.

18) 코드: 일반회계 1131-300

구 비율 20% 이상인 시군구에 1회씩 일률적으로 배정하여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교육 확대 이후의 수혜 범위도 제한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를 반영한 배분기준을 마련하고 전달방식을 효율화하는 한편, 식의약 안전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대면교육(70회, 3,513명)의 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혜율이 0.03%에 그친다는 점을 들어 2027년도 예산안에서 정보취약계층 식의약 안전교육에 전년 대비 1억 6,900만원(71.9%) 증액된 4억 400만원을 편성하여 대면교육을 2026년 70회에서 2027년 176회(어르신 171회, 다문화 5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반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르신 교육 171회는 229개 시군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171개 시군구에 1회씩 배정한 것으로, 고령인구 비율이 40%를 넘는 36개 농어촌 지역에도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은 지역과 같은 횟수가 배정되는 등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와 분포 현황이 고려되지 않았다. 또한 2025년 대면교육 1회당 참여 인원(약 50명)을 적용하면 2027년 교육 인원은 약 8,800명으로 65세 이상 인구(1,084만명)의 약 0.08% 수준에 그쳐 대면교육 확대만으로는 수혜율을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증액분은 대면교육(1억 2,700만원)과 운영경비(4,200만원)를 중심으로 편성되었고 2025년 4,954명이 참여한 돌봄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의 확대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고려하라는 2024 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에 맞게 지역별 고령인구 규모를 반영하여 교육 배분기준을 정비하고, 독거노인생활지원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돌봄 종사자 대상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한 전달방식의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초고령화 진행, AI 가짜 의사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식의약 안전교육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6)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질병관리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사업¹⁹⁾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국가 감염병관리 인프라로서 권역별²⁰⁾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및 독립적인 감염병동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질병청의 권역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지연 문제 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질병관리청이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당해연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는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권역별 구축사업의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 진척도와 예산 이월액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 집행 가능한 범위에서 적정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선하고 있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질병관리청은 2027년도 예산안에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및 장비비를 편성하였으나, 다른 권역의 구축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권역별 지연요인을 해소하고, 특히 경남권의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은 호남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비 및 장비비 등 183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 그러나 호남권을 제외한 권역의 잠정 완공시기는 2032~2034년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총사업비 협의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구축 지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경남권은 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따른 사업 규모와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질병관리청과 지정 의료기관 간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 총사업비 협의

19) 코드: 일반회계 6234-331

20)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선대학교병원, (충청권) 충청남도, 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경남권) 경상남도,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북권) 대구광역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수도권) 경기도, 분당서울대학교병원

· 조정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관계기관 협의와 예산 편성·집행관리 개선 등을 이유로 조치완료 보고하였음에도 이러한 지연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업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상황은 권역별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 지연을 해소하도록 한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할 때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정부가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에 부합하게 적정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질병관리청이 경남권 지정 의료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규모 및 비용 분담 등에 관한 이견을 조속히 해소하고, 협의 결과에 따른 사업 정상화 계획과 지연 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총사업비 협의, 설계 및 공사 등 단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구축 지연요인을 해소하는 한편, 실제 사업 추진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를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4-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8월 19일 결산을 상정하여 9월 1일 심사를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2026. 7. 1.	8. 19.	8. 25.	9.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8건, 고용노동부 소관 84건, 기상청 소관 8건 등 180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8건, 고용노동부 소관 8건, 기상청 소관 1건 등 총 17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기후에너지 환경부	-	-	4	39	53	(8)	88	-	8
고용노동부	-	-	2	11	75	(4)	84	-	8
기상청	-	-	1	4	4	(1)	8	-	1
합계	-	-	7	54	132	(13)	180	-	17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의 이관 검토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²⁾ 사업의 내역사업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사무의 성격으로 시설의 운영수입도 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귀속되는데, 이러한 국가 시설조성 사업을 지역지원계정에서 부담할 경우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국가 직접사업 간 회계구분이 불명확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의 수행주체, 운영수입귀속 등을 고려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지원계정 편성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행 회계의 편성이 지역지원계정의 목적과 대상사업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사업 성격에 맞는 회계로 조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을 2027년도 예산안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편성하고 있으므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팔공산 등 5개 생태탐방원 조성을 위한 7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은 권역 간 협력 및 투자 효율화 등을 위해 국가의 체계적인 수요·공급 관리, 기능 조정이 요구되는 사업이 편성되며, 계정 내 사업은 모두 부처에서 직접 편성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인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사업범위는 ① 초광역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물류망 확충 관련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2)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1833-301

사업, 지역특화산업 및 초광역권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련된 사업,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인적자원의 개발 관련 사업,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 육성, 지역 고유정신 문화 및 지역가치 발굴·선양, 환경 보전 사업 등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지역균형발전시책 지원 관련 사업과 ②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 계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회계의 지역자율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 및 세종특별자치시계정으로의 전출금 등 제도 운영과 관련된 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한편,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사업은 국립공원 내 시설인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역무대행으로 수행하는 직접수행사업이며, 지역지원계정 대상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동 조성사업을 통해 완성된 생태탐방원은 그 관리를 국립공원공단이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을 통해 수행하며, 생태탐방원 이용수입도 국립공원공단에 귀속³⁾된다.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으며, 생태탐방원 운영비용 54억 3,900만원도 동 사업 예산에 편성되었다.

따라서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사업은 본래 환경개선특별회계에 편성되었던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1833-302) 세부사업 중 일부사업이 2025년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과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자율)’ 세부사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지역지원계정으로 이관된 사업이나, 그 사업의 성격이 지역지원계정의 대상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국회 시정요구사항을 반영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3) 2025년 기준 국립공원공단 출연사업(1831-306)에서 생태탐방원 사업수입 30억 1,300만원은 국립공원공단의 자체수입으로 계상되었음.

(2) 수문정보인프라 확충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홍수예보 및 수문조사 지원⁴⁾ 사업의 내역사업인 수문정보인프라 확충사업은 안정적인 AI홍수예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실시간 수문자료 생산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동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그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수문정보인프라 확충 내역사업의 출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정 예산을 반영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문정보 인프라확충 사업의 출연금 집행잔액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사업에 필요한 경비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문정보 인프라확충 내역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에 유량·유사량 조사 등 수문조사, 자동유량측정시설 구축 및 운영, 첨단 수문조사 장비 도입 등을 위한 55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을 통해 수자원조사기술원에 교부된 출연금의 집행잔액 이월 현황을 보면, 연례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고,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수문정보 인프라확충 출연금 집행잔액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출연금 집행잔액 (다음연도 이월액)	389	989	1,882	3,129	9,187

자료: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4) 코드: 일반회계 5134-301

그러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 예산안에 2026년 413억 3,900만원 대비 140억 9,100만원(34.1%) 증액된 55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산출 세부내역을 보면, 자동유량 운영 및 설치 사업 중 자동유량시설 운영 단가가 개소당 5,100만원에서 5,400만원으로 증액되고, 자동유량시설 설치 개소수가 42개소에서 80개소로 늘어나면서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다.

[2027년 수문정보 인프라 확충사업 산출 세부내역]

2026년	2027년
<p>○ 수문정보 인프라 확충 : 41,339백만원</p> <p>가. 유량·유사량 조사 등 수문조사 13,796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 144개소 × 84백만원 = 12,096 · (유사량) 30개소 × 50백만원 = 1,500 · (토양수분량) 2개소 × 50백만원 = 100 · (증발산량) 2개소 × 50백만원 = 100 <p>나. 자동유량 운영 및 설치 26,681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218개소 × 51백만원 = 11,133 · (설치) 42개소 × 299백만원 = 12,598 · (유지관리) 25개소 × 120백만원 = 2,950 <p>다. 첨단조사개발장비 도입 6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장비) 20개 × 30백만원 = 600 <p>라. 관측장비 유지관리 등 262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물품) 1식 72백만원 · (전산유지관리) 1식 140백만원 · (국제활동) 1식 50백만원 	<p>○ 수문정보 인프라 확충 : 55,430백만원</p> <p>가. 유량·유사량 조사 등 수문조사 11,864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량) 121개소 × 84백만원 = 10,164 · (유사량) 30개소 × 50백만원 = 1,500 · (토양수분량) 2개소 × 50백만원 = 100 · (증발산량) 2개소 × 50백만원 = 100 <p>나. 자동유량 운영 및 설치 42,977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298개소 × 54백만원 = 16,107 · (설치) 80개소 × 299백만원 = 23,920 · (유지관리) 25개소 × 120백만원 = 2,950 <p>다. 첨단조사개발장비 도입 300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장비) 10개 × 30백만원 = 300 <p>라. 관측장비 유지관리 등 289백만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물품) 1식 99백만원 · (전산유지관리) 1식 140백만원 · (국제활동) 1식 50백만원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출연금 집행잔액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은 동 사업의 개소당 단가가 과다 편성되었거나 시설 설치가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2027년 도 예산안에서 동 사업의 단가를 증액하거나 설치 개소를 확대하는 것은 이후 출연금 집행잔액 규모를 더욱 확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동 사업에 필요한 경비 규모를 면밀히 점검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3)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의 적정 예산 반영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① 부대의견의 내용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⁵⁾ 사업은 기존의 오염물질 발생사업장을 친환경적인 사업장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한강수계관리기금 ‘친환경 청정사업’이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이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으므로, 과도하게 삭감되어 계속사업의 추진에도 차질을 야기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 및 제22조6)에 따라 친환경기술개발, 친환경농업, 친환경생산체계 구축 등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도 계획안에 128억원을 편성하였다.

동 사업은 팔당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지정된 수원함양보안림의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적 성격의 사업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한강수계 상류지

5) 코드: 한강수계관리기금 1337-401

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①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친환경 청정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면적, 한강수계 유역면적 등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배분요소를 고려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에 대한 배분원칙을 정한다.

③ 친환경 청정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 절차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 8. <생략>

9. 친환경 청정사업의 지원

10.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역에 수질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은 2023년 340억 4,900만원이 편성된 이후 지속적으로 집행행위를 저조를 이유로 예산이 감액되었다.

[2022-2027 친환경 청정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안)
사업비	19,987	34,049	28,275	20,654	15,059	12,800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예산 조정은 예산 효율성 제고에 필수적이나, 이와 같은 삭감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또한, 동 사업은 과거에 선정되어 현재 공사 단계에 착수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과도한 삭감으로 이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한강수계 상류지역의 경제기반을 친환경적인 사업으로 전환·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질오염 최소화에 기여하는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는 사업 목표에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2027년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현황에 따르면, 총 14개 사업 중 대부분이 계속 사업으로 10개 사업에 해당한다. 또한, 신규사업 4개 중 3개는 단년도로 운영되는 친환경농업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전에는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 지원, 친환경 생산체계구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등 다년간 지원되는 사업들이 다수 선정되었으나, 예산부족 문제로 이러한 사업들이 선정되지 못하고 있다.

[2027년 친환경 청정사업 선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부문	사 업 명	사업기간	선정액
총계 14 (계속10, 신규4)				12,715
서울 계				700
신규 (3)	친환경농업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27	220
	친환경농업	동행서울 친환경농장 운영	'27	450
	친환경농업	광진구 친환경텃밭(관외텃밭) 운영	'27	30
경기 계				2,066
계속 (2)	친환경농업	친환경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센터 건립	'25~'27	1,274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 지원	여강 문화콘텐츠 기반조성사업	'21~'27	720
-	-	배정유보액	-	72
강원 계				7,089
계속 (4)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토속어종 산업화센터 건립	'20~'27	2,463
	친환경농업	환경과 미래를 위한 친환경농업관리센터 구축	'24~'27	1,810
	친환경 생산체계구축	친환경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지원센터	'22~'27	2,722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소양강 상류 수변공간의 환경개선 및 자원화사업	'26~'29	94
충북 계				2,860
계속 (4)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충주호 친환경 경관단지 조성	'26~'27	443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 지원	의림지플 녹색 자유 치유단지 조성사업	'21~'27	1,131
	친환경농업	친환경 미래농업 체험·교육센터 조성사업	'25~'27	623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단성면 친환경 청정공원 조성사업	'25~'27	598
신규 (1)	친환경 첨단기술 분야 지원	친환경도시디자인·교육센터 건립	'27~'31	65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회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사업이 소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 내일배움카드 중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의 교육기관 및 훈련인원 수도권 집중 해소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내일배움카드(일반)⁷⁾ 사업의 내역사업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은 민간 혁신훈련기관, 민간 선도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여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배우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직업훈련사업이다. 다만, 동 훈련의 교육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비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훈련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는 훈련기관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내일배움카드(일반)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훈련을 장려하기 위해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별훈련수당을 확대하였으나, 여전히 수도권 외 지역의 훈련 인프라가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수도권 외 지역의 훈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내일배움카드(일반)의 내역사업인 첨단산업·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예산이 2026년도와 크게 다른 점은 AI 과정의 중요성을 감안해 AI 훈련의 자부담 비용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특별훈련수당을 AI·선도기업 등 과정별 및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등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동 훈련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고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보인다.

7) 코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131-300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사업 특별훈련수당 지급 계획]

(단위: 만원)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AI 과정	20	50	80
선도기업 과정	10	30	50

자료: 고용노동부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훈련을 받는 경우 특별훈련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 수도권 외 지역에서 훈련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정책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인다. 다만 현실적으로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동 훈련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2025년과 2026년 현재까지의 지역별 훈련 현황을 확인해보면 2025년의 경우 전체 훈련 기관의 68.8%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2026년의 경우 76.3%로 그 집중도가 더 심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참여인원도 수도권이 88.5%와 86.2%로 상당한 편이다.

[연도별 · 지역별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양성훈련 훈련기관 및 훈련인원 현황]

(단위: 개, 명, %)

지역	2022		2023		2024		2025		2026.8.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훈련 기관	참여 인원
수도권	113 (66.1)	17,737 (79.2)	176 (71.5)	26,057 (81.6)	209 (72.8)	31,943 (84.8)	221 (68.8)	42,252 (88.5)	148 (76.3)	16,231 (86.2)
비수도권	51 (29.8)	4,546 (20.3)	63 (25.6)	5,571 (17.4)	69 (24.0)	5,487 (14.6)	94 (29.3)	5,190 (10.9)	46 (23.2)	2,448 (13.0)
인구감소 지역	3 (1.8)	116 (0.5)	7 (2.9)	304 (1.0)	9 (3.2)	217 (0.6)	6 (1.9)	276 (0.6)	4 (2.0)	149 (0.8)
합계	171 (100.0)	22,399 (100.0)	246 (100.0)	31,932 (100.0)	287 (100.0)	37,647 (100.0)	321 (100.0)	47,718 (100.0)	198 (100.0)	18,828 (100.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고용노동부

특별훈련수당을 더 지급하더라도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해당 훈련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는다면 동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특별훈련수당 차등 지급이 정책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수도권 외 지역에서의 훈련 인프라 확충⁸⁾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8) 비수도권에서 훈련과정을 개설하는 기관에 지원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5)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산재보험급여 사업⁹⁾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 및 그 유족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노동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재 장애급여자의 직업훈련 및 직장복귀 지원을 통해 사회복귀를 촉진하려는 사업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의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해당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 급여를 지급한다. 근로복지공단은 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하나¹⁰⁾, 산재사건 처리 현황을 확인하면 업무상 사고는 평균 19일, 업무상 질병은 평균 218.5일의 처리 기간이 소요되어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

[산재사건 처리 현황]

(단위: 건, 일)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업무상 사고	처리건수	116,856	122,066	131,281	135,384	134,146	79,341
	평균 처리기간	15.3	15.9	16.5	17.7	18.9	19.0
업무상 질병	처리건수	24,871	28,796	31,666	38,219	50,946	39,636
	평균 처리기간	175.8	182.0	214.5	227.7	244.7	218.5

자료: 근로복지공단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9) 코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4051-350

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요양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요양급여를 지급할지를 결정하여 신청인(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급여의 신청을 대행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및 보험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 처리 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2027년도 예산안에 선보장 급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업무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치료비와 소득보전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와 건강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사회보장제도이나, 현실적으로 업무상 질병에 관한 인과관계 입증에 어렵고 행정적 판정 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잦아 승인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판정 절차 장기화시 근로자는 치료비와 생계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한계에 직면하며, 이로 인해 치료 지연과 직장 복귀 지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초래된다¹¹⁾. 실제로 산재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확인하면 업무상 질병의 경우 218.5일에 달하여 상당한 장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일정한 요건 하에 ‘선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 경우 일정 수준의 급여 또는 치료비를 선지급받고 사후에 산재 승인 여부에 따라 정산할 수 있게 되어 산재를 입은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업무상 재해 조사기간을 법정화¹²⁾하고 기간 초과시 산재보험급여의 일부를 지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하여 선보장 급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에 선보장 급여 예산 435억 6,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

11) 재해근로자에 대한 산재 인정이 지체되는 경우, 재해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다(원칙적으로 산재환자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으나, 산재승인 전에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산재 승인 후에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본인부담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환급받게 됨).

12) 고용노동부는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로 계획 중

[산재보험급여 선보장 개요]

구 분	세부내용
지원대상	재해조사기간 초과* 시 재해노동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 * 산재 신청 후 90일 이내, 특별진찰·역학조사 등 의학자문 시 180일 이내
지급대상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수준	산재 요양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산재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및 최저임금 60% 수준의 휴업급여*를 지원 * 보건복지부 추진 상병수당 지급수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환수조치	최종 재해 불승인 시 기 지급된 선보장 급여는 환수조치 하되 요양금액이 큰 질병은 환수 유예기간 및 분할납부를 통해 환수부담 최소화
예산	요양급여 166억 8,900만원 휴업급여 268억 7,50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선보장 제도 도입으로 산재근로자를 보다 폭넓게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긍정적으로 보이나,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 도입 및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첫째, 선보장 체계의 도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을 수반하는 것인바 법안 심사와 연계한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산재보험 선보장과 관련된 다수의 법률안¹³⁾이 계류되어 있는바 이들 법안의 심사가 조속히 완료되어 차년도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¹⁴⁾’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상계·정산, 차액지급 및 환수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불가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406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681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743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3106호)

14) 코드: 보건복지부 일반회계 4931-309

능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전국 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시행중에 있다¹⁵⁾.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시범사업 개요]

구분	내용
사업내용	취업자가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상병수당 지급
대상지역	총 8개 지역('26.9월 기준) / 공모선정 * 2단계('23.7~, 4개 시군구) 및 3단계('24.7~, 4개 시군구) (1단계 시범사업은 '24.12월 종료) ** 대구달성, 안양, 용인, 익산, 전주, 원주, 충주, 홍성
대상	만 15~64세 취업자(일정 소득 이하) * (취업자격)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사업자등록 및 매출증빙) ** (소득기준) 25.5부터 소득기준은 폐지되었음(기존 가구 합산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 적용)
보장수준	일당 49,540원(최저임금 60%) 또는 직전 소득의 60%(49,540원~68,100원, 건강보험가입자 한정), 최대보장기간 150일

자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는 먼저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를 지급하고 추후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선보장으로 지급된 산재급여를 환수하되, 휴업급여의 경우 상병수당과 정산·상계하여 재해자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재보험 선보장 급여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에서, 상병수당은 보건복지부의 일반회계(향후 국민건강보험기금)에서 지출되는 것인바, 소관과 재원이 다른 두 급여 사이의 정산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각에서 선보장 급여 시행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선보장 급여 지급 시 일부 근로자가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낮음에도 신청만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고, 산재 불승인 이후 환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도

15) 보건복지부는 추후 동 사업을 정식사업으로 편성하고, 그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기금으로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음

적 허점을 통한 재정 누수가 지속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선보장 급여 체계의 도입과 함께 부정수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설계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위 내용에 유의하여 선보장 급여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고용노동부)

① 부대의견의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¹⁶⁾ 사업은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근거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를 제공하는 실업부조제도이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요건심사형(청년)과 2유형 청년형은 청년에게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을 일자리에 매칭시키거나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 사업 등에 연계하여 취업을 위한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다만, 동 사업을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 취업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음에도 참여한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매칭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시에 참여자들의 취업률이 낮았던 점을 고려하여 2027년 예산안 신규사업인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¹⁷⁾**’ 사업 집행 시 취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 고용노동부는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중 선발형(청년)과 2유형 중 청년층 유형을 분리하여 미래대응기금의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로 이관하였다. 이는 최근 청년 고용 상황의 악화로 첫 취업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청년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직무진단, 진로상담, 일경험 등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통해 청년에 특화된 지원을 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인다.

16) 코드: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1234-300

17) 코드: 미래대응기금 4231-320

그러나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취업률을 확인하면 취업률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특히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의 대상이 되는 청년 선발형의 경우 2025년도 기준 취업률이 62.2%이고 최근 5년간 변화 추이를 보더라도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2022~2025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사업종료자의 취업률]

(단위: 명,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종료자	취업자	취업률
전체			339,557	184,985	54.5	269,575	159,614	59.2	295,999	177,239	59.9	318,948	190,819	59.8
1 유형	요건심사형		110,854	61,961	55.9	80,263	48,215	60.1	83,526	51,056	61.1	90,669	55,387	61.1
	선발형	청년	114,163	68,740	60.2	97,031	62,276	64.2	118,227	76,494	64.7	130,973	81,458	62.2
		비경활	45,945	12,915	28.1	28,407	9,613	33.8	26,850	9,323	34.7	25,636	8,678	33.9
2 유형	특정계층		23,576	9,494	40.3	13,756	5,363	39.0	14,233	5,409	38.0	13,216	5,207	39.4
	청년		34,108	25,169	73.8	36,269	25,893	71.4	39,319	26,977	68.6	44,717	31,262	69.9
	중장년		10,911	6,656	61.0	13,849	8,254	59.6	13,804	7,980	57.8	13,737	8,827	64.3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률이 2022년부터 상승 추세에 있으며, 제도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취업률이 5.7%p 높고, 임금은 월 6만원 높게 나타나는 등 제도의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는 청년의 노동시장 첫 진입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실업부조의 성격을 보다 강조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와는 사업의 최종 목적이 다르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청년 첫취업지원제도의 주된 대상이 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선발형 청년의 2025년 취업률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등 취업률이 상승 추세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동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이 취업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일경험 사업, 청년일자리 사업과의 연계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취업률도 함께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7)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지연에 따른 사업관리 강화 필요(기상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기상용슈퍼컴운영¹⁸⁾ 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기상예보 생산과 국가 기후변화 대응 및 과학적 정보생산을 위한 필수 자원인 국가기상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사업이다. 최근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국가 정책지원을 위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운영, 차세대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슈퍼컴퓨터의 전산자원 요구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새로운 슈퍼컴퓨터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2024년 8월 슈퍼컴퓨터 6호기 구축계획이 수립되었으며, 2025년부터 슈퍼컴퓨터 구축을 위한 사업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관련 계약이 계속 유찰되어 2025, 2026년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기상청은 반복적인 무응찰 원인을 기술규격·계약조건·시장 공급여건별로 분석하여 조달방식을 개선하고, 6호기 계약·설치·시험운영 등 단계별 완료시한을 설정하여 사업을 관리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가격 급등, 고환율 등으로 유찰이 반복되면서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을 위한 총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관련 예산이 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2024년 8월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총사업비 91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2025년 중 6호기 도입을 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유찰되자 일정이 지연되었고 그 사이 물가상승 등이 발생하여 총사업비는 기존 대비 940억 3,000만원(102.4%) 증가한 1,858억 3,00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18) 코드: 기상청 일반회계 1239-502

[2025년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총리소로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계
6호기 리소로	45.9	183.6	183.6	183.6	183.6	137.7	918.0

자료: 기상청

[2026년 기준 슈퍼컴퓨터 6호기 총리소로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초기분(A)	19.8	50.5	67.4	67.4	67.4	67.4	-	339.9
최종분(B)	-	-	277.2	369.5	369.5	369.5	89.5	1,475.2
관·부가세 (C)	-	16.2	27	-	-	-	-	33.2
합계 (A+B+C)	19.8	66.7	371.6	436.9	436.9	436.9	89.5	1,858.3

자료: 기상청

그러나 2026년 7월에 다시 입찰공고가 유찰되고 그 사이 D램 등 주요부품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 환율 상승, 리스이자율 상승 등 비용 상승 요인이 중첩되면서 2026년 기준 산출된 총사업비에서 3,734억 1,000만원(201.4%)이 증액된 5,601억 4,000만원이 총사업비로 추정되었다.

[2027년 예산안 기준 총리소로 중장기 연도별 집행계획]

(단위: 억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합계
초기분(A)	131.4	205.1	205.1	205.1	205.1	102.7	1,054.5
최종분(B)	-	833.9	1,111.8	1,111.8	1,111.8	278.0	4,447.3
관·부가세 (C)	18.3	81.3	-	-	-	-	99.6
합계 (A+B+C)	149.7	1,120.3	1,316.9	1,316.9	1,316.9	380.7	5,601.4

자료: 기상청

기존 운영하고 있는 5호기의 경우 노후화로 인한 예보의 정확도, 운영 안정성 저하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슈퍼컴퓨터 6호기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보인다. 다만 서버용 D램 등 주요부품 가격 급등으로 총사업비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공고

유찰이 반복되면서 편성된 예산이 2년째 전액 불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운용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당초 2027년 12월까지 6호기와 병행 운영될 계획이었던 슈퍼컴퓨터 5호기의 운영 기간이 2029년 5월 까지로 1년 5개월 연장되어 안정적인 예보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이러한 지적의 취지를 감안하여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8) 천리안 위성 5호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기상청)

① 부대의견의 내용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 개발(R&D) 사업¹⁹⁾은 극심해진 위험기상 및 기후변화에 대한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기 위한 세 번째 정지궤도 기상 위성(천리안위성 5호)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시스템/본체, 기상탑재체, 우주기상탑재체의 3가지 과제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시스템/본체 개발은 민간기업인 LIG D&A(주)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하는 형태로 진행되나, 동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기상청에서 당초 계획한 기술이전 일정은 2026년 3분기까지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조건 협의 및 가치평가, 이전계약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이었으나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에 국회는 2025회계연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결산심사에서 기상청은 천리안위성 5호 사업 과정 중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이전 계약 지연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리스크 관리 대책을 강구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상청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민간기업 간 기술이전 관련 이견으로 천리안위성 5호 발사라는 최종 과업 수행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에 임할 필요가 있다.

19) 코드: 기상청 일반회계 3137-406

시스템/본체 개발사업은 LIG D&A(주)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을 이전받아 개발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동 기술이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기상청에서 당초 계획한 기술이전 일정을 보면 2025년 2분기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 항공우주연구원의 보유기술을 공유해 주고, 2026년 3분기까지는 연구개발기관과 항공우주연구원 간 기술이전과 관련한 계약조건 협의 및 기술이전 가치평가, 이전계약까지 모두 완료하는 것으로 기획하였으나 2026년 9월 현재까지도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 D&A(주) 사이의 협의 지연으로 2025년 상반기 이전 기술이전과 관련된 절차들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기상청은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LIG D&A(주)가 함께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에 4자 협의체는 2026년 9월 현재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기술이전 목록을 확정하였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기술 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LIG D&A와 기술료 등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이전 협의를 위한 4자 협의체 진행 상황]

회의차수	연월	내용
-	2025. 4.	민간기업 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기술이전 협의체 구성
1차회의	2025. 5.	기상청,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및 민간기업 간 연락담당자 지정
2차회의	2025. 6.	민간기업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기술이전 22건 요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검토하겠다는 의견
3차회의	2025. 7.	민간기업에서 요구한 기술이전에 대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재검토 필요 의견
4차회의	2025. 11.	기술이전 목록 확정을 위한 원칙적 합의 촉구
5차회의	2025. 12.	외부 전담기관의 기술 가치평가 전 최종 기술이전 목록 22건 확정
6차회의	2026. 2.	기술이전 계약체결 지연 방지를 위해 기술 가치평가와 기술이전을 병행 추진하는 방안 협의
7차회의	2026. 4.	기술 가치평가 전문기관의 기술 평가절차 착수 및 가치평가 기간 중 계약 관련 사전 병행추진 논의
8차회의	2026. 9.	기술이전 당사자 간 협상 상황 점검 및 기술이전 항목 조정 등 다각적 협상 방안 논의

자료: 기상청

4자 협의체의 운영으로 기술이전 목록을 확정하고 기술 가치평가를 완료한 것은 고무적이나, 계획상으로는 2026년 3분기에 기술이전 계약 체결을 계획하였던 것에 비하여 사업 진행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여전히 기술이전과 관련된 계약 체결 단계에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위성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상청은 신속한 기술이전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14-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시정 7건, 주의 41건, 제도개선 160건 등 중복 15건을 포함하여 총 193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159건을 조치 완료하고, 34건(기후에너지환경부 22건 및 고용노동부 12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기후에너지환경부	-	-	4	28	93	(8)	117	95	22
기상청	-	-	-	2	10	(1)	11	11	-
고용노동부	-	-	3	11	57	(6)	65	53	12
합계	-	-	7	41	160	(15)	193	159	34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1건 및 고용노동부 1건 총 2건이다. 이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소관 부대의견 1건은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중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기후에너지환경부	1	-	1 ¹⁾
고용노동부	1	1	-

주: 1) 기후부·농식품부 공통 1건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²⁰⁾

(1)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적정 예산 편성 필요(기후에너지환경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²¹⁾ 사업은 취수원 다변화를 통해 안전한 물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대구·경북, 부산·경남지역에 공급하려는 것으로,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 및 지역 주민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낙동강 상류 지역의 사업이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며, 변경된 사업계획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후속 행정절차를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조성하며, 취수지역 주민에 대한 실질적 인센티브 제공방안, 유역물관리 위원회 등 공식적 거버넌스를 통한 갈등조정체계 적극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에는 본류 수질개선을 전제로 '수해지 인근'에서 대체 취수원(복류수 등)을 개발하는 등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검토 중으로 신임 대구시장과 사업방향을 2026년 12월까지 확정할 예정이고, 부산-경남지역에는 상류 사업 추진방향을 하류 사업에도 적용하는 사업 방향 전환에 대해 부산·경남과 2026년 12월까지 협의·확정 예정으로 2026년 12월 31일에 조치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상류)의 2027년도 예산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20)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2026. 10.

21) 코드: 일반회계 5033-356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여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하류)의 타당성조사 보완 등을 위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사업(상류)의 2027년도 예산안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2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다.

낙동강 유역 맑은물 공급사업은 상류, 하류 사업이 합쳐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5033-356)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각 사업별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2027년부터 2개 세부사업으로 분리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류사업은 정부안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하였다.

낙동강 상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으나, 2026년부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타당성조사의 일환으로 복류수 실증실험시설 설치·운영을 개시하였고, 복류수 실증실험시설의 수질·수량 확보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업 추진이 지속되고 있다.

낙동강 하류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2026년도부터 상류와 같이 지하수위에 영향이 없는 복류수 중심의 공급방안으로 전환하는 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2차년도 용역비가 반영된 상류사업과 달리, 하류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를 보완하는 등의 예산 41억 4,700만원을 요구했으나,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와 관련하여 수해지 인근에서 부산·경남지역 수요(90만톤/일)를 최대한 충족하고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안 마련 용역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를 위해 예산반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낙동강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요구한 202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와 낙동강을 수원으로 사용하는 남부권 주민의 먹는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증액편성한 2026년 국회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낙동강 맑은물 공급사업(하류)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정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의 법적근거 보완 필요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2007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나, ① 예산 대부분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② 일부 업무는 현행 법률상 사업 수행 근거가 미비하며, ③ 적절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협회 업무에 대해 「대기환경보전법」상 법적 근거를 보완하여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 정합성을 확보하고, 협회의 위탁사업 범위와 역할을 법령 범위 내로 한정해 엄격히 운영하며, 민간 부문의 참여가 가능한 사업은 공정경쟁 원칙에 입각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회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강화하며 상시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감독 기능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협회 출범 당시(2007년)에 비해 크게 확대된 협회의 사업 영역을 고려하여, 설립 목적과 회원사 구성의 적정성을 재정립할 수 있는 관리·감독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업무 위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법에서는 협회의 설립목적 및 업무 범위를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적 근거 보완 검토 예정이고, 2025년부터 기존 수의계약은 모두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을 완료하였으며, 협회의 민간위탁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감사 추가 실시에 대해 검토예정이고, 기존 배출가스 저감사업뿐만 아니라 무공해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변화된 정책 여건을 고려, 협회 회원사 범위에 대해 국회와 협의하여 법 개정 검토 예정으로 2026년 12월 31일에 조치예정이라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위탁업무와 관련한 2024회계연도 결산 국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협회의 실질적 사업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수행사업 예산의 대부분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관련 사업들이다. 이를 반영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사업 분야의 기존 15개 회원사에 더하여 전기차 충전사업 분야 사업자 45개사를 2024년에 새롭게 회원사로 영입하였다. 2026년 기준으로 협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자 14개사,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41개사 등 총 55개사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그런데 무공해차 충전시설 분야를 중심으로 회원사를 구성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현행 법률상 근거가 미비한 측면이 있으며, 시행령으로의 위임한계를 초과할 수 있는 우려가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목적 및 수행업무의 범위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의 위임규정과 동법 시행령을 통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무공해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사업 등 업무를 광범위하게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²²⁾와 이에 근거한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전기차·수소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공급속충전시설 운영 등에 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²³⁾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업무로 자동차

22) 「대기환경보전법」

제8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23) 「대기환경보전법」

제80조(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관련한 보급사업, 사후관리, 기술개발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²⁴⁾를 근거로 위탁 수행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등 무공해차 충전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수행업무와는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령에 근거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무공해차 충전사업 관련 예산과 사업을 위탁하여 수행토록 하는 것은 국회의 법률 심의 없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사무범위가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으며, 이는 절차상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사업 등 현재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법적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법률과 시행령 간 위임의 정합성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출범당시(2007년)에 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사업영역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여,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목적 및 회원사²⁵⁾ 구성의 적정성에 대한 재정립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개발사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와 관련된 업무로서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4)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66조(업무의 위탁)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58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를 위한 지원
- 1의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법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운영
3. 법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5) 「대기환경보전법」

제79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3)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른 기금건전성 제고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대지급금 지급²⁶⁾ 사업은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여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런데 임금체불 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기존 3개월분 임금에서 6개월분의 임금으로 증가하여 대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대지급금 지급 규모 확대에 따라 회수율 상향 등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변제금 미납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장기미회수채권 자산관리공사 위탁, 변제금 회수절차를 국세채납처분절차에 준용토록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상향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여전히 회수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하여 환수 규모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지급금 지급 사업은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주요 지출 사업으로, 「임금채권보장법」²⁷⁾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징수된 부담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임금체불액이 줄고 이에 따라 대지급금 지급액이 감소하면서 수지차가 개선되었으나,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액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기금의 적립금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26) 코드: 임금채권보장기금 3051-300

27)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사업주의 부담금)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이나 제7조의3에 따른 체불 임금등 및 생계비의 용자 등 임금채권보장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임금체불액 및 대지급금 지급 추이]

(단위: 백만원,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임금체불액(A)	1,583,014	1,350,452	1,347,209	1,784,530	2,044,848	2,067,896	1,081,428
대지급금 지급액(B)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4,207	684,511	367,089
도산 대지급금	109,975 (19.0)	79,360 (14.5)	36,576 (6.8)	39,635 (5.8)	54,828 (7.6)	69,274 (10.1)	38,829 (10.6)
간이 대지급금	469,715 (81.0)	467,210 (85.5)	500,288 (93.2)	647,271 (94.2)	669,379 (92.4)	615,237 (89.9)	328,260 (89.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전체 대지급금 지급액 중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 지급액 비중임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기금 재정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수입(A)	515,629	523,876	565,385	617,255	663,021	736,848	542,980
지출(B)	640,374	627,414	600,342	792,305	836,242	807,518	485,614
사업비 지출	627,195	613,715	584,138	773,028	818,023	789,845	475,106
대지급금 지급	579,690	546,571	536,864	686,905	727,198	688,519	367,089
수지차(A-B)	△124,745	△103,538	△34,957	△175,050	△173,221	△70,670	57,366
적립금	834,032	730,494	695,537	520,487	347,266	276,596	333,962
여유자금	629,067	626,307	590,558	416,886	292,690	270,746	327,566
공자기금 예탁금	200,000	100,000	100,000	100,000	50,000	0	0
한국은행 예치금	4,965	4,188	4,980	3,601	4,576	5,850	6,396

자료: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규모가 지금과 같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지급금 회수율 지표는 유의미한 개선이 없다. 특히 최근 간이대지급금 지급절차의 간소화, 체불액 규모의 증가 등으로 간이대지급금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회수율은 2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체불임금 관련 회수율]

(단위: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7.
대지급금 회수율	32.2	31.9	30.9	30.0	29.7	29.9
도산대지급금 회수율	39.8	40.7	41.1	41.2	41.3	41.3
간이대지급금 회수율	14.6	16.0	16.4	17.0	18.1	19.1

자료: 고용노동부

또한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지급에서 최종 6개월분 임금 지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최우선변제권의 범위와 대지급금 지급 범위가 불일치하게 되어 대지급금 회수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²⁸⁾.

대지급금 지출 증가 속도에 미치지 못하는 회수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수지차를 악화시키고, 향후엔 대지급금 사업 자체에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인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감안하여 고용노동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지급금 회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장애인고용기금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²⁹⁾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동 기금의 주요 재원은 「장애인고용촉진

28) 「근로기준법」 제38조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에 대해 사업주의 총 재산에 대하여 최우선 순위로 변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2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68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공단의 운영, 고용장려금의 지급 등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다. 최근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고용률은 이에 맞게 증가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들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동 기금의 자체수입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202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및 고용장려금 지급 기준]

구분	고용부담금	고용장려금																								
대상	월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 기관 전체)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 (공공기관, 민간기관만 해당)																								
산정 방식	부담금 총액(연간 합계액) = (의무 고용인원 - 장애인 고용인원) × 고용수준별 적용 부담기초액	월별로 의무고용률 초과 시 지급 성별 및 장애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																								
	<table><tr><th>산정기준</th><th>1인당 부담금(월)</th></tr><tr><td>의무고용인원 3/4 이상</td><td>1,295,000원</td></tr><tr><td>의무고용인원 1/2~3/4</td><td>1,372,700원 (6% 가산)</td></tr><tr><td>의무고용인원 1/4~1/2</td><td>1,554,000원 (20% 가산)</td></tr><tr><td>의무고용인원 1/4 미달</td><td>1,813,000원 (40% 가산)</td></tr><tr><td>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td><td>2,156,8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td></tr></table>	산정기준	1인당 부담금(월)	의무고용인원 3/4 이상	1,295,000원	의무고용인원 1/2~3/4	1,372,70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 1/4~1/2	1,554,0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 1/4 미달	1,813,0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table><tr><th>구분</th><th>월 지급단가</th><th>비고</th></tr><tr><td>경증남성</td><td>35만원</td><td rowspan="4">월임금의 1/10 이하 단가중 낮은 금액 지급</td></tr><tr><td>경증여성</td><td>50만원</td></tr><tr><td>중증남성</td><td>70만원</td></tr><tr><td>중증여성</td><td>90만원</td></tr></table>	구분	월 지급단가	비고	경증남성	35만원	월임금의 1/10 이하 단가중 낮은 금액 지급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산정기준	1인당 부담금(월)																								
	의무고용인원 3/4 이상	1,295,000원																								
	의무고용인원 1/2~3/4	1,372,700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 1/4~1/2	1,554,000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 1/4 미달	1,813,000원 (40% 가산)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2,156,880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구분	월 지급단가	비고																								
경증남성	35만원	월임금의 1/10 이하 단가중 낮은 금액 지급																								
경증여성	50만원																									
중증남성	70만원																									
중증여성	90만원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률 변동 현황]

(단위: %)

구 분		'91~'08	'09	'10~'11	'12~'13	'14~'16	'17~'18	'19~'21	'22~'23	'24~'26	'27~'28	'29
국가· 지자체	공무원	2.0	3.0				3.2	3.4	3.6	3.8		4.0
	근로자	-		2.3	2.5	2.7	2.9			3.8		4.0
공공 기관	공기업	2.0		3.0	3.0	3.0	3.2	3.4	3.6	3.8		4.0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3	2.5							
민간기업						2.7	2.9	3.1	3.1	3.1	3.3	3.5

자료: 고용노동부

그런데 수입이 이와 같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지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수입·지출 추이]

(단위: 백만원, %)

구 분	수입		지출(A)					사업비 비중
	고용 부담금		사업비(B)		운영비	내부지출· 여유자금 운용		
				고용 장려금				
2019	1,182,164	619,090	1,182,164	420,378	210,560	64,519	697,267	35.6
2020	1,313,484	755,756	1,313,484	519,138	229,655	72,003	722,343	39.5
2021	1,717,843	767,611	1,717,843	610,819	252,191	75,029	1,031,995	35.6
2022	1,925,696	763,688	1,925,696	693,356	269,790	78,838	1,153,501	36.0
2023	2,095,985	829,580	2,095,985	784,648	324,272	81,305	1,230,032	37.4
2024	2,304,378	895,365	2,304,378	851,734	353,371	84,063	1,368,581	37.0
2025	2,366,359	886,222	2,366,359	861,274	377,377	85,929	1,419,155	36.4
2026	2,512,054	1,012,286	2,512,054	924,642	403,220	89,063	1,498,349	36.8

주: 2019~2025년은 결산, 2026년은 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 누적된 여유자금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장애인 고용지원 정책 및 고용률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신규사업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운용성과와 장애인 고용성과가 연계되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매년 사업비를 큰 폭으로 증가시키고 있고, 향후 신규사업 발굴 등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 및 기금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조치 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으로 기금 수입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장애인 고용률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해 장애인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 발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할 것

이라 밝혔으며, 이에 따라 민간의 경우 2026년 3.1%에서 2027년 3.3%, 2029년 3.5%로 의무고용률이 상향, 공공의 경우 2026년 3.8%에서 2029년 4.0%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상향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증가로 이어져 동 기금의 수입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동 기금의 2027년도 계획안은 기존의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비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보이며, 오히려 여유자금운용 비중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지출 주요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주요사업비	610,819 (35.6)	693,356 (36.0)	784,648 (37.4)	851,734 (37.0)	861,274 (36.4)	924,642 (36.8)	987,532 (36.7)
정부내부 지출	350,000 (20.4)	600,315 (31.2)	600,000 (28.6)	600,000 (26.0)	700,000 (29.6)	800,000 (31.8)	800,000 (29.7)
여유자금 운용 등	757,024 (44.1)	632,024 (32.8)	711,337 (33.9)	852,644 (37.0)	719,155 (30.4)	787,412 (31.3)	905,532 (33.6)
계	1,717,843	1,925,696	2,095,985	2,304,378	2,366,359	2,512,054	2,693,064

주: 2019~2025년은 결산, 2026, 2027년은 계획

자료: 고용노동부

동 기금에서 장애 지출수요나 특이사항으로 인해 여유자금을 적립해야 할 명확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여유자금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조성된 재원의 기회비용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 기금 지출사업의 주요 성과지표인 장애인 고용률이 수년째 정체 상태에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고용을 증진하고 직업재활을 지원하는 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활용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15~64세 장애인 고용률]

(단위: %)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50.2	49.2	49.0	50.0	48.0	49.0	50.3	49.8	48.4	48.3

주: 각 연도 5월 기준으로 조사된 현황임

자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고용노동부 및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존 사업 중 적극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사업을 모색하고, 신규사업 발굴 등 조성된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관리 방안 마련 필요(고용노동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퇴직연금사업운영³⁰⁾ 사업은 중소기업(현재 50인 미만, 27.1.1. 기준 100인 미만) 사용자·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영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업자와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소득 증진, 중소 영세기업의 일시적 퇴직금 부담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가입 중도취소 및 중도인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해 기금 규모가 축소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한 수익률 제고가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가입 근로자의 노후소득 보장에도 차질이 우려되는바,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고용노동부는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해서 가입자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30인 미만에서 27.1. 100인 미만까지 확대)하며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법 개정 이후에도 중도취소 및 중도인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있으므로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도 가입취소 규모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립금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률 제21475호, 2026.3.17. 공

30) 코드: 근로복지진흥기금 3061-318

포, 2027.1.1. 시행)에 따라 동 제도의 가입 대상을 50인 미만에서 100인 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동 사업의 지출 계획 규모를 전년 대비 38억 6,300만원(15.6%) 증액 편성하였다³¹⁾.

다만 동 제도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가입 중도취소 및 중도인출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2024년 연말 대비 2025년 연말 적립금액은 6,306억원 증가했으나 2,285억원의 중도인출이 발생했으며, 2025년 연말 대비 2026년 8월 적립금액은 4,296억원 증가했으나 2,582억원의 중도인출이 발생하였다.

[2022~2026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중도취소 사업장 수 및 중도취소 근로자 수 현황]
(단위: 개소, 명, 억원)

	사업장(개소)		근로자(명)		당해 연도 중도 인출 금액	누적 중도 인출 금액	연말 적립금액(억원)	연말 적립금액(억원)		
	당해 연도 가입 사업장 수	당해 연도 중도 취소 사업장 수	당해 연도 가입 근로자 수	당해 연도 중도 취소 근로자 수				적립금액 중 정부 재정 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사업주 재정지원금	적립금액 중 정부 근로자 재정 지원금
2022	2,549	106	10,282	632	2	2	324	0.38	0.38	-
2023	12,194	946	66,927	11,897	398	400	4,734	23	23	-
2024	10,383	841	74,364	30,529	1,365	1,765	8,601	147	82	65
2025	13,371	970	100,933	45,549	2,285	4,050	14,907	239	120	119
2026.8	9,534	849	84,187	46,211	2,582	6,632	19,203	185	91	94

주: 근로자 재정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지급을 시작함

자료: 고용노동부

근로자 재정지원금의 도입 등으로 사업이 2024년도부터 적립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이에 따라 동 퇴직연금기금이 안정적인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현재와 같이 적립금의 중도 인출이 반복되고 인출금액이 증가할 경우 수익률 제고와 이를 통한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에 다소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은 계약형 퇴직연금(DC, DB, IRP)³²⁾³³⁾ 상품과도 경쟁 관계에 있다는

31)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도입률은 77.6%로 높은 편이지만, 근로자 가입률은 58.7% 정도에 그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의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32)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집합적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투자주체(근로복지공단)와 책임의 귀속주체(근로자)가 상이하나,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가입자의 투자의사결정에 따라 자산운용이 이루어져 투자주체(근로자)와 책임의 귀속주체(근로자)가 동일하다.

점에서 안정적인 적립금 및 수익률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의 이탈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용노동부는 이에 유의하여 집행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6) 기상감정 업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필요 (기상청)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와 내용

기상산업활성화 사업³⁴⁾의 내역사업 ‘기상산업인프라강화’는 기상산업 시장의 조사·분석 및 정보 수집을 진행하고, 기상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면허 취득 교육 및 보수 교육, 특성화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동 사업은 기상감정사 제도를 운영 및 관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기상감정사란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기상감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기상감정업체에 소속되어 소송 과정에서 풍속 및 일조량과 같은 기상 상황이 사건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감정 결과를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의 감정 결과는 보험금 지급이나 민사, 형사소송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최근 4년간 기상감정업무를 담당하는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는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2024년에는 면허 취득자가 없어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상청은 기상감정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기상감정 활용 확대를 위한 대외 홍보를 수행하고,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기상감정 초급교육 확대, 기상·기후날씨 보험 연계 등 기상감정 활성화를 위한 기상청-손해보험협회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개최 등의 수행으로 동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보고하였다³⁵⁾.

33) 계약형 퇴직연금은 ① 사용자가 퇴직연금부담금을 적립하여 자기 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퇴직 시점 평균 임금 × 근속연수)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 Defined Benefits), ② 사용자 납입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고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 Defined Contribution), ③ 개인이 부담금 납입과 운용책임을 모두 지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로 구분됨

34) 코드: 일반회계 1431-301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기상청은 기상감정사 면허 취득자가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여 저조하므로,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및 기상감정 업무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기상청은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입장이나, 2025, 2026년에도 동 자격의 취득자수를 확인해보면 매년 10명 이하에 불과하고 제도를 운영한 기간 동안 동 자격을 취득한 인원이 64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기상감정사 자격제도가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기상감정사 취득 인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8월	총 인원 (2014~2026년)
5명	9명	4명	0명	9명	6명	64명

자료: 기상청

35)

[연도별 기상감정사 자격제도 홍보 내용]

연도	홍보 내용
2023년	- 카드뉴스 홍보 (2023. 9.) - 박람회 패널 홍보 (2023. 9.) - 영상제작 및 홍보 (2023. 11.)
2024년	- 관련 기관에 우편 등을 통한 기상감정 제도 안내 (2024. 4.) - 카드뉴스 홍보 (2024. 6.) - 기상감정 홍보 페이지 개편 (2024. 6. ~ 7.) - 리플릿 제작 및 배포 (2024. 9.) - 기상감정 퀴즈 이벤트 및 카드뉴스 홍보 (2024. 11.)
2025년	- 법원, 검찰청 등 관련 기관 등 기상감정 제도 안내(2025. 4.) - 박람회 연계 기상감정 제도 소개(2025. 8.) - 한국기상학회 홍보부스 운영(2025.11.) - 기상 관련 학과(8개 학교)에 홍보 포스터 배부(2025.12.) - 보험업계 대상(3개기관) 찾아가는 설명회(2025.12.) - 카드뉴스 홍보(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2025. 12.) - 한국시니어과학기술인협회 매거진 기상감정 소개자료 게재(2025.12.)
2026년	- 손해보험협회, 보험사와 기상청-손해보험협회 협의체 운영 및 보도자료 배포 (2026.2~) - 기상기후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산업과 보험산업 간 상생협력방안 포럼 개최(2026.6.) - 기상감정기사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기상감정 초급교육 확대((2025) 1회 → (2026) 2회)

자료: 기상청

또한 기상감정사를 수요로 하는 기상감정업체가 2026년 현재 기준 3곳에 불과하고 기상감정 업무 수는 1건에 불과하여 기상감정 산업 자체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연도별 기상감정 업체 및 업무 건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업체 수	5개	6개	6개	5개	3개	3개
기상감정 업무 수	2건	1건	2건	4건	1건	1건

자료: 기상청

기상청은 현 상황을 고려해 차년도 예산 집행 시에 기상감정 제도에 대한 사회적 수요 등을 감안하여 이를 반영한 정책 지원 방안, 홍보 방안을 마련하는 등 기상감정사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5-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23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8월 19일 결산을 상정하여 8월 21일 심사를 마쳤다.

[국토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국토교통위원회	2026. 7. 23.	8. 19.	8. 20.	8. 2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토교통부 소관 133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5건, 새만금개발청 소관 6건 등 144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소관 35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건, 새만금개발청 소관 4건 등 총 4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국토교통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국토교통부	-	-	6	31	104	(8)	133	-	35
국토분야	-	-	2	13	59	(4)	70	-	12
교통분야	-	-	4	18	45	(4)	63	-	23
행정중심복합 도시건설청	-	-	-	2	3	-	5	-	2

현서린 예산분석관(seorinhyun@assembly.go.kr, 6788-4642)

김민혁 예산분석관(mh.k@assembly.go.kr, 6788-4687)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새만금개발청	-	-	1	1	4	-	6	-	4
합계	-	-	7	34	111	(8)	144	-	41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이며, 합계 계산 시 중복은 제외

2.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국토교통위원회, 「2025회계연도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 2026. 8.

나. 분석의견¹⁾

(1)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의 출자금 환원 최소화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다가구매입임대출자²⁾ 사업은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승인 취소 등으로 집행이 불가능해진 출자금을 이월, 불용하지 않고 차년도 신규 출자금에서 상계하는 환원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환원 규모가 2024년 9,609억원에서 2025년 2조 4,069억원으로 약 2.5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재정법」 제72조의 이월 제한 취지를 사실상 우회하는 측면이 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출자금 환원 규모가 최소화되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다가구매입임대 출자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기존 미집행 출자금을 신규 사업예산으로 상계하는 방식의 편성을 하지 않았으나, 통합공공임대출자³⁾에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2) 코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1440-402

3) 코드: 주택도시기금(주택계정) 1440-411

있어서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정산채권 등의 예산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통합공공임대출자사업의 내역사업으로서 영구임대출자, 국민임대출자, 행복주택출자 사업은 모두 예산이 미편성되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도 취소지구 정산채권 각 296억원, 283억원, 1,421억원을 상계한 결과이다. 그러나 국토교통위원회가 다가구매입임대출자 사업에 관하여 채택한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취소지구 정산액이 다음해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은 재이월금지 원칙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며 예산안 심사가 불충분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유사사업인 통합공공임대출자 사업에 있어서도 정산채권, 출자금 환원액의 예산 활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 주택도시기금 직접대출 확대 방안 마련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주택도시기금 내 **이차보전지원**⁴⁾ 사업 및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⁵⁾ 사업은 주택구입·전세자금에 대해 이차보전 또는 직접용자를 하려는 것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재원 및 가계부채 관리 측면에서 직접용자 대비 이차보전의 규모를 지속 확대하여 왔다. 그러나 이차보전 지원의 경우 직접용자와 달라 기금으로 직접 회수되지 않아 매년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직접대출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이차보전사업 확대 시 중장기 재정소요를 추계하고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안 편성시 직접용자의 규모를 축소하고 이차보전의 비중을 더욱 확대하였으므로, 적정 규모의 이차보전 지출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등 동 사업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4) 코드: 주택도시기금 1042-401

5) 코드: 주택도시기금 1231-401

이차보전 지원 사업의 2027년도 예산안은 전년 당초 및 수정계획(1조 9,720억 800만원) 대비 999억 6,600만원(5.1%) 증액된 2조 719억 7,400만원이 편성된 반면, 직접용자인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사업의 경우 전년 대비 5조 215억 8,100만원(△48.7%)이 감액된 5조 2,800억원이 편성되어, 채택된 시정요구사항과 배치되는 편성 기조가 유지되었다. 이차보전 사업의 특성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일정 기간 동안 지출액이 누적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국가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적정 수준의 이차보전 지출 규모를 검토하고, 중장기적 재정부담을 경감할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 집행절차 개선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⁶⁾ 사업은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교통비 지출액의 일부를 환급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현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교통카드 사업자가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있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매칭 지방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환급액이 미정산되는 등 사업 집행절차에 문제가 있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환급금 정산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요구사항(주의)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별 지방비 편성·집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비가 확보된 범위에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모두의 카드 사업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 지연으로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한 교통카드 사업자에 대한 환급금 정산이 지연되고, 이자 등 금융비용이 사업자에게 전가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확보 여부를 반영하여

6)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4931-354

환급·정산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집행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모두의 카드 사업은 교통카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약 1개월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이를 정산해주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적기에 편성하지 않아 교통카드 사업자가 선지급한 환급금의 정산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2025회계연도에는 강원 영월·횡성 및 전북 김제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하지 못하여 교통카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선지급한 환급금 중 지방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산되지 못하였고, 해당 지자체가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이후인 2026년 9월에 이르러서야 정산이 이루어졌다.

2026년에도 지방비 확보 지연에 따른 정산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모두의 카드 이용자에게 2026년 상반기 지급된 환급금은 총 5,940억원으로, 해당 지급분은 2026년 8월 말까지 정산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2026년 9월 초 기준 경기·경남 등 8개 시·도의 지방비 부족으로 총 390억원이 미정산된 상태이며, 이 중 국비 미정산분은 195억원인 것으로 확인된다.⁷⁾

특히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족에 따른 정산 지연으로 발생하는 이자비용 등을 별도로 부담하지 않고 있어, 이용자에게 환급금을 선지급한 교통카드 사업자가 정산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이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편성을 독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비 확보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확보된 재원의 범위에서 환급 및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국회의 시정 요구 취지를 반영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도입 수량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⁸⁾ 사업은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BF) 인증, 교통약자 장거리 이동지원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부산·대전·충남·전남·경북은 최근 5년간

7)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26년 4월 고유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추경편성으로 예상치 못한 예산 확대와 지방선거 등 지자체 예산 일정 연기로 지방비 확보 지연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8) 코드: 교통시설특별회계(교통체계관리계정) 4932-301

(2021~2025년) 연속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대수를 미확보하였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특별교통수단 법정 의무도입 기준을 장기간 미충족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시정요구사항(제도개선)을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2027년도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운영 계획에 따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의무대수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정 의무 준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⁹⁾은 중증보행장애인 등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의무적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에 전국 시·도에 775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신규 도입하여 총 5,192대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다. 그러나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도입·운영 계획을 기준으로 할 경우 부산광역시, 전남광주통합 특별시,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4개 시·도는 2027년에 법정 의무대수¹⁰⁾를 확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차량 도입비뿐만 아니라 인건비 등 지속적인 운영비가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비교적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의무대수는 일반적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한 최소 기준이라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만을 이유로 장기간 미충족 상태를 지속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9)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10) 국토교통부는 연말 시·도별 중증보행장애 인구 현황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도입의무 수량을 조정하므로, 현재는 2025년 말 기준이 적용되고 있어 2027년에는 도입의무 수량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25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2027년도 시·도별 특별교통수단 도입계획을 재점검하고, 법정 의무대수 미충족이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법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5) 국회세종의사당 사업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분배 필요(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① 시정요구의 내용

국회세종의사당 건립¹¹⁾ 사업은 입법부와 행정부의 국정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에 두는 국회 분원으로서 국회세종의사당을 건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보상비의 경우 부지매입비 일부가 여전히 타당성재조사 대상에 묶여 있어, 타당성재조사 완료 및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최종 확정되어야 부지매입계약 및 보상비 집행이 가능하여 사업 지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존재하였다.

이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타당성재조사 및 기획예산처와의 총사업비 협의를 조속히 매듭짓고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동 사업은 타당성재조사 결과가 타당성 미충족으로 결론남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및 부지매입계약 체결에 추가적인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나 2027년도 예산안은 토지보상금 중도금과 기본조사설계비 잔액 전부가 편성되어 있는바 예산의 추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하에 적정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2027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34억 5,500만원 증가한 1,190억 9,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동 예산안은 부지매입에 따른 건설보상비 잔액 중 중도금 해당 분량과 기본조사설계비 잔여사업비 전부로 구성되어 있다. 즉 올해 하반기와 내년 중 토지매입계약이 체결되어 중도금을 집행하고 기본조사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 하에

11) 코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2031-314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예산이 처음 반영된 이후 선행절차 지연으로 매년 예산 대부분이 이월되어 왔으며, 2026년 7월말까지 누적 집행액은 36억 4,600만원으로 본예산 누적 편성액 2,153억 6,700만원의 1.7% 수준에 불과하다. 2026년도 예산 역시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되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취지에서 건설보상비와 기본설계비를 해당 총액의 50% 수준까지 반영하였으나, 2026년 1월 총사업비 조정이 완료된 이후에도 7월말 기준 예산현액 2,123억 5,700만원 중 7억 6,400만원(0.4%)만이 집행되었고, 건설보상비 1,763억 6,200만원은 집행되지 않았다.

특히 2026년 8월 타당성재조사 결과 "타당성 미확보" 결론이 남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규칙상의 사업부지 약 63만 1,000㎡ 전체를 반영하기 위한 총사업비 협의를 기획예산처와 진행하고 있다. 이 협의 결과에 따라 매입 대상 부지가 현행 총사업비에 반영된 54만 8,727㎡에서 달라질 수 있으며, 협의 완료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매입 범위 확정이 늦어져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2026년도 보상비와 2027년도 중도금, 그리고 사업범위 확정을 전제로 한 기본조사설계비가 다시 이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예산의 추가적인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하에 적절한 사업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15-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시정 5건, 주의 26건, 제도개선 92건 등 중복 6건을 포함하여 총 117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89건을 조치 완료하고, 28건(국토교통부 26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건 및 새만금개발청 1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	-	3	20	84	(3)	104	78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	2	3	4	(2)	7	6	1
새만금개발청	-	-	-	3	4	(1)	6	5	1
합계	-	-	5	26	92	(6)	117	89	28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부대의견을 첨부한 사항 중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은 국토교통부 5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3건을 조치 완료하고, 2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별 부대의견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부대의견	조치현황('26.8.31.)	
		조치완료	조치중
국토교통부	5	3	2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나. 분석의견¹²⁾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실행행률 제고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¹³⁾은 저소득·무주택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동 사업은 실행행률이 연례적으로 저조하고 보증료 지원의 실제 수요가 낮다는 등의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의 저조한 실행률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구체적으로 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절차간소화 측면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시 지원사업 동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하고 성과지표로 사업의 실효성을 확인가능하도록 변경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년대비 87억 9,700만원(110.2%) 증액된 16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행행률 제고 효과가 충분히 확인되기 전이므로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 인지도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보증보험료 지원 수요와 인당 적정 지원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의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대한 실행행률 저조가 국회의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반복되어 왔고 2026년도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도 전세물량 감소 등을 고려하여 감액하라는 취지의 평가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027년 예산안에 전년대비 2배 이상 증액된 167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다.

예산안의 산출 과정에서는 지원대상의 확대(7.75만명→10.1만명) 인당 지원금액의 확대(평균 20.6만원→33만원)를 반영하였고, 2024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보증보험 가입당시 보증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

12)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국토교통위원회)」, 2026. 10.

13) 코드: 일반회계 1034-322

소화한 점을 함께 고려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은 지원대상에 대한 홍보 부족과 수요 부족이 맞물려 실집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대상의 확대와 인당 지원금액의 확대만으로는 집행률을 충분히 확대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다. 특히 2025년 11월부터 보증보험 가입 당시 지원금 신청을 함께 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 7월 말 현재 기준 실집행액은 37억 1,300만원으로, 전년 최종 실집행액 54억 4,500만원의 68.1%인바, 아직까지는 이러한 절차 간소화 등이 충분한 실집행 제고 효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우선 절차 간소화를 통한 제도 인지도 개선효과를 확인하고, 실제 보증보험료 지원 수요와 인당 적정 지원금액을 함께 고려하여 예산의 규모를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건축안전 사업의 사업목적 달성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건축안전 사업¹⁴⁾의 내역사업인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은 구조설계 부실 및 불량자재 사용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하려는 것으로 2027년 예산안은 전년과 동일한 32억 3,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동 사업에 대해서는 2024년도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중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진 건수가 전체 대상 건수에 비해 저조한 수준이어서 건축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동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점검 대상 및 횟수를 확대하고, 부실설계·불량자재 사용 예방을 강화하여 사업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부실설계·불량자재 사용 예방을 위해 '26년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계획에 점검 횟수를 확대 반영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14) 코드: 일반회계 6132-303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국토교통부는 2027년 예산안으로 2026년과 동일한 32억 3,3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2026년의 경우에도 사업계획상 점검 횡수가 전체 대상대비 매우 저조한 실정이므로, 모니터링 효율화, 시스템화를 통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당시 2024년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 중 실제로 점검이 이루어진 건수가 건축구조는 3,125건(4.19%), 건축자재는 433건(0.48%)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된 바 있는데, 이후 국토교통부는 2026년 조치 완료 보고의 근거로 2026년 사업계획상 건축구조를 5,000건으로, 건축자재를 530건으로 확대 반영하였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2020-2024 5개년 연평균 점검대상은 건축구조의 경우 80,901건, 건축자재의 경우 120,608건으로, 사업계획상의 점검규모는 여전히 점검 대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2027년의 경우에도 전년과 유사한 규모의 점검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사실상 시정요구사항이 취지대로 조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의 사업구조 개선 등을 통하여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 집행관리 강화 필요(국토교통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초광역)¹⁵⁾은 세종·충북·대전을 연결하는 초광역 자율주행 상용화 지구를 기반으로 국내 최초로 운전자의 개입이 불필요한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행 사업인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 사업은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2·2023·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동 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을 지적하면서 국토교통부에 체계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반복적인 시정요구(제도개선)를 한 바 있다.

15) 코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초광역특별계정) 4633-302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은 선행사업의 연례적인 집행부진으로 국회의 시정요구가 반복되었으나, 2026년에도 집행실적이 개선되지 않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는 2027년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선행사업인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 지구 조성사업은 집행부진 문제가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집행 관리를 강화하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매월 주기적인 집행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계약이 적기에 체결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집행현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고도화 사업으로 개편된 2026년에도 8월 말 기준 실집행률이 26.5%에 불과하여 집행실적이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 특히, 현재까지 집행된 예산도 레벨4 자율주행 버스 관련 2026년도 예산이 아니라 전년도 이월 예산이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레벨4 자율주행 버스는 2026년 5월 개조에 착수하였으나, 최초의 레벨4 차량 개조 과정에서 이중화¹⁶⁾ 등에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어 11월경 차량 인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차량 개조가 완료된 이후에도 K-City(자율주행 테스트베드) 내 시험운행 등 선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제 도로에서의 실증은 2027년에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내 차량 개조가 완료될 경우 2026년도에 편성된 차량 개조비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레벨4 자율주행 버스의 실제 운영을 전제로 편성된 운영 용역비는 상당 부분 이월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7년도에는 레벨4 차량 4대를 추가로 개조하고 관련 운영비까지 집행할 계획인 만큼, 사업 일정과 차량 개조·시험운행 절차 등을 면밀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집행부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16) 자동차 기능안전 국제표준(ISO 26262)은 시스템의 오동작에 따른 위험 수준을 평가하여 안전목표별로 자동차 안전무결성 수준(Automotive Safety Integrity Level, ASIL)을 정하도록 하며, 자율주행 시스템과 같이 오동작 시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은 최고 등급인 ASIL D 수준이 요구된다. ASIL D 등급을 만족시키기 위한 주요 설계 방안 중 하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핵심 기능을 중복 구성하는 이중화(redundancy)이다. 예를 들어, 주 제어기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보조 제어기가 제어를 이어받아 차량을 안전하게 정차시키는 등 최소위험운행을 수행하도록 설계하는 방식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선행사업부터 연례적인 집행부진이 지속되어 국회의 시정 요구가 반복되어 온 점, 2026년도에도 집행실적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은 점, 레벨4 자율주행 버스의 개조 및 실도로 실증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027년도에 편성된 차량 개조 및 운영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16-1. 2025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경과

2025회계연도 결산은 2026년 7월 30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8월 26일 결산을 상정하여 9월 1일 심사를 마쳤다.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 경과]

위원회	회부일	상정일	소위심사일	의결일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7. 30.	8. 26.	8. 31.	9. 1.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성평등가족위원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성평등가족부 소관 41건의 시정요구를 채택하였다. 또한, 성평등가족위원회는 성평등가족부 소관 부대의견 1건을 채택하였다.

[2025회계연도 결산 성평등가족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건)

부처	시정요구							감사 요구	부대 의견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합계		
성평등 가족부	-	-	1	9	31	-	41	-	1

주: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임

자료: 성평등가족위원회, 「2025회계연도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2026. 9.

나. 분석의견¹⁾

(1)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적정 예산 편성 및 성과관리 필요(성평등가족부)

①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의 내용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²⁾은 저소득 청소년한부모의 자녀 양육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및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2331-431)으로 통합되었다.

그런데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의 2025회계연도 실집행률은 78.4%로 저조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 가구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예산 편성과 청소년한부모의 양육 여건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적정 지원금액 설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에서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한부모 복지급여 지원사업의 예산 및 지원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설정할 것을 시정요구사항으로 채택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은 수혜인원과 실집행액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2027년부터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통합되는 만큼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한부모의 지원실적과 성과를 별도로 관리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수요 및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의 수혜인원은 2022년 1,785명에서 2025년 1,162명으로 감소하였으며, 같은 기간 실집행액도 33억 5,100만원에서 20억 2,5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한부모 가구 역시 2020년 3,651가구에서 2024년 1,862가구로 감소하였다.

2027년도 예산안에는 기존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사업을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으로 통합하여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16억 5,000

1)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 · 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2) 코드: 양성평등기금 2331-431의 내역사업

만원과 자립촉진수당 1억 100만원 등을 편성하였다. 또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에 월 37만원, 65% 초과~66% 이하 가구에 월 19만원을 지원하고, 2세 미만 영아에 대해서는 월 3만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사업 통합 이후에도 청소년한부모의 지원인원과 집행실적을 내내역사업 단위로 별도 관리하고, 사업대상자 만족도 등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실제 지원수요와 양육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예산 및 지원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6-2. 2024회계연도 결산 연계 분석

가.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시정요구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은 시정 5건, 주의 5건, 제도개선 50건 등 중복 1건을 포함하여 총 59건이다. 이에 대해 소관 부처는 2026년 8월 말 기준 49건을 조치 완료하고, 10건(성평등가족부 10건)은 조치중으로 보고하였다.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부처별 시정요구사항 조치 현황]

(단위: 건)

부처명	시정요구 유형						합계	조치현황(26.8.31.)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조치완료	조치중
성평등가족부	-	-	5	5	50	(1)	59	49	10

주: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시정요구를 포함하였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회가 첨부한 부대의견 중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다.

나. 분석의견³⁾

(1)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수요 추계의 정확성 제고 필요(성평등가족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양육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2024년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하였으나, 지원대상자를 과다하게 추계하여 실집행률이 88.7%에 그쳤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평등가족부가 한부모가족 유형별 통계와 소득 등 제반 요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수요를 명확히 파악하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정산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아울러 수급자의 소득·인적사항 변동 신고의무 고지를 강화하고 부정수급액 환수관리를 강화할 것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2025년 보조금 미반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반납계획 조사 및 예산 확보 촉구 등 정산관리를 강화하고, 수급자 대상 소득·인적사항 변동 신고의무 안내와 지방자치단체의 부정수급액 징수현황 및 계획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한부모가족 복지급여의 실집행률은 개선되었으나, 2027년도 예산안의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물량 추계가 실제 수급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지원수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물량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한부모가족복지급여 예산안은 2026년 5,722억 4,600만원에서 2027년 5,963억 9,200만원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한부모가족복지급여의 지원 소득기준

3) 국회예산정책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 2026. 10.

4) 코드: 양성평등기금 2331-431

은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되며, 아동양육비 지원인원은 2026년 25만 7,085명에서 2027년 26만 9,751명으로 1만 2,666명(4.9%)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소득기준 확대에 따른 증가율 1.9%를 적용하고, 2027년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6.7%와 최저임금 인상률 3.7%의 차이인 3.0%를 추가 반영하였다. 다만, 실제 수급가구의 기준중위소득 구간별 가구·아동 수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추출되지 않아 소득구간별 실제 수급현황을 지원인원 추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과거 지원물량 추계와 실제 수급자 수 간 차이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추계의 정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실제 수급 및 집행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원물량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소득구간별 수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물량 추계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아이돌봄서비스 연계율 제고 및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성평등가족부)

① 시정요구의 내용

아이돌봄 지원⁵⁾ 사업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돌봄공백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봄사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양육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아이돌보미 공급 부족으로 서비스 연계율이 낮고 대기기간이 장기화되는 한편, 아이돌보미의 처우 수준과 양성교육 이후 실제 활동인력 확보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성평등가족부가 민간서비스기관과의 연계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서비스 연계율을 높이고, 야간·주말 등 틈새 돌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다. 아울러 아이돌보미 수당 현실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실효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다.

5) 코드: 일반회계 2334-341

이에 대하여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예산에 아이돌보미 활동수당 인상(시간당 10,590원→11,120원), 영아돌봄수당 인상(시간당 1,500원→2,000원) 및 유아돌봄수당 신설(시간당 1,000원) 등을 반영하였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야간특화 긴급돌봄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 예산에 야간긴급돌봄수당 및 일부 이용가구에 대한 할증요금 지원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치를 추진하였다고 조치완료 보고하였다.

② 2027년도 예산안 분석의견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및 야간·긴급돌봄 확대 등을 추진하였으나, 서비스 연계율 저조와 대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조치가 실제 공급인력 확충과 서비스 연계율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가구는 2021년 7만 8,118가구에서 2025년 18만 3,794가구로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연계율은 91.9%에서 86.9%로 하락하였다. 또한 평균 대기일수는 19.0일에서 39.4일로 증가하였다.

2026년 6월 기준으로는 신청가구 13만 4,095가구 중 11만 9,764가구가 연계되어 연계율이 89.3%이고, 대기가구는 1만 1,992가구, 평균 대기일수는 26.8일로 나타났다. 2026년 수치는 연중 실적으로 이전 연도의 연간 실적과 직접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나, 서비스 연계율 저조와 대기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한편, 아이돌봄사 양성교육인원은 2024년 8,901명, 2025년 1만 2,736명이었으나, 실제 활동 아이돌봄사의 전년 대비 증가인원은 각각 1,564명, 2,083명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성교육 규모에 비해 실제 활동인력의 순증 규모가 제한적인 만큼, 교육 이후 채용과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2027년도 예산안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을 5% 인상하고, 아이돌봄사 4대보험 및 퇴직적립금 산정인원을 2만 7,000명에서 3만 2,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처우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는 처우개선 및 양성교육 확대가 실제 활동인력 확충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서비스 연계율 제고와 대기기간 단축을 위한 사업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2027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는 결산 시정요구의 취지를 고려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 확충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 록

1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현황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중 소관 부처가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 중'으로 보고한 226건에 대하여 관련 사업의 예산 현황과 예산상 조치(사업의 신설·폐지, 예산 조정 등) 필요 여부를 정리하였다. 예산상 조치 필요 여부는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 미완료 현황(2026년 8월 말 기준)]

위원회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법사위	법무부	제도개선	과태료 등 장기·과다 미수납액 관련 대책마련 필요	일반회계	(세입 총괄)	-	-	-	-
		제도개선	토지대여료 등 수납실적 저조 항목 개선 필요 (※ 세입예산액 조정 등 포함)	일반회계	(세입 총괄)	-	-	-	○
		제도개선	난민심사를 위한 전문임기제 방식 운영의 적정성 점검 및 보완 필요	일반회계	출입국외국인관리운영 인건비(총액)	166,631	172,906	185,120	217,842
		제도개선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신중한 상고제기 필요	일반회계	공판활동지원	2,037	2,037	1,992	3,455
		시정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결 필요	일반회계	교정시설장비운영 및 현대화	100,834	85,596	91,557	133,225
		제도개선	노후 교정시설 예산 확보방안 마련 및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예산 초과집행 방지 필요	일반회계	교정시설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269,102	290,348	302,342	314,834
		제도개선	위기상황자 심리치료비 지원사업 예산 사전 편성 필요	일반회계	보호관찰활동	16,114	17,102	17,682	16,024
		제도개선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의 이수기준 검토 및 효율적 예산집행 필요	일반회계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운영	10,754	13,909	13,955	17,153

(단위: 백만원)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보예산	'26보예산	'27정부안
법사위	법무부	제도개선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위탁계약서 개정 필요	일반회계	교도소행정지원	20,959	21,442	28,058	30,609
		제도개선	범죄피해자 원스톱솔루션센터 효율적 예산 집행 필요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범죄피해자치로및자립 지원	48,515	51,516	52,918	59,593
	대법원	주의	증인지원실 설치 예산의 실제 수요에 부합한 조정 필요	일반회계	재판절차비용지원	39,063	38,300	33,924	32,589
		제도개선	법원정책 연구비의 연례적 이월 최소화 및 원가산정 위탁 기준 명확화 필요	일반회계	사법정책연구개선	2,549	1,945	1,691	1,794
		제도개선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 개선 필요 (※ 기 등록된 외국인 정보 자동정비사업 예산 편성 예정)	일반회계	가족등록업무전산화(정 보화)	18,519	17,456	17,061	17,166
정무위	국조실	제도개선	국선번호로 지급지역 예방을 위한 집행관리 체계 개선 필요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국선번호로지원	69,884	77,998	94,617	84,247
		제도개선	조세심판 후 불복 소송 제기 건 철저 관리 필요	일반회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1,440	1,560	1,523
		제도개선	전자 송달 효력 등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노력 필요	일반회계	조세심판원 기본경비	1,342	1,440	1,560	1,523
		제도개선	한-아세안 정책연구협력센터 운영 개선 필요 (※ 사업비와 인건비·경상운영비 분리 편성 예정)	일반회계	산업연구원(R&D)	23,440	23,973	30,230	31,029
		제도개선	한국교육개발원 등 5개 기관 능력성과급 체계 개선 필요	일반회계	한국교육개발원(R&D) 등(4개)	77,563	78,406	93,763	92,168
	보훈부	제도개선	부설기관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두는 방안 검토 필요	일반회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R&D)	32,006	32,289	39,149	41,273
		시정	소송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일반회계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21,776	21,045
		주의, 제도개선	시내버스 이용지원 미지급금 누락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2027년도 예산안 전년 대비 35.2억원 증액 편성)	일반회계	교통시설이용지원	11,329	10,729	21,776	21,045
		제도개선	민간요양시설 보조금 지급 인원 산정의 합리성 제고	보훈기금	보훈요양망양로지원	7,694	8,372	8,623	9,424
		제도개선	기금 수입을 현실적으로 계상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신뢰성 제고 필요(※ 88표장 매각 철회 및 수입항목에서 제외)	보훈기금	(세입)기타재산자외 수입	124,753	132,000	118,000	-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정무위	공정위	시정	자율규제 정책 시정 필요	일반회계	독과점시장 감시체계 운영	3,320	3,470	2,074	318
		제도개선	소비자단체센터의 상담 및 전산·정보 시스템 운영사업의 수의계약 법적 근거 마련 필요	일반회계	소비자상담센터 운영	3,628	3,527	3,877	2,323
	금융위	제도개선	채무상환 완료를 위한 추가제원 확보 노력 필요	공적자금 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총괄 계정) 예수원금상환	9,789,418	5,997,739	7,148,632	7,922,520
		시정	일반회계 전환 등 농어가목돈마련저축 제도개선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64,109	51,095	46,509	41,787
재경위	권익위	제도개선	기금 청산 일정을 고려한 보유자산 매각 및 매각 가치 극대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기금	(세입)재고자산매각대	1,033,172	525,330	1,818,514	436,260
		주의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 참여율 개선 필요	일반회계	행정정보시스템운영 (정보화)	22,372	7,665	1,822	1,778
	기획처	제도개선	고위공직자 직무관련 이해관계 점검체계 보완 필요	일반회계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226	210	190	147
		제도개선	재정데이터분석센터의 데이터 분석·가공·활용 실적 개선 필요	일반회계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운영 (정보화)	22,240	20,770	22,317	28,904
국세청	데이터처	제도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사업 제도 개선 필요	일반회계	국가연구개발사업타당성 조사(R&D)	274	220	198	198
		시정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위한 태블릿PC 취득 시 비용절감 방안 강구 및 사후 활용방안 사전 수립	일반회계	인구주택총조사	26,326	115,826	5,595	2,473
	제도개선	가구주택기초조사 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편성·집행 기준 마련 필요	일반회계	인구주택총조사	26,326	115,826	5,595	2,473	0
	국세청	제도개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실효성 제검토 필요	일반회계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 지원	4,319	4,319	3,208	174

(단위: 백만원)

유원회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보예산	'26보예산	'27정부안
재경위	조달청	제도개선	시설계약 사업수입 미수납 및 예산 과소계상 문제 개선 필요	조달특별회계	(세입)시설계약사업수입	40,686	52,869	58,680	60,130
		제도개선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지원 사업 개선 필요	조달특별회계	정부조달 국제협력체계 구축	3,585	4,505	5,195	5,910
		제도개선	민관 공동비축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 운영 필요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대출금	70,000	80,000	80,000	56,800
		제도개선	중소·영세기업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필요	조달특별회계	조달물자 계약 및 관리	10,097	15,007	15,625	11,657
교육위	교육부	제도개선	합리적인 유보통합 대안 및 구체적인 이행계획 마련 필요	-	-	-	-	-	-
		제도개선	수입대체경비 과도한 초과수입 및 초과지출 연례적 반복 부차절	일반회계	(세입)면허료및수수료 (수입대체경비)	6,546	6,775	5,509	16,737
		주의	교육시설안전인증 대상 학교의 안전인증 완료 필요	일반회계	교육시설 통합정보망 구축 (정보화)	1,650	1,505	-	-
		시정	민간위탁사업비 집행의 현황 점검 및 근거 마련 필요	일반회계	교육과정 개정 및 후속 지원	5,727	5,629	2,861	2,575
		제도개선	국가영재교육연구원 종단연구 참여 독려방안 마련 (※ 적정 예산 편성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등)	일반회계	영재교육 지원사업	2,577	2,793	2,635	2,634
		제도개선	학생정신건강 지원사업 보조금 집행 적정성 제고	일반회계	학생건강지원강화	1,054	1,054	1,054	1,054
		제도개선	고교 무상교육의 합리적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할 필요	일반회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5,267	578,528	304,356
		제도개선	교육청 순세제잉여금 고교무상교육 재투자 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고등학교 무상교육	943,898	5,267	578,528	304,356
		제도개선	국가장학금 형평성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한 종합적 개선방안 마련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05,047	5,116,057	5,182,976
		제도개선	국가장학금 II유형 자체 기준 공시 독려 및 등록금 연계 방식 재검토	고등·평생교육 지원특별회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4,720,453	5,305,047	5,116,057	5,182,976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	부처명	유형	시정연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교육위	교육부	제도개선	보육교직원 차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예산의 편성 방안 검토 필요	영유아특별회계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등	1,884,306	1,961,911	2,182,864	O
		제도개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사업의 연례적인 실행행 부진 방식을 위한 집행관리 필요	영유아특별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82	-	-	-
		제도개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지원방안 마련 필요	영유아특별회계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982	-	-	-
		제도개선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연금여 (사립학교연금기금)	4,484,529	4,921,681	5,266,435	O
		제도개선	연금급여 과소편성 후 증액변경 반복 부적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연금여 (사립학교연금기금)	4,484,529	4,921,681	5,266,435	O
과방위	과기부	제도개선	한국방송통신 전파진흥원 지침에 부합하는 복리후생 제도 운영 필요	-	-	-	-	-	-
		제도개선	우편사업의 우체국예금 의존 완화를 위한 자구노력 및 구조개선 방안 마련	-	-	-	-	-	-
		제도개선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절차 적기 추진 필요 등	-	-	-	-	-	-
		제도개선	책임PM의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화보 수단 마련 필요	일반회계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R&D)	10,000	11,700	13,050	11,343
		주의	국제공동연구의 불리한 협약체결 시정 필요	일반회계	바이오·의료기술개발 (R&D)	15,000	26,033	36,900	28,344
		제도개선	제이동통신 선정 및 취소 과정에 대한 검토 및 선정 방식 개선	일반회계	총액대상 전파정책국 기본경비	68	69	69	69
		주의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집행 필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지역균형발전사업(내역-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지원)	500	500	2,000	1,500
		주의, 제도개선	이용 및 불용 방지 노력, 사업관리 예산 확보, 공공 및 민간 협력모델 구축 필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스마트빌리지보급및 확산 (자율)	99,519	112,980	82,546	94,644
		제도개선	사업지연에 따른 GPU 활용 수요 적시 대응 미흡	미래대응기금	국가 플래그십 초고성능 컴퓨팅 인프라 고도화 (R&D)	18,183	11,194	68,431	79,853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과방위	방미통위	사항 주의 제도개선	EBS의 UHD 방송 장기 미송출 문제 해결 필요 등 (※ 예산 투자계획 마련 등 포함)	일반회계	EBS방송인프라개선	1,322	1,210	1,144	573	O	
		제도개선	사업 근거 보완 및 수행기관 검토 필요	일반회계	공익채널운영실적 모니터링 및 평가	234	237	242	249		
		제도개선	일관성 있는 과징금 부과 업무를 통한 규제기관 신뢰 제고 필요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 규제제정)	(세입)과징금	2,728	5,520	4,630	4,403		
외통위		제도개선	한-아프리카재단의 결산보고서 상 감사의견서 미침부에 따른 투명성·신뢰성 저해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425	4,649	4,720	3,720		
		제도개선	국별협력사업의 종료보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및 규정 개선 필요	일반회계	(프로그램)국제개발협력	2,059,368	1,967,014	1,487,103	1,392,805		
	통일부	제도개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입찰공고 및 계약절차 준수 필요	일반회계	재외국민 보호	15,510	13,959	13,992	15,050		
		제도개선	수납물 저조한 과태료의 수납률 제고 필요	일반회계	(세입)과태료	10	10	10	10		
		제도개선	북한인권재단 출범 지연에 따른 예산 불용, 개선 필요	일반회계	북한인권재단 운영	475	475	475	50		
		제도개선	민화협, 민통 등 국고보조금 지정 지원 필요	일반회계	국내통일기반조성	2,749	3,813	9,425	10,208	O	
외통위		주의	기념관 운영예산의 연례적 세목조정 등 변경집행 부적정	일반회계	625전통문화재가립관 운영	1,419	1,479	1,556	1,602	O	
		제도개선	하나일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 현실화 필요	일반회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2,302	11,760	14,269	10,436	O	
	민주평통	제도개선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경비 최소화 필요	일반회계	남북 철도도로 출입시설 관리	3,417	3,521	3,965	4,176		
		제도개선	실질적 차관회수 방안 모색 필요	남북협력기금	(세입 총괄)	-	-	-	-	-	
		제도개선	사업수행방식 전환 사업에 대한 종합적 분석 실시 필요	-	-	-	-	-	-	-	
		제도개선	국내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일반회계	자문회의운영	2,869	2,041	2,869	2,179		
외통위	등포청	제도개선	제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면밀한 관리 필요	일반회계	제외동포협력센터 출연	-	7,203	-	-	-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국방위	국방부	제도개선	군 드론 정의·인력·관리 전반의 제도 정비 필요	-	-	-	-	-	-
		시정	미수납 채권관리 강화 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세입)기타경상이전수입	120,674	194,877	233,605	244,225
		주의	미수납 징계부과금 철저 추징 필요	일반회계	(세입)징계부과금	16	16	39	72
		제도개선	공공요금 예산의 적절한 편성을 통해 과도한 이·전용 발생 예방 필요	일반회계	공공요금	538,110	580,668	620,644	675,666
		제도개선	계통대 주전력 예비전력 변경소 분리 필요	일반회계	일반지원시설	791,975	522,654	624,117	721,773
		제도개선	재외공관 주재무관 포상금 집행 근거의 법제화 필요	일반회계	무관부활동	17,068	18,310	18,586	20,522
	법무청	제도개선	민간조리원 채용개선을 통한 운용률 제고 필요	일반회계	민간조리원운영	110,028	103,847	111,824	129,951
		시정	대규모 이용에 발병에 따른 대책 마련 및 예산 편성 적정성 제고 필요	일반회계	군배상금	17,689	17,689	20,012	50,301
		시정	실질에 맞지 않는 교통비 보장 개선 필요	일반회계	장병여비지원	56,394	56,394	57,002	56,008
		제도개선	사회복무요원 재정부담 완화 및 수요감소 대응방안 마련	일반회계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1,188	1,201	1,268	1,252
법사청	법무청	주의	사업 지연에 따른 전력 공백 보완방안 마련	일반회계	40mm고속유탄기관총 - II(R&D)	595	17	100	100
		주의	신뢰도시험 일정을 고려한 적정 예산의 편성 및 집행 필요	일반회계	단안형야간투시경 경미한 성능개량	3,448	5	-	100
		제도개선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실효성 확보 노력 필요	일반회계	방산분야 인프라 및 상생협력 환경조성	3,182	3,742	5,308	5,829
	법사청	주의, 제도개선	사업지연에 따른 전력공백 방지 및 과도한 예산 전용 방지필요	일반회계	한국형구축함(KDDX)	49,804	49,735	49,735	100,107
		제도개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일반회계	대대정찰용 UAV 경미한 성능개량	1,662	316	697	474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행안위	행안부	제도개선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및 실효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민방위교육훈련및시설장비확충	10,794	6,736	10,592	5,455
		제도개선	마을기업의 고용 성과 제고 필요	일반회계	청사시설관리 및 위탁	2,695	1,675	5,250	4,460
		주의	법령상 기준에 맞는 장애인 고용을 통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지양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마을기업육성사업	135,204	139,093	147,880	160,223
		제도개선	과태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교통경찰 업무관리시스템의 고도화 필요	일반회계	교통안전활동	-	-	185	9,355
	인사처	제도개선	장기 미수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필요	일반회계	(세입)기타경상이전수입	1,349	1,349	2,064	1,341
		제도개선	위탁선거관리 경비의 세입세출예산 외 운용 근거 마련 필요	일반회계	위탁선거관리	258	136	116	291
		제도개선	공정한 심의 절차 등의 확보로 사업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필요	일반회계	함께누리 지원	29,107	30,784	32,517	33,345
	문체부	제도개선	국립디자인 박물관 개관 사업 개선 필요	일반회계	공공디자인 및 공예문화진흥	18,507	21,150	16,104	
		시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및 임시, 채용 비리 등 방지 필요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증고 운영	9,739	7,998	7,615	7,315
		주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 사업 재검토 필요	일반회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88,315	72,106	75,139	101,135
		제도개선	예술의전당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	일반회계	예술의전당 지원	16,701	17,079	17,470	43,108
문체위	주의	사업의 추진 방식 및 성과 개선 필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21,633	17,254	22,213	15,097	
	제도개선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당 2명씩 인력 증원 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7,594	40,954	38,575	47,060	
	제도개선	장애인체육계의 행정역량 강화 및 지역 장애인체육회 법인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국민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단체 운영지원	37,594	40,954	38,575	47,060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문체위	문체부	시정	숙박할인권 발급 진후 가격 검증 및 수수료 개선 필요	관광진흥 개발기금	국내관광 역량 강화	53,129	42,780	23,747	27,782
		제도개선	체계적인 예산 편성·배정 방식 마련 및 지급 여부·요율 등의 재검토 필요	일반회계	국가유산보존관리정책강화	55,442	56,889	58,473	60,276
	국유청	제도개선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공간 부족 문제의 장기적 해결책 모색 필요	일반회계	국립고궁박물관운영	18,194	18,552	16,142	24,151
		시정·주의	종묘의 사적 이용 논란 재발 방지 및 부적절한 예산 집행 발생 예방 필요	일반회계	궁궐유산관리운영	33,701	38,933	26,187	29,601
농수산위		제도개선	농특회계 의무전출 규정의 실행가능성 제고 필요	일반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구조개선사업제정) 전출	2,645,122	3,901,579	3,747,860	4,033,331
		제도개선	농업기반시설 활용에너지개발 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철저 필요	일반회계	농업기반시설활용에너지개발	7,660	5,000	4,250	3,613
	농식품부	제도개선	종자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필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종자산업활성화지원	11,045	10,976	10,348	8,877
		제도개선	반려동물 연관산업 관련 통계 기반 마련 필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반려동물연관산업 해외수출산업화	1,840	2,720	9,095	4,421
농진청		제도개선	APTERR 수원국 운영비 보조금의 일반회계 이관 필요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부양곡관리비	409,078	456,100	449,499	411,409
	농진청	주의	신규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검토 필요	일반회계	축산자원개발부이천사업 (R&D)	68,275	40,254	53,138	3,308
	산림청	제도개선	임업기계장비의 낮은 활용률 제고 필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임업기능양성	7,188	7,188	5,188	19,315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보예산	'26보예산	'27정부안
농수산 위원회	해수부	제도개선	평택해수청 재배치 필요	-	-	-	-	-	-
		제도개선	주요 정보통신시설의 정보보호 전문인력 확충 필요	일반회계	사이버안전센터 구축 및 운영(정보화)	3,267	3,780	3,630	3,235
		제도개선	계획된 기간 내 사업 완료를 위한 철저한 관리 필요	일반회계	노후 폐수수용시설 현대화	5,445	4,901	2,616	2,600
		제도개선	어선중개업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강구 필요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어선거래제도 운영	509	509	400	-
		제도개선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 비목 적정 편성 집행 필요	-	(총괄)	5,607	7,723	11,296	10,382
	해경청	제도개선	대형헬기(5호기) 사업의 추가적 지연 방지 필요	일반회계	항공기도입	59,925	37,796	66,641	42,890
		제도개선	해양경찰청 정보화 사업관리 개선 필요	일반회계	행정정보시스템 구축및운영 (정보화) 등(3개)	19,473	23,966	29,921	23,346
		제도개선	공공요금및제세 연례적 이진용 최소화 등 국회시정요구사항 준수방안 강구 필요	일반회계	지방관서기본경비	23,123	25,490	26,227	28,698
		제도개선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준수 노력 필요	일반회계	합정건조 등(2개)	257,642	194,933	269,164	205,741
		주의	자본잠식 공공기관에의 재정전환 이행실적 등 철저한 점검 필요	-	-	-	-	-	-
산자 중기위	산업부	제도개선	과도한 일반회계전입금 의존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 등 대안 마련 필요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강화 및 공공안전강화 특별회계	(세입)일반회계전입금	2,022,344	2,182,941	2,308,382	2,258,311
		시정 주의	국회 예산심의 취지를 반영한 집행 및 한국석유공사 관리·감독 방안 마련 필요	자원인보기금	유전개발사업출자	48,140	837	10,922	2,139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신자 중기위	지재처	제도개선	국내여비 예산규모 현실화 및 연차보고서 작성업무 수행방식 검토	일반회계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운영	16	16	16	43
		제도개선	출연사업 예산집행 관리 강화 필요	일반회계	ICT8월~12월공정보급화산	219,054	236,076	402,056	468,238
		제도개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원 인력충원 노력 필요	일반회계	중소기업 조사연구평가	14,241	14,404	15,846	18,046
	중기부	제도개선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 제고방안 마련 필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15,008	14,827	15,312	24,129
		제도개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의 운영방식 개선 필요	소상공인시장 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710,000	3,770,000	3,362,000	2,270,000
복지위		제도개선	재정건전성과 저소득층의 노후소득 보장성 등을 고려한 기초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일반회계	기초연금 지급	20,201,456	21,814,577	23,137,815	25,652,968
		제도개선	냉방비·부식비·시설보수비 등 경로당 지원 강화 필요	일반회계	노인단체 지원	88,418	95,709	88,885	104,338
		제도개선	기금의 체계적 관리계획 마련	일반회계	의료급여	8,937,713	8,688,201	9,839,997	12,297,325
		제도개선	장기입원자 지역사회 복귀지원사업 개선 및 타 복지사업과의 연계 강화	일반회계	의료급여	8,937,713	8,688,201	9,839,997	12,297,325
	복지부	제도개선	원외탕전실 인증제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등	일반회계	한의학산업육성	4,625	4,165	3,802	4,093
		주요, 제도개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안정적 국고지원 필요	일반회계	건강보험가입자지원 (일반회계)	10,263,617	10,621,136	10,782,011	11,792,283
				국민건강 증진기금	건강보험가입자지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902,181	1,988,166	1,935,095	2,011,599
		제도개선	건강보험분쟁 조정위원회의 심판청구에 대한 법정 처리기한 준수 필요	일반회계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 회사무국 설치·운영	788	860	897	936

(단위: 백만원)

위원명	부처명	유형	시정연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복지위	복지부	제도개선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거점심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필요 등	일반회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48,565	49,058	52,369	76,902
		제도개선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시 재원조달 방안 등 총괄관리체계 강화 필요	일반회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지원	10,497	-	9,055	14,213
		제도개선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의 사업관리 강화 및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확충 예산 확대 필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노인요양시설 확충	28,649	24,505	24,505	20,849
		제도개선	응급관리요원의 충원 확대 및 처우개선 필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9,267	31,098	32,937	36,275
		제도개선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정 고시 제정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	17,575	19,256	-
		제도개선	권역의상센터 외상환자 전담전문의 인력 확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57,724	66,370	82,600	73,815
		제도개선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 편성 변경	국민건강 증진기금	정신건강 증진사업	127,054	131,796	137,862	135,202
		제도개선	호스피스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잔여병상·대기정보공개 등 시스템 개선	국민건강 증진기금	국가암관리	69,484	83,570	126,640	84,281
		제도개선	노후준비서비스 사업의 재원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필요	국민연금기금	노후준비서비스	1,622	1,563	1,563	1,783
		제도개선	한센인사회복지센터 요양보호사 충원 필요	일반회계	한센병환자관리지원	11,416	11,652	12,902	11,463
		제도개선	인체자원 수집 확대 노력 필요	일반회계	국립중앙의료원운영	3,875	3,875	3,475	2,678
	질병청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기후변화위원회	주요, 제도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일반회계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	2,020	-	4,440	2,430	
		국가물관리위원회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4,511	4,253	4,796	4,924	
	주요	야생동물 보호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	67,615	51,825	39,829	33,963	
		규제샌드박스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및 타 부처와의 중복 방지 방안 마련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원순환촉진지원	20,623	20,623	11,477	9,462	
	제도개선	면밀한 예산항목 검토를 통하여 이·전용 및 과다 불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가유역 물관리체계 구축	4,511	4,253	4,796	4,924	○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시험연구비 예산 집행 규정 준수 필요	환경개선 특별회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운영	8,646	9,373	9,702	9,966	○
	제도개선	녹색구매지원 센터 활성화 방안 및 사업관리 방안 마련	환경개선 특별회계	친환경경제사회 기반구축	16,393	8,047	6,607	5,618	○
		실집행이 지조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의 적극적인 사업 수행 필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하수관로 정비	1,281,593	1,626,418	833,826	623,657	○
	제도개선	4대강 수계관리기금 여유자금 관리 및 목적사업 지출 확대 필요	한강수계 관리기금	통화금융기관예치	119,767	75,369	76,657	104,547	○
	제도개선	출연금 편성의 타당성 검토 필요	전력산업 기반기금	포항 지열발전부지 안전관리사업	2,000	11,320	8,570	-	○
	제도개선	기후대응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개편 필요	기후대응기금	(총괄)	-	-	-	-	○
	제도개선	배출권 매각 대금 수입 확대 및 기금 수입구조 개선 필요	기후대응기금	(세입 총괄)	-	-	-	-	
	제도개선	기후대응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필요	기후대응기금	(세입)기금예수금	319,910	319,910	100,000	4,406,300	○
제도개선	기후대응기금의 자체수입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등	기후대응기금	(세입)기타채산이자외수입	289,694	348,700	765,123	881,442		

(단위: 백만원)

유원회명	부처명	유형	시정교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기후노동부		시정	무공해차 보급사업의 조속한 보조금 집행잔액 수납 필요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보급사업	2,319,254	2,263,104	2,284,513	'27정부안 3,008,973
		제도개선	스마트제어 충전기술 구현을 위한 연구 용역 진행 필요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930,938	664,063
		제도개선	스마트제어 충전기의 조속한 정산 필요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930,938	664,063
		제도개선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집행 점검 및 전기차 충전기 사업 중도 포기 방지 대책 마련 필요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	734,441	928,423	930,938	664,063
		제도개선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수행 위탁사업의 법적근거 보완 및 상시 관리·감독체계 강화 필요	기후대응기금	무공해차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내역-한국자동차 환경협회 위탁사업)	406,273	396,145	414,740	274,393
		주의	정의로운 전환 특구 미지정으로 인한 전애 불용 부적절	기후대응기금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 구축 운영사업	2,422	-	1,300	818
		제도개선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사업의 집행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기후대응기금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 선별 인프라 확충	39,786	31,589	33,562	24,217
		제도개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한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사업의 집행을 제고 노력 필요	기후대응기금	기후변화적응 및 국민실천	32,032	33,986	41,303	37,649
		제도개선	자격검정시험 수수료 정상화 필요	일반회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32,989	137,506	138,544	124,236
		제도개선	국가기술 자격검정시험과 국가전문자격시험의 신뢰도 개선 필요	일반회계	한국산업인력공단운영지원	132,989	137,506	138,544	124,236
노동부		제도개선	고용영향평가 사업의 중앙부처·지자체 신청과제 비율 제고 및 사업 실효성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고용영향평가사업	1,039	1,339	1,329	1,299
		제도개선	고용평등상담업무 전부를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사업방식 변경	일반회계	고용평등환경개선지원	1,790	1,876	1,442	1,756
		주의	예산추계의 정확도 제고 및 예산산출 방식 개선 필요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42,515	845,709	1,012,830	697,808
		제도개선	국민취업 지원제도의 취업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942,515	845,709	1,012,830	697,808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기획노동위원회	노동부	제도개선	불합리하게 조기채취업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제도개선 추진필요	고용보험기금	조기채취업수당	463,837	525,484	585,196	464,200
		제도개선	산재신청 후 처리기간 단축계획의 철저한 이행 필요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산재보험급여	7,876,091	8,004,326	8,146,300	8,624,637
		제도개선	사업의 성과관리 강화 및 적합한 지원대상 선정 필요	산업재해보상 보험및예방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	471,792	496,792	537,093	501,227
		제도개선	임금채권보장 기금 일반회계 부담금 증액 및 사업주 부담금비율 상향 필요	임금채권 보장기금	(세입)일반회계전입금	341	341	341	1,778
		제도개선	사업주 부담금 경감비율 조정 필요	임금채권 보장기금	(세입)법정부담금	421,920	430,680	440,883	688,147
		제도개선	임금채권보장 시스템 분리구축 비용 마련 등 노력 필요	임금채권 보장기금	임금채권 정보화경비 (정보화)	82	82	82	82
		제도개선	공공주택 건설단계별 목표·실적 병행관리, 공급·관리계획 법정 문서화 및 중장기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	-	-	-
국토위	국토부	주의	한국철도공사 열악한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	-	-	-	-
		주의	한국도로공사 장기법적소송충당부채 적극 대응 필요	-	-	-	-	-	-
		제도개선	지적재조사 사업의 조속한 완료 필요	일반회계	지적재조사	44,900	43,593	40,485	45,233
		제도개선	주간통계의 폐지 등 주택가격통계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등	일반회계	주택및주거융합조사	14,444	14,444	14,444	14,444
		제도개선	운영기관 일원화 및 탄력적 인력 운영 등 제도 정상화 및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 필요	일반회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	7,326	6,495	6,908	6,672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보예산	'26보예산	'27정부안
국토위	국토부	제도개선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기술 개발(R&D) 사업의 계속적 추진	일반회계	한국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성 향상 기술(R&D)	864	-	-	-
		주의, 제도개선	쫓방 등 비주행 거주자에 대한 주거급여 인상이 임차료(월세)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 해결 필요	일반회계	주거급여지원	2,742,436	3,036,823	3,230,896	3,832,761
		제도개선	건설기계임대료 채납금 회수를 제고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보증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건설기계임대료채납 신고센터운영	135	108	86	86
		제도개선	연계노선 개통 지연 등에 따른 손실보상 소송 패소 대응방안 마련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철도운영지원	872,355	917,060	871,611	964,443
		제도개선	GTX-A 노선의 삼성역 무정차 개통 추진 시 공동선로 상의 여유시간을 마련하는 방안 검토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철도운영지원	872,355	917,060	871,611	964,443
		제도개선	GTX-B 노선의 용지보상 및 인허가의 조속한 협의 및 적기 개통을 위한 공정 관리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	121,203	66,232	165,990	92,529
		주의	울릉도 소형공항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활주로 연장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90,000	25,370	114,900	113,698
		제도개선	과적단속 사업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과적단속운영	40,307	42,646	45,466	47,989
		제도개선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손실보전 규모 증가에 대한 대책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민자도로운영지원	173,328	191,597	185,954	214,249
		제도개선	저상 좌석버스 의무도입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관리와 준비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232,427	226,412	235,899	244,135
		제도개선	택시감자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강구 필요	교통시설 특별회계	택시산업지원	4,365	4,299	3,753	12,187

(단위: 백만원)

위원명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국토위	국토부	제도개선	국민주택채권 확대 방안 마련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세입)국공채발행수입	16,000,000	14,000,000	14,100,000	15,340,000	
		제도개선	국민주택채권 관련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세입)국공채발행수입	16,000,000	14,000,000	14,100,000	15,340,000	
		제도개선	신생아 특례 대출의 주택면적 요건 완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주택구입·전세자금(용자)	12,364,500	14,057,155	10,301,581	5,280,000	
		제도개선	공공분양주택의 수요-공급을 고려한 공급 조절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분양주택(용자)	2,015,332	1,471,639	426,978	669,937	
		제도개선	불용 최소화 및 집행을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분양주택(용자)	2,015,332	1,471,639	426,978	669,937	
		제도개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재무악화 개선 위해 사업규모 조정 등 방안 마련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통합공공임대(용자)	1,401,288	1,481,708	823,570	1,406,320	O
	국토위	제도개선	공익성을 우선하여 사업의 지속적 추진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1,216,141	1,642,403	1,479,278	1,549,733	
		제도개선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리 세대수 설정 및 배치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통합공공임대(용자)	1,401,288	1,481,708	823,570	1,406,320	
		제도개선	주거복지사 기간제 직원 채용조건 및 보수 수준 조정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통합공공임대출자	1,216,141	1,642,403	1,479,278	1,549,733	
		제도개선	주거복지사 1인당 적정 관리 세대수 설정 및 배치 필요	주택도시시기금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및 서비스 개선	5,677	5,847	5,847	6,037	
새만금청	행복청	주의, 제도개선	연태적 이월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행정안전부 건설특별회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35,000	35,000	95,640	119,095	O
	새만금청	주의, 제도개선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일반회계	새만금 산단 용·폐수 공동관로 구축 지원	4,700	25,539	-	-	-

(단위: 백만원)

위원회의 의견	부처명	유형	시정요구사항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성평등 가족의 성평등부		제도개선	양성평등정책조정·협의 사업 적극적 운영 및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상설기구화 필요	일반회계	성평등정책전략기반구축	348	318	732	23,358
		제도개선	성인지 분석대상사업의 성과관리 개선방안 마련 필요	일반회계	성인지정책분석 평가 운영	4,075	3,940	3,821	3,117
		제도개선	성희롱 실태조사 대상에 프리랜서 포함 필요 등	일반회계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3,415	4,054	2,701	5,432
		제도개선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방식 검토 필요	일반회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지원	14,692	14,788	16,618	19,162
		주의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등	일반회계	여성사전기관	4,352	2,411	9,317	1,961
		제도개선	국립청소년 치료재활센터 건립 사업의 철저한 관리 필요	일반회계	청소년치료재활센터 건립	3,691	5,706	8,873	8,873
		제도개선	국립청소년 진로직업체험수련원 건립 사업 집행 부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국립청소년수련시설 건립	9,745	12,727	11,667	10,500
		제도개선	기금 운용 안정성 및 자용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필요	양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	-	-	-	-
		제도개선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전담인력의 채용 개선 및 전문성 향상 방안 모색, 보조금 교부 및 정산관리 강화 필요	양성평등기금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46,131	145,197	151,379	147,978
		제도개선	성매매 피해자 등의 취업 및 진학 실적 추적관리 필요	양성평등기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	18,510	19,037	21,137	20,541
									O

주: '예산상 조치 필요'는 2027년도 정부인 반영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현재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예산상 조치가 필요할 수 있는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중 소관 부처가 2026년 8월 말 기준 '조치 중'으로 보고한 7건에 대하여 관련 사업의 예산 현황과 예산상 조치(사업의 신설·폐지, 예산 조정 등) 필요 여부를 정리하였다. 예산상 조치 필요 여부는 관련 조치사항의 2027년도 예산안 반영 여부와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였다.

[2024회계연도 결산 부대의견 조치 미완료 현황(2026년 8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부대의견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국방위	국방부	국방부는 소형자폭드론 구매 관련 과도한 예산 이·전용에 대해 자체 정책감사를 실시한다. (※ 소형자폭드론 2027년도 예산안 미편성)	일반회계	주요기관 교육용탄약	386	8,383	1,982	578	O
행인위	행안부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투표를 통해 기관구성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4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새로운 기관구성 방식이 시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안 등을 검토한다.	-	-	-	-	-	-	
		행정안전부는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방세법 시행령」의 고금주택 중과세 면적 기준 등에 관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	-	-	-	-	-	
국토위	국토부	국토교통부는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철도 등 교통서비스에서 소외된 지역의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	-	-	-	-	-	
		국토교통부는 「철도지하화와 철도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기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전국 철도 노선의 지하플랫폼과 연계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한다.	일반회계	철도기본계획수립	-	2,010	5,522	2,140	

(단위: 백만원)

위원회명	부처명	부대의견	관련 사업 예산 현황					예산상 조치 필요
			회계기금명	세부사업명	'24본예산	'25본예산	'26본예산	'27정부안
공통	기후부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취·양수시설 개선사업이 농민들에게 깨끗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지역 주민에게 적극 홍보한다.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수리시설개보수 양수장시설개선	746,169	761,734	756,902	665,755
	재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주식 매각에서 최다액 출자자 승인 변경에 이르는 과정에서 불법부당행위가 밝혀지거나 YTN 최다액 출자자가 변경 승인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필요한 후속 조치를 검토한다.	일반회계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7,304	7,187	6,982	5,570

주: '예산상 조치 필요'는 2027년도 정부안 반영 여부 및 향후 조치계획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으로, 현재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향후 추가적인 예산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자료: 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예산안분석시리즈 VII
결산 연계 2027년도 예산안 분석

발간일 2026년 10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디자인여백플러스(tel 02·2672·1535)

ISSN 3140-6157

© 국회예산정책처, 2026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